

관세무역연구

제2권 제4호 (통권 제8호, 2025년 12월)

연구논문

한상현 관세행정구제에서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일원화 방안

권민수 팬데믹 충격 이후 국내 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 머신러닝 기반 결정요인 분석

고보민·김병진·안현수 명품 브랜드 협업 전자제품의 권리사용료 관세 가산에 관한 연구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를 중심으로 -

채수홍·강은희·오정미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의 개시 요건에 대한 제언
- 경영상 지배력 취득 기준을 중심으로 -

송준현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의 결정요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제2권 제4호·통권 제8호(2025년 12월)

Vol. 2 No. 4 December 202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논문

한상현 관세행정구제에서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일원화 방안	1
권민수 팬데믹 충격 이후 국내 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 머신러닝 기반 결정요인 분석	29
고보민·김병진·안현수 명품 브랜드 협업 전자제품의 권리사용료 관세 가산에 관한 연구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를 중심으로	53
채수홍·강은희·오정미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의 개시 요건에 대한 제언 - 경영상 지배력 취득 기준을 중심으로 -	83
송준현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의 결정요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111

■ 부록

「관세무역연구」 투고 안내

Contents

■ ARTICLES

| Sang-Hyun Han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view and the Adjudication System
in Korea's Post-Customs Administration Relief System 1

| Min-Su Kwon

Post-Pandemic Financial Resilience of Export-import Logistics Firms:
A Machine Learning-Based Analysis of Determinant 29

| Bo-Min Ko · Byeong-Jin Kim · Hyun-Soo An

A Study on Customs Addition of Royalties for Luxury Brand Collaborative Electronic Products:
Focusing on Article 30(1)(4) of the Korean Customs Act 53

| Soohong Chae · Eunhee Kang · Jeongmi Oh

Proposals on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 83

| Joon-Heon Song

Determinants of Sectoral Trade Balance Dynamic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111

■ APPENDIX

Submission Guidelines

관세행정구제에서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일원화 방안

한상현*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일원화 방안 |
| II.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주요 법리 | V. 결 론 |
| III.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통합 논의 | 참고문헌 |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 중에서 선택적 단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의 바람직한 통합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또 다른 선택적 불복제도인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는 지면관계상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법체계와 각 제도의 입법취지가 서로 상이한 주요국들의 제도를 한국 제도와 단순 비교하여 발전방안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국내 두 제도의 통합만을 주요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적인 연구방법과 관세행정구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사회과학 조사연구방법 및 관세행정구제제도와 법률을 분석하여 관련 부분에 인용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병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제도는 동일 기능의 중복절차를 제거하여 납세자의 재결기관 선택에 따른 공정성 저해와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 증가를 해소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와 동일 쟁점에 대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행정심 결정 등을 위해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주제어 관세행정구제제도, 관세행정심판제도, 심사청구제도, 심판청구제도, 일원화, 전심절차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E-Mail: hantrade@nsu.ac.kr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과세당국은 관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 자체가 전문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관세는 과세 주체인 국가(과세당국)가 우월한 위치에서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되거나 과세권의 남용 등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과와 징수 처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세당국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작위)나 불행사(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 관세행정구제제도이다.

한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과세 전) 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후적(과세 후) 구제제도로는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제도(관세청), 심판청구제도(조세심판원), 심사청구제도(감사원), 및 행정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업계에서는 행정구제제도의 복잡성에 대해 많은 비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특히 현행의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선택적 단심제도로써 동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 그리고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가 서로 병렬로 중복¹⁾되어 운용되고 있다.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해 재결기관들이 서로 다른으로 인하여 만일 각 기관마다 상충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진다면 납세자들의 조세불복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 주체의 이원화(관세청과 감사원)와 동일 기능임에도 각 처분청이 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상이한 것도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4).

1) 기관 간 기능의 중복은 둘 이상의 기관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두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duplication)과 두 기관이 기능의 일부 영역을 공동 소유하는 중첩(overlapping)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결정을 통한 과세행정의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행정심의 심급(審級)제도가 보다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²⁾ 구체적인 개선방안들로는 유사하거나 동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 그리고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를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는 존치시키되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는 안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내국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지만(한국세무학회, 2018). 이것은 관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 중 선택적 단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통한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기 두 제도들에 비해 관세 분야에서 이용율이 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폐지의 당위성이 높게 주장되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는 폐지를 전제로 별도의 연구³⁾에서 다루기로 하여 지면관계상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법체계와 각 제도의 입법취지가 서로 상이한 주요국들의 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단순 비교하여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각 제도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 상충과 중복성의 해소, 불복청구 혼란의 감소, 신속한 결정과 철저한 권리구제의 구현, 경제성의 확보와 관세행정의 낭비 등의 관점에서 국내 제도의 통합을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논문이나 자료들을 주요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문헌 분석적인 연구방법과 관세행정구제 통계자료를 분석⁴⁾하는 사회과학 조사연구방법 및 관세행정구제제도와 법률을 분석하여 관련 부분에 인용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⁵⁾

2) 왜냐하면 과세당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따른 납세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상현, 관세행정구제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 타당성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24권 제4호, 2023년 12월 28일, pp.63-84를 참조

4) 관세불복사건의 청구 건수와 인용율을 분석하면 과세당국이 수행한 관세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 이 외에도 본 연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기반 자료의 활용 및 전·현직 관세공무원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2. 선행연구의 검토

1) 내국세 분야

내국세 분야에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는 관세 분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과 국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이동식, 2015)도 있고, 주요국들의 조세행정 불복제도를 비교한 연구(조원제, 2015)도 있으며 조세행정구제제도(조세불복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길용원, 2014 ; 안숙찬, 2017 ; 김인영·김동영, 2017 ; 한상국·박훈, 2005 ; 전형준·이광수, 2014, 국회입법조사처, 2024)도 있다. 또한 선택적 단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김종규, 2018)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들(정지선·최천규, 2012 ; 박상봉, 2016)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제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나 두 제도만을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구제제도나 조세불복제도라는 큰 제목 속에 하나의 장(章)이나 일정 지면을 할애하여 각 제도의 문제점이나 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상기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제도나 심판청구제도를 통합한 선택적 필수적 전치주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사후구제제도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 제도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⁶⁾

2) 관세 분야

최근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관세행정에서 사후 심사가 강화되면서 관세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자체는 내국세에 비해 수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6) 상기 연구들의 공통적 주장은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세 분야에서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만을 별도로 떼어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선행 연구는 현재로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03년에 이루어진 정재완의 연구(정재완, 2003)는 이들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선행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행정구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에서는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행정심판제도(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통합 및 정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간략히 지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⁷⁾

납세자 의식의 고양 등 관세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선행연구가 발표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환경변화에 적합한 한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발전방안, 특히 관세 분야에서 선행연구 자체가 전무한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의 통합을 전제로 한 발전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II.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주요 법리

1. 한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분석

1)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관세행정구제제도는 과세당국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관세행정구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세당국의 자기시정 기능과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행정기관 내부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적 보완기

7) 상기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관련 제도가 변경되어 일부 연구 내용이 법체제로 반영된 것들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능을 가지고 있다(박태의, 2017). 셋째, 행정심판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절차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 행정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유형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제도(관세청, 감사원), 심판청구제도, 행정소송제도가 있다.⁸⁾ 이중 행정소송제도는 법원이 담당하는 사법적 구제제도이고 나머지는 본부세관장이나 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과 같은 행정기관들이 담당하는 행정적 구제제도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도 과세 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처분을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도 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심사를 청구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⁹⁾

그런데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중복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나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또 다시 제기할 수 없다.¹⁰⁾

2.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의 개관

관세행정에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흠 없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의 특성상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조세마찰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이다.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이의신청권, 심사청구권, 심판청구권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권은 감사원법, 그리고 행정소송권은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10) 결국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에 앞서 총 3단계의 불복제도 즉, 1단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임의적 전심절차), 2단계로서 이의신청제도(사후적·임의적 전심절차), 3단계로서 심사청구(관세청과 감사원) 및 심판청구제도(조세심판원, 사후적·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에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제도, 심사청구제도, 심판청구제도, 및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고 사법적 구제절차로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그런데 불복제도들의 현실상¹¹⁾ 납세고지 후 불복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세행정구제제도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백종환·김진필·박흥수, 2019).

〈표 1〉 선택 가능한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의 경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 의한 불복제도의 선택	1. 이의신청 → 심사청구(관세청) → 행정소송
	2. 이의신청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3. 심사청구(관세청) → 행정소송
	4.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제도의 선택	5. 심사청구(감사원) → 행정소송

3.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도의 주요 법리

1) 심사청구제도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제도는 관세법 및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이나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구제수단이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¹²⁾ 납세자의 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¹³⁾을 내려야 한다. 만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¹⁴⁾

11) 전치절차로 일단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하였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감사원 심사청구에 이르는 실무상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과정(접수 → 심리 → 회의 → 결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까지 완료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의미인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관세법 제121조 제2항).

13)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각하, 기각 및 인용이 있다(관세법 제128조).

14) 다만, 결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관세법 제120조 제3항).

2) 심판청구제도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제도는 관세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이나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구제수단이다.¹⁵⁾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이다. 그러나 동일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¹⁶⁾ 납세자의 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심사하고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의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III.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통합 논의

1.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 병존에 따른 문제점

1) 심급체계와 법리적 모순

심급체계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상·하의 심급관계에 있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일 심급의 택일적 병렬관계로 배치하고 있는 현행의 불복청구제도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¹⁷⁾ 즉, 같은 단계의 심급을 기획재정부 하부기관인 관세청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인 조세심판원이 나눠서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의 체계와 법리적 측면에서도 모순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심급구조의 체계화와 단순화라는 큰 흐름에 역행하

15) 국세기본법 제55조

16)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17) 현행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선택적으로 대등한 불복절차가 된 것은 1999년 8월 31일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5993호)에 의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상급 심급절차였다.

는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2) 동일 기능을 가진 제도의 양립으로 인한 문제

현행 제도상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불복을 청구해야만 한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제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행 제도는 동일 기능을 가지는 제도(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가 택일적 병렬관계로 중복적으로 양립되어 있다.

서로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제도의 목적이나 의도, 대상 집단, 판단 범위, 고객(납세자)에 대한 제공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데(박태의, 2017),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제도는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두 제도는 모두 행정심판제도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 관세행정에 대한 통제와 법원의 부담 경감 등 동일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대상 집단은 두 제도가 어떤 세목(또는 과세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두 제도는 모두 동일 세목인 관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판단 범위는 두 제도들의 판단 대상이 사실 판단의 문제인지, 법률판단의 문제인지 또는 그 모두인지에 대한 것인데, 두 제도는 모두 사실 판단과 법률판단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판단 범위가 서로 일치한다.

넷째, 고객에 대한 제공서비스 측면은 납세자들이 두 제도로부터 받게 되는 결정의 문제인데, 두 제도 모두 납세자에 대한 제공서비스가 상이하지 않다.

공공영역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도가 서로 양립하면 행정부 조직과 인력의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기관 간 갈등의 원인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복수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선택을 위한 거래비용과 업무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3) 유사 또는 동일 사건에서 상이한 결정 가능성의 문제

유사 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 심급에 해당하는 제도(심사청구제도와 심판 청구제도)의 병존 속에서 현재 이 기관들이 내리는 각각의 결정을 조정하는 공적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안숙찬, 2017).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어떠한 구제 절차의 하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¹⁸⁾

만일 동일 쟁점에 대해 기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불복 처리의 일관성은 훼손될 수 있고, 납세자의 재결기관 선택 여부에 따라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이 깨어지게 된다면 과세행정과 관세불복제도에 대한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안숙찬, 2017 ; 한상국·박훈, 2005 ; 길용원, 2014).

4) 납세자의 불복청구제도 선택상의 문제

납세자들은 행정구제제도의 도입 이유, 이용율과 인용율, 특정 사건에 대한 기존 결정사례의 태도나 심리, 그리고 재결의 객관성과 공정성 실현 등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복청구제도의 유형을 최종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 기능을 가진 제도가 양립하면 납세자들로서는 본인의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해 어떠한 행정기관에 관세불복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거나 구제제도를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5) 재결기관의 다양성과 독자 운영으로 인한 불복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저하

현행 제도에서 재결기관은 세관장, 관세청(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으로 다수이고, 각 재결기관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8) 예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Dry Film이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느냐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은 2003년 1월 환급대상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국심 2002관 168), 동일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3년 2월 환급대상인 수출용원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 02-25).

다수의 재결기관이 존재하면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과세여부와 정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행정청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한 결정이 저해되고 불복처리의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수 있다(한국세무학회, 2018).

2. 심사청구제도의 문제점

1) 재결기관의 공정성과 균형감 상실

납세자들이 불복의 제1심 절차로서 심사청구를 선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심사청구는 원처분청이 행정심판기구(재결기관)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시정의 여지가 다른 구제제도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심사청구는 재결기관이 일선세관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세관과는 독립되어 있지 못하여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공정성과 균형감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권리구제제도가 될 수 있다(한상국·박훈, 2005. ; 김인영·김동영, 2017).

이러한 의미에서 심사청구를 불복청구수단으로 선택하는 납세자는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판청구를 불복청구수단으로 선택하는 납세자들보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2) 낮은 청구 건수와 인용율

아래 <표 III-1>과 같이 최근 11년(2014~2024) 동안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총 처리 건수는 288건으로 연평균 26.2건이 처리되었다. 관세청은 세관별 성과관리지표(CPM)에 '과세품질제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과세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상급기관(관세청)에 불복을 청구하여 처리되는 건수가 연평균 거의 3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최근 11년 동안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인용(일부 인용 및 재조사 결정 포함) 건수는 총 48건이었다. 또한 인용율은 최대 54.5%(2012년)에서 최하 0%(2020년)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연평균 24.2%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30.8%), 2018년(50.0%), 2021년(35.0%), 2022년(54.5%), 2023년(22.7%) 2024년(28.6%)을 제외하고는 평균 10%대의 낮은 인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 년도 중 2017년은 인용율이 7.1%에 불과하였고 2019년

도는 9.1%, 2020년도는 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작업이므로 불가피하게 자기방어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 운용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전년도 이월 (당해 년도접수)	3 (42)	18 (31)	16 (20)	18 (26)	18 (12)	10 (3)	18 (43)	21 (35)	34 (28)	22 (4)	1 (11)	179 (287)
처리대상 (처리)	45 (27)	49 (33)	36 (18)	44 (26)	30 (20)	45 (27)	61 (40)	56 (22)	62 (40)	26 (26)	12 (9)	465 (288)
인용건수 (인용률)	4 (30.8)	3 (10.7)	3 (17.6)	1 (7.1)	4 (50.0)	1 (9.1)	- (0.0)	7 (35.0)	18 (54.5)	5 (22.7)	2 (28.6)	48 (24.2)

자료 : 관세청, 관세연감, 각 년도

3. 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

1) 조세심판원의 업무처리 지연

납세자들의 높은 선호와 달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업무처리 기한¹⁹⁾의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다(이수진·김보례, 2014). 예로 2023년을 기준으로 법정기한(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 및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인 90일 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고작 5.2%에 불과한 실정으로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법정기한의 2배를 넘는 327일이다.

90일 이내 처리 규정이 훈시 규정이라는 판례²⁰⁾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도과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없으나, 납세자 권익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이 준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심판청구 처리기간 장기화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조세심판원으로 물리는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처리 기간은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서를 발송하는 날 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20) 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25992, 2010.10.14.

〈표 3〉 관세분야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처리기간 현황

(단위 : 건, %)

연도	60일 이내		61일~90일 이내		91일~180일 이내		180일 초과		평균 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4	3	0.7	91	22.4	155	38.1	158	38.8	170
2015	3	1.5	9	4.6	53	27.0	131	66.8	232
2016	4	1.0	57	14.9	54	14.1	267	69.9	319
2017	53	14.4	52	14.1	86	23.4	177	48.1	243
2018	1	0.4	10	3.9	88	34.1	159	61.6	270
2019	6	3.8	26	16.4	41	25.8	86	54.1	214
2020	9	4.1	13	6.0	59	27.2	136	62.7	222
2021	-	-	3	2.1	40	28.4	98	69.5	276
2022	1	0.8	4	3.1	24	18.9	98	77.2	275
2023	3	1.6	7	3.6	18	9.3	165	85.5	327
2024	4	2.4	10	6.0	64	38.3	89	53.3	209

자료 : 조세심판원, 2021 조세심판통계연보, 2022

2) 조세심판원의 과중한 업무와 불편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심리 및 의결하는 상임 심판관은 8명임에도 불구하고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현행 조직(원장, 8 심판부[내국세 5, 내국세(소액)+관세 1, 지방세 2], 17 조사관실 및 행정실)으로는 심판청구 사건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과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세종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것은 납세자들에게 질이 높으면서도 신속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인영·김동영, 2017).

4. 통합 논의의 필요성과 과거의 통합 논의

1) 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양한 사후적 불복절차가 있다는 것은 납세자로서는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불복절차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불복청구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여러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유사 또는 동일 기능을 가진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선택적 절차로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자는 견해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관세행정구제제도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기능 중복 차단과 유사 제도의 통합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관세불복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복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박태의, 2017). 그런데 현재의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를 어떠한 형태로 존치 및 통합시킬지에 대한 판단은 각 기관의 직무 범위와 역할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점진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거의 통합 논의

조세행정구제제도의 단순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즉, 2000년 이전에도 정부 조직을 구조 조정하는 측면에서 조세행정구제제도 중 심급의 단순화 방안으로써 심사청구 안(案)과 심판청구 안, 그리고 선택적 2심제 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심사청구 안은 관세청장(또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만을 행정심판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며, 심판청구 안은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만 허용하자는 것이고, 선택적 2심제 안은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심사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당시의 논의 과정에서 심사청구 안은 예전의 운용 실태를 볼 때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미흡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반대하였지만, 오히려 심판청구 안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가 찬성하였다. 그리고 선택적 2심제 안은 과세당국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사건의 여과적 효과로 행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위 세 가지 안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즉,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도를 병존하여 존치시키되 납세자가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한 것인데 이 체계는 그때부터 현행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²¹⁾

21) 게다가 세관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까지 선택적 사항으로 인정되었고, 사전적인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도 병행 운영되고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이다.

5. 통합의 부정론

1)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택권 제한

선택적 필수제도로써 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 등 다양한 불복절차가 있다는 것은 납세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불복청구제도의 선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다면 납세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2) 폐지 기관의 반발과 행정조직과 인력의 재개편 등 혼란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현재 어느 한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불복청구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해당 기관이 반발할 수 있다(이수진·김보래, 2014 ; 한상국·박훈, 2005). 또한 두 기관의 행정구제제도가 오랫동안 대등한 관계로 병존하여 오면서 각 기관들은 제도운영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다면 이들 조직과 인력을 대폭 재편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따르게 된다.

3) 통합 여건의 미성숙

관세행정구제제도의 기능에는 과세당국의 자기 시정 기능과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이 있는데, 심사청구제도는 관세청 내부의 자기 시정 기능이 더 강조되는데 비해 심판청구제도는 권리구제 기능이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복청구제도는 당연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강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관마다 강조하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고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 중 어느 쪽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해지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행정심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4) 시대 흐름의 역행과 현행 각 제도의 발전적 개선

여러 영역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선택권이 확대되는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를 통합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각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한국세무학회, 2018).

따라서 두 제도가 존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보다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의 자기 시정 기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²²⁾

3) 이용 건수와 인용율 다소의 한계

제도의 통합을 논의할 때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심사청구가 심판청구보다 이용 건수와 인용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용 건수와 인용율의 다소가 제도 존폐와 통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이용 건수와 인용율이 낮더라도 제도 자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만일 이용 건수와 인용율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면 각 기관의 무분별한 인용율 향상 경쟁으로 오히려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길용원, 2014).

6. 통합의 긍정론

1) 불복청구제도의 단순화 효과

두 제도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단순화시키면 신속한 권리구제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재결정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업무와 기구의 축소를 통해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2) 납세자 선택권 제한의 역효과

다양한 관세행정구제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복잡한 관세행정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쟁송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

22) 즉,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기피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은 합리적인 권리구제 흐름이 자리 잡은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결정내용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 후속적인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선택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수진·김보례, 2014).

3) 심급체계와 법리적 모순의 해소

전술과 같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심판청구제도)과 동일한 행정부(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관세청(심사청구제도)에 제기하는 불복청구제도는 동일 단계의 심급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하부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정부조직법상의 체계와 법리적 측면에서도 모순이며 행정부의 조직과 인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나 만일 두 제도가 통합되면 이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4) 동일 기능 제도의 양립에 따른 혼란 해결

동일 기능을 가진 불복청구제도가 양립한다는 것은 동일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중복되면 관세불복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불복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며 기관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결정이 내려지면 과세행정의 신뢰성도 손상될 수 밖에 없다(김인영·김동영, 2017).

그런데 하나로 통합되면 동일 기능 심급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들이 근원적으로 해소된다. 즉,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청구제도가 일원화되면 동일 기능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결기관 선택에 따른 공평성 저해와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 증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쟁점에 대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5) 공평성 저해 요소의 해소와 비용 절감

만일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사례나 판단을 내리는 재결기관만을 불복청구기관으로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납세자간 공평성은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결정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소송제기권이 있는 반면 과세당국은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공평성도 저해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두 제도가 통합되면 이러한 공평성 저해 요소는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각 행정심급별 특성과 견해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불복대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불복대리 비용들이 증가될 수 밖에 없지만 제도가 통합되면 이러한 비용들이 감소하게 된다(한국세무학회, 2018).

6)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 전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제도와 함께 동일한 심리 대상과 기능을 가지는 동급의 행정구제제도(관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를 양립시켜 납세자로 하여금 이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은 다른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운용방식이다(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 박태의, 2017).

IV.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일원화 방안

1. 통합의 긍정론 지지 : 일원화의 필요성

1)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

사후적 관세행정구제제도 중에서 심사청구제도(관세청)와 심판청구제도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는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성격상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다.

또한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보다는 감사권에 근거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의 시정 기능 측면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리고 관세불복의 경우 청구 건수가 미미하고 인용 건수도 거의 없으며 인용률의 기복도 매우 심하고 외국에서는 이 제도와 같은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제도는 도입 취지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의 통합론 지지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된다면 필요적 전심절차는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제도만 남게 된다.

다양한 불복청구제도는 납세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 구제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구제절차는 오히려 납세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할 수 있다(김인영·김동영, 2017). 특히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제도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제도의 병렬적 존치는 전술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나의 불복제도로 통합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심사청구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김영조·이재교·김재광, 2005)과 심판청구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안숙찬, 2017 ; 길용원, 2014 ; 전형준·이광수, 2014 ;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이 있으나 저자는 후자 즉,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2. 심판청구제도로의 일원화

1) 심판청구제도로의 통합

저자는 필요적 전심절차로 병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제도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제도로 통합하여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그 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심판청구제도로의 일원화 논거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와 심사청구제도로 단일화하는 경우의 한계

과세당국의 자기 시정 기능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사청구제도를 구태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 즉, 동일한 관세 사건에 대해 동일한 재결청(관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심사청구라는 중복적인 불복제도를 존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재결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재결청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더라도 그 재결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것과 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사청구제도로 단일화하는 것은 국가 행정력의 낭비만을 가져오는 무용한 절차 차이이며 납세자에게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그 심리에 참여하는 위원들과 심사청구의 심리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서로 동일하다(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즉, 사전적 권리구제의 심의위원과 인적 구성이 사후적 권리구제의 심의위원 및 인적 구성과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 심사청구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청장이 심리·재결권을 갖도록 하고 사후구제제도는 조세심판원이 심리·재결권을 갖는 심판청구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세당국으로부터 독립된 담당 기관의 지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비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조세심판원의 심판관 회의는 의결 기구이지만 관세청의 관세심사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관세청은 조세심판원에 비해 과세당국의 독립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3) 행정심판 전치주의와의 부합성

헌법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준사법 절차화를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제도는 조세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사건의 병합과 분리, 자유 심증에 기초한 사실 판단, 질문검사권 등 사법절차에 준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심판청구제도에는 심사청구제도와 달리 청구인의 증거서류나 증거물 제출, 사건의 병합과 심리, 질문검사권,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자유 심증주의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강제되는 현행 제도에서 행정심이 사법심의 전심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행정심급은 오히려 법의 적법절차 보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조세심판 전치주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심판청구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측면에서도 보다 더 적합하다.

(4)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담보

심판청구제도는 관세심판절차에서의 사법적 절차의 도입 외에도 심판기관의 독립성, 합의제에 의한 재결, 조세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등과 같은 조세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당사자의 분쟁은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담당해야만 그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행정의 집행기관인 관세청장의 지휘와 명령권 밖에 있는 조세심판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길용원, 2014 ; 안숙찬, 2017 ;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5) 납세자들의 높은 이용 빈도와 인용율

관세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전심절차 가운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접수 건수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술한 <표 III-1>과 후술할 <표 IV-1>에 나타나 있듯이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관세청에 대한 당해 년도 심사청구 접수 건수는 11건인데 비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접수 건수는 165건이 되어 거의 15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처리 대상 건수는 최근 11년(2014년~2024년) 동안 3,740건이었으며 처리 건수는 2,615건으로 연평균 약 238건이 처리되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 건수는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처리 건수 보다는 약 9배 더 높은 수치이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보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접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운용 측면에서 심판청구가 보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 건수와 인용율은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인용 건수와 인용율 보다 매우 높다. 심판청구의 인용 건수는 2014년 82건, 2016년 84건, 2018년 43건, 2020년 69건, 2022년 30건, 2023년 47건, 2024년 73건이며 인용율은 최대 56.4%(2014년)에서 최하 17.8%(2024년) 사이에서 큰 변동폭을 유지하며 연평균 36.2%의

높은 인용율을 나타내고 있다.²³⁾

최근 11년 동안 총 654건과 평균 36.2%를 나타내고 있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 건수와 인용율은 총 48건과 평균 22.2%를 나타내고 있는 관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보다 인용 건수는 약 14배, 인용율은 거의 1.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표 4〉 관세분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 운용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전년도 이월 (당해 년도 접수)	79 (426)	98 (342)	244 (283)	145 (329)	106 (219)	67 (182)	90 (198)	71 (161)	91 (161)	125 (143)	75 (165)	1,191 (2,609)
처리 대상 (처리)	505 (407)	440 (196)	527 (382)	474 (368)	325 (258)	249 (159)	288 (217)	232 (141)	252 (127)	268 (193)	240 (167)	3,740 (2,615)
취하	26	32	15	8	15	14	8	5	5	6	10	144
각하	15	9	12	21	29	5	21	6	8	14	30	169
기각	151	83	231	171	143	81	106	94	78	125	99	1,414
재조사	133	43	40	41	28	21	13	4	6	1	3	333
인용건수 (인용률)	82 (56.4)	29 (43.9)	84 (33.8)	127 (45.1)	43 (29.5)	38 (40.7)	69 (39.2)	32 (26.5)	30 (29.5)	47 (25.7)	73 (17.8)	654 (36.2)

자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통계연보, 각 년도

총 인용 건수와 평균 인용율이 심판청구가 심사청구보다 높다는 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서 심판청구가 더 적극적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불복청구인들이 심사청구보다 심판청구를 보다 더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의 인용 건수가 관세청의 심사청구보다 현저히 높은 점(거의 14배)과 심판청구의 인용율이 심사청구의 인용율 보다 상당히 높은 점(거의 1.6배)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통폐합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이 더 강조되는 심판청구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이는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36.2%에 달하며 청구가 제기된 건 중 건의 36%는 과잉 관세로 인해 부과를 취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세당국에서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가운데 10건 중 4건은 납세자가 승소한 것이다.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관세의 부과 징수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였고 합리성이 결여되었지만 행정심급 과정에서 많이 구제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3. 통합 전후 각 제도의 보완 과제

첫째,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가 중복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복 운영 과정에서도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이 재결청으로부터 독립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심판청구제도는 관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관공무원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두 제도가 조세심판원의 업무로 통합되면 조세심판원에 제기되는 불복 업무가 급증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의 과중한 업무량의 해소와 심판청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지역에도 지방 지원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두 제도가 조세심판원의 업무로 통합되면 조세심판원도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조세 법원에 준하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조세심판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비상임 심판관제도를 상임 심판관제도로 전환하고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법원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결정 기간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기한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V. 결 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복잡한 관세행정구제제도는 그 구조와 절차를 보다 단순화해야 한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이 제도와 동일한 기관이 동일 내용을 판단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낮은 이의신청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는 도입 취지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²⁴⁾

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하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로 병렬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는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업무로 통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합되면 동일 기능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결기관 선택에 따른 공정성 저해와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 증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쟁점에 대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행정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가 하나로 통합되면 관세행정구제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심판청구제도-행정소송제도'로 삼급구조가 단순하게 된다. 이것은 납세자가 임의적 선택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 하나만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편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고, 이의신청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고액사건은 관세청에서 직접 심리·결정하도록 결정기관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기관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사전적 권리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심사청구제도와 심판청구제도를 심판청구제도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최근 관세행정에서는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반발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건수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복 및 행정소송에서 과세당국의 패소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납세자들이 처분청의 과세 논리를 쉽게 수긍하지 않는 등 조세마찰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복청구의 증가를 막고 과세당국의 과세신뢰도를 제고하고 위해서는 관세행정구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세행정 자체의 정확성을 고도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4)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상현, 관세행정구제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 타당성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24권 제4호, 2023.12. pp.63-83.참조.

한편, 본 연구는 법률 규정의 해석을 주된 분석도구로 활용한 문헌 및 법리적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실증분석이 추가되어야 하며, 일원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조세심판원의 인력·조직 확충 문제, 국무총리실·기재부·관세청 간 권한 조정 등 현실적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도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조세불복제도의 개편방안-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NARS 입법·정책, 153, 1-146.
- 길용원. (2014).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 법률논총*, 3(2), 3-34.
- 김영조·이재교·김재광. (2005).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국세월보*, 465, 253.
- 김인영·김동영. (2017). 국제기본법상 납세자의 조세불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14(1), 201-228.
- 김종규. (2018). 국제청 심사청구와 심판원 심판청구제도 통합론. *조세금융*, 23, 17.
- 박상봉. (2016).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35(2), 67-81.
- 박태의. (2017). 납세자권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와 심판행정 개선에 대한 연구. *훈련 결과보고서*, 14.
- 백종한·김진필·박홍수(2019). 「조세불복실무」. 84.
- 안숙찬. (2017). 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18(5), 111-140.
- 이동식. (2015). 국제기본법상 국제불복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1-33.
- 이수진·김보례. (2014).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32, 60-63.
- 전형준·이광수. (2014).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56, 150-173.
- 정지선·최천규. (2012).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중앙법학*, 14(2), 199-243.
- 정재완. (2003).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관세학회지*, 4(3), 45.
- 조원제. (2015). 한·일의 행정불복심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법제*, 668, 157-200.
- 한국세무학회. (2018).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67-70.
-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절차 개선방안 연구」. 17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31-32.
- 한상국·박훈. (2005).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4.
- 한상현. (2023). 관세행정구제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폐지 타당성 논의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4(4), 63-83.

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view and the Adjudication System in Korea's Post-Customs Administration Relief System

Sang-Hyun Han*

This study specifically suggested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tegra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view of Korea Customs Service(KCS) and the Adjudication System of the Tax Tribunal, which is operated as an optional one-trial system in Korea's Post-Customs Administration Relief System.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systems operated in parallel as a necessary choice system are integrated into the Tax Tribunal's Appeal System. This is because integration simplifies the redundancy process of the same function, eliminates the problems of increased taxpayer burden due to the longer term of the taxpayer's selection of institutions, and enables consistent and predictable decisions on the same issue.

And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s Examination Request System because it is rarely used by taxpayers and does not help with the relief of taxpayers' rights. In addition to the abolition of the Objection System and the BAI's Examination Request System, If the Appeal System for Review and the Adjudication System are integrated, it is desirable that Korea's Customs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be simplified into a 'the Pre-Taxation Audit Appeal System-the Adjudication System of the Tax Tribunal-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 Keywords Customs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the Appeal System, 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Systems, the Adjudication System of the Tax Tribunal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Nam Seoul University, hantrade@nsu.ac.kr

팬데믹 충격 이후 국내 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 머신러닝 기반 결정요인 분석

권민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실증연구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방법론 | 참고문헌 |

본 연구는 팬데믹과 같은 외생적 충격 이후 국내 수출입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 수출입물류기업의 재무자료와 거시경제 지표(GDP, 수출입, 물류산업지수)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회복력은 팬데믹 전후(2015-2019년, 2020-2024년) 기간의 주요 재무지표 변동률을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Gaussian Mixture Model(GMM)을 활용해 기업을 고회복형, 중간형, 취약형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CatBoost, LightGBM, Logistic Regression을 포함한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회복력 수준을 예측하고, SHAP 분석을 통해 변수별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CatBoost 모형이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으며, 주요 결정요인은 자산증가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증가율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물류기업의 회복력이 외부 경기변동보다는 내부 재무구조의 질적 특성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한다. 또한 SHAP 분석 결과, 자산성장률과 부채비율은 모든 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여, 선제적 자산 투자와 부채 관리의 균형이 회복력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GDP, 수출입 등 외생변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 회귀모형이나 재무비율 비교를 넘어, 비선형적 변수 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머신러닝 접근법을 통해 물류산업의 회복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정책적으로는 기업의 자산 기반 성장전략, 부채구조 안정화, 내생적 재무조정 역량 강화가 회복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팬데믹, 재무회복력, 수출입물류기업, 머신러닝

* 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E-Mail: minsu.kwon@sch.ac.kr

I.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된 COVID-19 팬데믹은 이동 제한, 국경 봉쇄, 공급망 단절 등 다차원적인 충격을 산업 전반에 걸쳐 유발하였다. 특히 물류산업은 국제·국내 수요·공급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러한 충격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이 운송 지연, 원자재 부족, 물류비 상승 등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물류기업의 운영비 증가와 수익성 저하가 현실화되었다.

국내 물류산업은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를 담당하는 해운·항공 운송과 이를 연결하는 내륙 운송, 보관, 3PL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변동과 공급망 교란에 높은 민감도를 가진 산업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초기 항공·해운 운송량의 급감과 주요 무역 거점의 물류 병목 현상으로 인해 물류기업의 운송 효율성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운영비 상승과 수익성 저하가 동시에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 소비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으로 특정 기업은 오히려 물량이 증가하여 이중적인 충격 구조가 형성되는 특수성이 있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성은 기업 간 회복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위기 충격 이후 재무성과 회복 궤적 또한 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했다. 이 점은 단순한 경기 영향 분석이 아닌 회복력 기반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경영·재무적으로 정상 궤도로 회복하느냐는 회복력(Resilience)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물류기업처럼 외부 충격에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평상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재무회복력(Financial Resilienc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종합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팬데믹 전후 재무지표의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회복력 예측모형 적용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산업분류(KSIC)상 운수 및 창고업(H)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상위 30개 수출입물류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무 데이터를 사용하여 팬데믹 이전 대비 이후의 재무지표 변동률을 산출한다. 이들 기업은 국내 물류 시장의 매출 대부분을 점유하는 핵심 기업군으로서, 단순한 표본을 넘어 산업 전체의 재무적 특성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기업별 회복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집화(clustering)로 유형화한 뒤,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위기 시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높은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물류산업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재무회복력을 정량화하여 국내 기업에 적용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실증적 토대를 제공한다. 둘째, 기존 연구가 대부분 위기 직후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던 반면, 본 연구는 팬데믹 충격 이후 중장기(2021~2024년)에 걸친 회복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회복력을 살핀다. 셋째, 회복력 평가를 단순 기술통계에 머무르지 않고, 군집화 및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및 기업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진단 도구로 확장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충격 하에서 국내 종합물류기업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규명하며, 나아가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팬데믹 및 외부충격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

외부충격(external shock)은 공급망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존하는 산업일수록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충격을 미친다. Hendricks와 Singhal(2005)은 827건의 공급망 차질 사건을 분석하여 충격 발생 후 2년간 주가와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Wagner & Bode(2008)는 공급망 충격이 비용 상승과 재무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보고했고, Craighead et al.(2007)은 충격의 심각도가 네트워크 설계 구조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Ivanov & Dolgui(2020)는 팬데믹이 전통적 위기와 달리 동시다발적이며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물류기업은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충격 전이효과(transmission effect)가 강하게 나타난다. Paul & Chowdhury(2021)와 Chowdhury et al.(2021)은 팬데믹이 공급망 중단, 운송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수익성·레버리지에 동시다발적 영향을 주었다고 실증했다. Linnenluecke(2017)는 외부충격이 기업 간 회복

궤적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며, 충격 자체보다 회복력(resilience)이 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 분석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 조직 회복력(Resilience)과 재무회복력(Financial Resilience)

회복력(Resilience)은 조직이 외부 충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흡수하고(bounce back), 적응하며(bounce forward), 나아가 성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uchek, 2020). Duchek는 이를 예측(anticipation), 대응(coping), 적응(adaptation)의 3단계 역량으로 구분했으며, Fiksel(2015)은 조직이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핵심 능력으로 회복력을 설명하였다. Linnenluecke(2017)는 회복력을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우위의 기반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 재무 영역으로 확장되어 재무회복력(Financial 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Gereffi, 2020). 재무회복력은 충격 이후 재무지표의 하락 폭과 회복 속도, 안정성을 포괄하는 정량적 개념으로, 위기 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Gittell et al.(2006)은 항공산업의 9·11 충격 사례에서 재무회복력의 차이가 기업의 대응전략 및 지속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실증했다.

3. 재무회복력 분석에서의 변수 선정 근거

재무회복력 분석에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 범주의 재무변수가 사용된다. 첫째, 유동성(Liquidity)은 위기 시 단기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완충력(Buffer)을 의미하며, 팬데믹 기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지표이다(Wagner & Bode, 2008; Paul & Chowdhury, 2021). 둘째, 수익성(Profitability)은 내부 자금조달 여력을 나타내며, 회복을 위한 재원 확보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Hendricks & Singhal, 2005). 셋째, 레버리지(Leverage)는 외부 충격 시 재무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howdhury et al., 2021).

마지막으로 성장성(Growth), 특히 자산성장률(Asset Growth)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물류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 운영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변수이다. Queiroz et al.(2020)은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를 지속하여 자산

기반을 유지한 기업이 회복기에 더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가 성장성 지표를 핵심 변수로 설정한 경제학적 근거가 된다.

4. 회복력 측정 및 분석 방법론의 선행 연구

복력 측정 방법은 보통 충격 이전(pre-shock)과 이후(post-shock)의 재무지표 변동률을 기반으로 한다. Hendricks & Singhal(2005)은 공급망 충격 전후의 재무성과 차이를 통해 충격 지속기간과 회복 속도를 계량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회복속도등의 지표 구성은 Linnenluecke(2017)가 제시한 ‘충격 흡수’와 ‘반등 탄력성’ 개념을 정량화한 것이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기업이 외부 충격으로 훼손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균형점으로 복원하는지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타당성을 갖는다.

또한 최근에는 군집분석을 활용해 기업 간 회복력 수준을 유형화하는 연구도 확산되고 있다. Gittell et al.(2006)은 항공사들을 회복패턴에 따라 분류해 전략적 대응의 차이를 분석했고, Chowdhury et al.(2021)은 팬데믹 하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클러스터링하여 회복속도 차이를 실증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팬데믹 전후 재무지표 변동률 산출 → 군집분석 → 머신러닝 기반 회복력 예측이라는 방법론적 설계의 토대가 된다.

5. 본 연구의 차별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제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충격의 영향을 파악하거나, 회복력 개념을 질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데 집중해왔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산업 특수성 반영이다. 본 연구는 팬데믹 충격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국내 매출 상위 30개 핵심 물류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단순 무작위 표본 분석이 놓칠 수 있는 산업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구조적 회복 패턴을 규명한다. 물류기업은 공급망의 핵심 허브이자 충격 전이의 전방·후방 접점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회복력 분석의 적합한 표본이다.

둘째, 정량적 회복력 지표의 활용이다. 단순한 충격 영향 측정에 그치지 않고, 팬데믹 전후 재무지표의 변동률을 기반으로 회복력을 계량화함으로써, 질적 논의에 머무른 회복력 연구를 실증 분석으로 확장한다.

셋째, 머신러닝을 결합한 예측 접근이다. 군집분석으로 회복력 수준을 유형화한 뒤, 머신러닝을 통해 사전 예측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회복력 연구를 진단에서 예측 가능한 관리 도구로 발전시킨다.

넷째, 국내 실증 연구의 확장이다. 팬데믹 전후 장기간(2015~2024년)에 걸친 국내 물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위기 충격에 대한 한국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회복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

III. 연구방법론

1. 연구 설계 및 자료

본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국내 종합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Financial Resilience)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회복력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정량적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팬데믹 전후의 재무지표 변동률을 산출하고, 회복력 수준을 유형화한 뒤,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형을 설계하여 회복력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대상은 국내 표준산업분류(KSIC)상 운수 및 창고업(H)을 영위하는 국내 매출액 상위 30개 수출입물류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무작위 추출방식이 아닌, 국내 물류산업 매출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구조적 회복 특성을 대변하는 핵심 기업군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분석 기간은 팬데믹 전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년으로 설정하였다. 팬데믹 이전(2015~2019)은 기준 기간(pre-shock), 팬데믹 및 이후(2020~2024)는 충격 및 회복 기간(post-shock)으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통계청(KOSIS) 등 공식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결측치는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보정하고, 이상치(Outlier)는 IQR의 1.5배수를 기준으로 Winsorizing하여 데이터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 변수 선정 및 회복력 지표 산출

본 연구는 재무회복력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Hendricks & Singhal, 2005; Wagner & Bode, 2008; Linnenluecke, 2017; Chowdhury et al., 2021)에서 제시된 주요 재무변수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1〉 선정변수

구분	변수명	정의	목적
유동성	Current Ratio, Quick Ratio	단기 지급능력	충격 흡수력
수익성	ROA, ROE	수익 창출력	회복 자원 확보
레버리지	Debt Ratio, Borrowing Dependence	부채구조	재무적 취약성 평가
성장성	Sales Growth, Asset Growth	성장 및 확장력	반등 가능성 평가
통제	GDP, 수출입량, 물류산업지수	외생요인	구조적 추세 통제

자료 : 선행연구로 선정

회복력 지표는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충격 전후의 재무성과 변화율과 복원력을 정량화한 것으로, 변동률(Volatility Ratio), 회복률(Recovery Ratio), 회복속도(Recovery Speed)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회복속도는 Linnenluecke(2017)가 제시한 ‘반등 탄력성’ 개념을 정량화한 것으로, 경제학적으로는 위기 시 기업의 기초체력과 현금흐름 복원력을 나타내는 핵심 대리변수(Proxy)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절대 수준이 아닌, 충격의 강도·회복의 완전성·회복의 속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1) 변동률(Volatility Ratio)

$$V_i = \frac{X_{post,i} - X_{pre,i}}{X_{pre,i}} \times 100$$

여기서 $X_{pre,i}$ 는 팬데믹 이전(2015~2019년) 평균값, $X_{post,i}$ 는 팬데믹 이후(2020~2024년)의 실제값 또는 이동평균값이다. 변동률은 충격 발생에 따른 재무지표의 상대적 감소 또는 증가폭을 나타내며, 충격의 강도를 반영한다.

2) 회복률(Recovery Ratio)

$$R_i = \frac{X_{post,i}}{X_{pre,i}} \times 100$$

회복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이후 재무지표의 회복 정도를 의미하며, $R_i = 100\%$ 일 경우 충격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3) 회복속도(Recovery Speed)

$$S_i = \frac{R_i}{T_i}$$

여기서 T_i 는 충격 발생 시점부터 회복 도달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동일한 회복률이라도 T_i 가 짧을수록 회복 속도가 빠르고, 회복 민첩성(agility)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Pre값은 팬데믹 이전 5개년(2015~2019) 평균값이며, Post값은 팬데믹 이후 5개년(2020~2024)의 실제값 또는 이동평균값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회복력 지표(변동률, 회복률, 회복속도)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GMM 군집분석의 입력변수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회복력 수준(고·중·저)을 식별하고, 머신러닝 분석의 종속변수로 연계하였다.

3. 연구모형

1) GMM 군집분석을 통한 회복력 수준 유형화

본 연구는 기업의 회복력 수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Gaussian Mixture Model(GMM)을 적용하였다. GMM은 각 관측치가 여러 군집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확률기반 군집화 기법으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Bishop, 2006). GM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x) = \sum_{k=1}^K \pi_k \mathcal{N}(x | \mu_k, \Sigma_k)$$

여기서 π_k 는 혼합계수, μ_k 와 Σ_k 는 각각 평균과 공분산 행렬이다. 파라미터는 Expectation-Maximization(EM)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되며(Dempster et al., 1977), 군집 수는 BIC, AIC, 실루엣 계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고회복형·중간형·저회복형의 세 그룹을 도출하였고, 결과는 t-SNE와 UMAP으로 시각화하였다(Fraley & Raftery, 2002).

2) 머신러닝 기반 회복력 예측모형

군집분석 결과로 도출된 회복력 수준을 종속변수(Target)로, 재무 및 거시경제 변수를 설명변수(Features)로 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첫째, LightGBM(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은 Gradient Boost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 결정트리 앙상블 모형으로, 학습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데이터에서의 비선형 관계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장점이 있다(Ke et al., 2017). 또한 잎 단위(tree leaf-wise) 성장 방식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며, 변수 간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어 복합적 재무지표의 영향 분석에 적합하다.

둘째, CatBoost(Categorical Boosting)는 범주형 변수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Gradient Boosting 계열 알고리즘으로, Target Leakage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 통계 변환을 사용한다(Dorogush et al., 2018). 이 방법은 범주형 피처가 많은 재무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과적합을 억제해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확보한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는 회복력 수준을 확률적 범주로 분류하는 선형모형으로, 변수의 기여도와 방향성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osmer et al., 2013). 비록 복잡한 비선형 구조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비선형 모델과의 비교 기준선으로 유용하다.

데이터는 학습(70%)·검증(15%)·테스트(15%)로 분할하며, Optuna 기반 AutoML을 활용하여 하이퍼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 성능 평가는 Accuracy, F1-score, ROC-AUC, Log Loss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3) SHAP 기반 변수 영향도 분석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Lundberg & Lee(2017)의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값을 산출한다. SHAP은 각 설명변수가 예측값에 기여한 정도를 게임이론적 방식으로 계산하여 블랙박스 모델의 해석 문제를 보완한다.

$$\phi_i = \sum_{S \subseteq F \setminus i} \frac{|S|!(|F|-|S|-1)!}{|F|!} [f_{S \cup i}(x_{S \cup i}) - f_S(x_S)]$$

i 의 SHAP 값이며, 이는 각 설명변수가 예측값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와 영향 방향을 파악하고, 회복력 수준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4. 검증 및 평가 방법

본 연구는 구축된 세 가지 예측모형(LightGBM, CatBoost, Logistic Regression)의 예측 성능과 해석 가능성을 비교·평가하여 최적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의 평가는 정확도(Accuracy), F1-score, ROC-AUC 등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였다. 특히 클래스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는 재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정확도보다는 모형의 판별력을 나타내는 ROC-AUC(Area Under Curve)를 핵심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1) 평가 지표

예측 성능은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된다.

〈표 2〉 혼동행렬 구성표

		예측값	
		False(0)	True(1)
실제값	False(0)	TN(진음성)	FP(위양성)
	True(1)	FN(위음성)	TP(진양성)

자료 : Hastie et al. (2009)

$$Accuracy = \frac{(TP + TN)}{(TP + TN + FP + FN)}$$

$$Precision = \frac{TP}{TP+FP}$$

$$Recall = \frac{TP}{TP+FN}$$

$$F1Score = 2 \times \frac{Precision \times Recall}{Precision + Recall}$$

정확도는 전체 분류 정확도를, 정밀도와 재현율은 각각 오분류를 최소화하고 실제 양성(회복형) 기업을 탐지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F1-score는 두 지표의 조화 평균으로,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분류 경계의 판별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신자판별특성곡선(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을 기반으로 한 AUC(Area Under Curve)를 산출하였다.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 \int_0^1 TPR(FPR^{-1}(X))dx \text{ ----- 식 (1)}$$

여기서

$$TPR = \frac{TP}{TP+FN}, \quad FPR = \frac{FP}{FP+TN}$$

이다. 본 연구에서는 F1-score를 주 평가 지표, ROC-AUC를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2) 모형 비교 및 선정

모든 예측모형은 동일한 데이터 분할(학습 70% - 검증 15% - 테스트 15%)을 적용하였으며, 5-Fold 교차검증을 통해 과적합을 방지하였다. 각 접기(fold)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세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F1-score가 가장 높은 모형을 기본 모형(primary model)으로 선정하고, ROC-AUC와 Log Loss가 일관되게 우수한 모형을 보조 모형(secondary model)으로 병기하였다. 성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두 모형을 병렬 해석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3) 안정성 및 해석 가능성 검증

모형의 통계적 안정성과 경제적 해석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였다.

우선,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와 상관계수 행렬을 검토하였다. 이후,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값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예측 기여도를 정량화하였다. SHAP 분석 결과를 통해 변수의 영향 방향과 크기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이론적 기대(예: 유동성 ↑ → 회복력 ↑, 레버리지 ↑ → 회복력 ↓)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IV. 실증연구

1. 데이터 전처리 및 검증 결과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물류기업 30개사 재무자료와 거시경제지표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원자료는 기업별·연도별로 결측치와 이상치를 점검한 후, 결측치는 선형보간법으로 보정하고 이상치는 IQR 1.5배수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부 재무지표(예: ROA-ROE, 유동비율-당좌비율)에서 0.8 이상의 높은 상관이 관찰되었으며, VIF(분산팽창지수) 또한 10을 초과하는 항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호의존성을 제거하기보다는, 최신 트리 기반 머신러닝 모형의 비선형적 분할 구조와 내부 정규화 과정을 통해 공선성 문제를 보정하였다. 이는 변수 제거로 인한 해석력 손실을 방지하면서, 재무지표의 상호작용 효과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접근이다. 모든 연속형 변수는 표준화를 적용하여 단위 차이에 따른 편향을 제거하였으며, 최종 데이터셋은 각 변수의 분포가 정상성 조건을 충족하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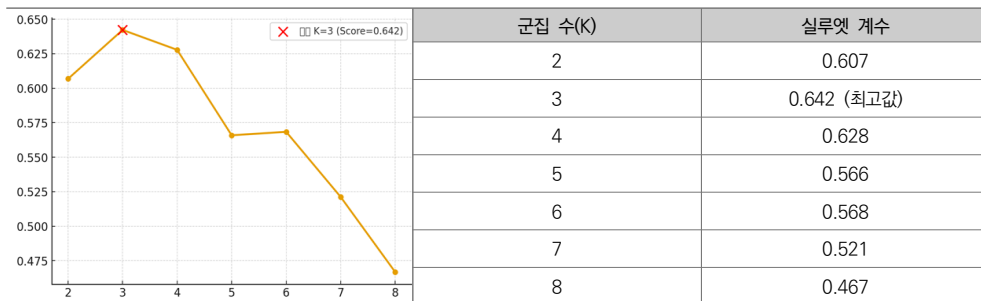
〈표 3〉 VIF 분석 결과

변수	VIF
GDP_Growth	5650.423064
Logistics_Index	5634.857021
Quick_Ratio	28.457686
Current_Ratio	26.004573
Import_Growth	19.602052
Export_Growth	10.220698
Borrowing_Dependence	5.247124
ROA	4.297629
ROE	4.129503
Sales_Growth	3.453897
Debt_Ratio	2.714797
Asset_Growth	2.634073

2. GMM 군집분석 결과

Gaussian Mixture Model(GMM)을 활용하여 재무회복력 수준에 따른 기업군을 분류한 결과, 최적 군집 수는 BIC 및 실루엣 계수 기준으로 3개로 도출되었다.

〈표 4〉 BIC 및 실루엣 계수 분석 결과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회복형(Cluster 1), 중간형(Cluster 2), 취약형(Cluster 3)으로 구분되었다. 〈표 4〉는 주요 재무지표의 변동성(Volatility) 평균을, 〈표 5〉는 회복률(Recovery) 평균을, 〈표 6〉는 회복속도(Recovery Speed) 평균을 각각 나타낸다.

〈표 4〉 Cluster별 주요 재무지표의 변동성(Volatility)

Cluster	Asset Growth	Sales Growth	Current Ratio	Quick Ratio	Debt Ratio	Borrowing Dependence	ROA	ROE
0	-2.9023	-13.574	-0.0875	-0.0806	0.1313	0.2278	-0.5752	0.1838
1	-1.6774	-1.6394	-0.2506	-0.2374	0.1834	0.1013	0.1464	-0.0915
2	0.2698	-0.6798	0.2184	0.2226	-0.2932	-2.0474	0.3462	-0.1103

〈표 6〉 Cluster별 주요 재무지표의 회복률(Recovery)

Cluster	Asset Growth	Sales Growth	Current Ratio	Quick Ratio	Debt Ratio	Borrowing Dependence	ROA	ROE
0	3.2796	-10.1291	1.0875	1.0806	0.8687	0.5222	1.5752	0.8162
1	-0.7527	-0.1522	1.2506	1.2374	0.8166	0.8987	0.8536	1.0915
2	0.6788	1.049	0.7816	0.7774	1.2932	3.0474	0.6538	1.1103

〈표 7〉 Cluster별 주요 재무지표의 회복속도(Recovery Speed)

Cluster	Asset Growth	Sales Growth	Current Ratio	Quick Ratio	Debt Ratio	Borrowing Dependence	ROA	ROE
0	3.2069	-2.8623	0.72	0.7108	0.7854	0.3053	1.432	0.0777
1	-0.9088	-0.5356	1.1968	1.1841	0.2139	0.3641	0.4084	0.8598
2	0.3934	0.8024	0.1257	0.1258	1.1414	2.8569	0.1641	0.9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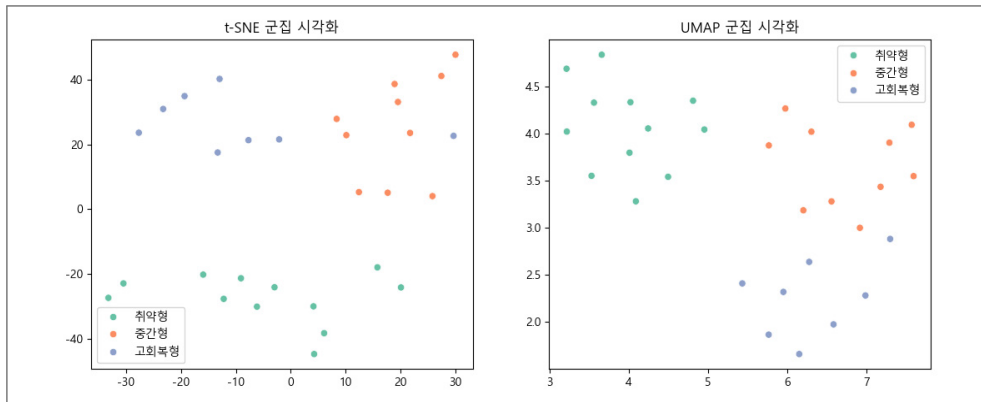
고회복군(Cluster 0)은 자산과 매출의 변동폭이 다소 크지만, 위기 이후 빠른 회복률과 높은 회복속도를 보였다. 이 집단의 기업들은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도 자산과 매출을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복구하며, 수익성(ROA, ROE) 또한 짧은 기간 내에 반등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낮아 외부자본 의존도가 적고, 내부 유동성 확보와 자본 운용의 효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취약군(Cluster 2)은 자산과 매출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수익성 지표의 회복 수준과 속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높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로 인해 위기 이후 재무비용 부담이 지속되었고, 내부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와 비용 조정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외부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형태의 회복 지체가 관찰되며, 이는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구조적 한계가 기업 회복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시각화 결과(t-SNE, UMAP)에서도 세 군집 간 명확한 분포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GMM의 확률적 분류 결과와 일관성을 보였다. 특히 고회복군은 다른 집단과의 거리가 뚜렷

하게 형성되어, 위기 이후 재무회복 경로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반면 중간군과 취약군은 일부 영역에서 근접한 분포를 나타내며, 회복 과정에서 유사한 재무 조정 패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림 1〉 GMM 군집분석 시각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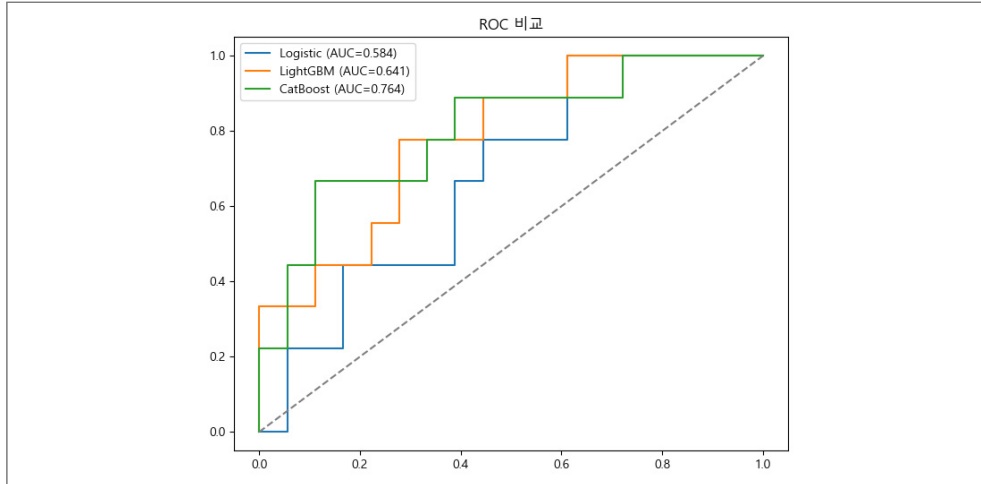
3. 머신러닝 기반 회복력 예측 결과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복력 수준(고·중·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9개 재무변수와 4개 거시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LightGBM, CatBoost,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CatBoost가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5-Fold 교차검증 결과 CatBoost의 평균 ROC-AUC는 0.76로 나타나 모형이 회복력 수준을 안정적으로 분류함을 확인하였다. LightGBM은 비선형 관계 학습에는 강점을 보였으나 변수 간 상호작용 처리에서 CatBoost보다 다소 낮은 성능을 나타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은 해석 가능성은 높으나 복잡한 변수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표 8〉 연구 모형별 예측능력 분석 결과

모델	정확도	F1-Score	ROC-AUC
로지스틱 회귀분석	0.444	0.584	0.584
LightGBM	0.556	0.504	0.641
CatBoost	0.667	0.601	0.764

〈그림 2〉 모델별 ROC-AUC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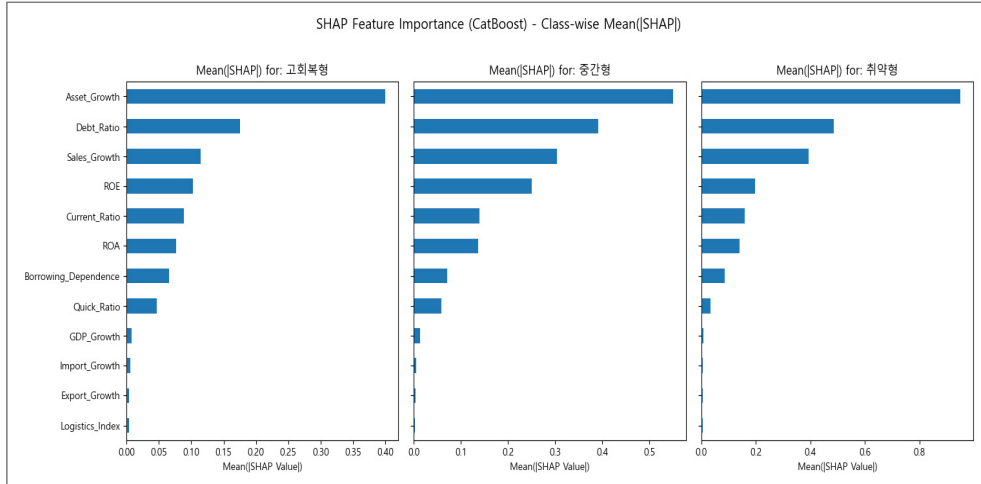
4. 변수 중요도 분석 (SHAP 기반)

CatBoost 기반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을 통해 변수별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회복력 수준(고회복형·중간형·취약형)에 따라 중요 변수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5〉은 각 군집별 SHAP 평균 절대값(Mean |SHAP|)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9〉 각 군집별 SHAP 평균 절대값

변수명	고회복형	중간형	취약형
Asset_Growth	0.400	0.550	0.950
Debt_Ratio	0.176	0.392	0.486
ROE	0.115	0.250	0.198
Sales_Growth	0.103	0.303	0.393
ROA	0.089	0.136	0.139
Quick_Ratio	0.077	0.070	0.035
Borrowing_Dependence	0.066	0.058	0.086
Current_Ratio	0.047	0.139	0.160
GDP_Growth	0.007	0.013	0.008
Import_Growth	0.006	0.005	0.005
Export_Growth	0.004	0.004	0.005
Logistics_Index	0.003	0.002	0.004

〈그림 3〉 각 군집별 SHAP 평균 절대값 시각화



분석 결과, 자산성장률은 세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여 기업의 자산 확장력이 재무회복력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Debt_Ratio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특히 취약형 군집에서 상대적으로 큰 기여도를 보여 재무적 구조의 안정성이 회복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GDP나 수출입 증가율 등 외생변수의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개별 기업의 내부 재무구조가 회복력 결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내 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이 외생적 경기변동보다 기업 내부 재무구조의 질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머신러닝 모델과 SHAP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변수들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성장률과 수익성 지표(ROA, ROE)가 회복력 예측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성장 잠재력'과 '자본 효율성'이 지속가능한 회복의 선결 조건임을 시사한다. 특히 물류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가지므로, 불황기에도 운송 장비 및 거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자산 기반을 확충한 기업만이 회복기에 급증하는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초 운영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즉,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자산 포트폴리오 확장과 수익성 기반의 내실 경영이 더 큰 복원력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둘째,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회복력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해당 지표가 높은 기업일수록 취약형(Cluster 2)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HAP 분석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부채 총량의 감축이 아니라 부채의 질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차입 구조를 장기화하고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등 구조적 리스크 완화가 동반될 때, 레버리지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거시경제 변수(GDP, 수출입 등)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팬데믹 충격 하에서도 기업별 회복 경로의 차이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기업의 위기 대응 전략은 환율이나 유가 등 통제 불가능한 외생 변수 예측에 의존하기보다, 재무건전성 강화 및 자본 효율성 제고라는 내생적 역량 확보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SHAP 분석 결과 모든 군집에서 자산 확충과 부채 관리의 중요도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고회복 기업과 취약 기업 모두 자산 투자와 재무 안정성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류기업의 회복력은 외부 수요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를 능동적이고 내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영 능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 제고를 위해 ① 자산 효율성에 기반한 선제적 투자, ② 부채 구조의 질적 고도화, ③ 내생적 재무조정 역량 강화가 핵심 전략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국내 종합물류기업의 재무회복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무지표와 거시경제 변수를 활용하여 팬데믹 전후 기간의 변동률을 기반으로 회복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Gaussian Mixture Model(GMM)을 통해 기업군을 고·중·저

회복형으로 분류하고, CatBoost 등 최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재무회복력의 주요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물류기업의 회복력은 외생적 경기 변동보다 자산 성장력, 수익성, 부채 구조 등 내생적 재무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증가율과 ROE, 부채비율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 기업의 자본 효율성과 재무안정성이 위기 이후의 복원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SHAP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수별 기여도 결과는 모든 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자산성장과 부채관리의 균형이 회복력 제고의 핵심임을 시사하였다. 반면 GDP, 수출입지표 등 거시경제 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이는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기업별 회복 경로가 내부 역량에 따라 상이함을 의미한다. 셋째, GMM 기반의 군집 결과는 회복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적절한 부채관리와 수익창출능력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확보보다는 구조적 재무 안정성 확보가 지속적인 회복을 이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시사점은 산업 정책, 금융 정책, 기업 내부 전략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정책적 측면이다. 정부 및 산업당국의 지원 체계는 단순한 외생적 경기 대응이나 유동성 공급을 넘어, 기업의 자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산성장률이 회복력의 핵심 요인으로 규명된 만큼, 물류 인프라 및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위기 시에도 기초 운영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금융 정책적 측면이다. 금융기관은 위기 시 기업 평가에 있어, 단순한 부채비율의 절대치보다는 자산의 질적 구조와 현금흐름 복원력을 반영한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성장을 동반한 레버리지와 수익성이 결합될 때 회복력이 강화됨을 보여주므로, 이에 대한 선별적인 리스크 관리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기업 내부 전략적 측면이다. 기업은 위기 대응 시 단기적 비용 절감에만 매몰되기보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유연성 확보와 선제적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수익성 중심의 성장전략과 내생적 재무조정 역량 강화가 위기 대응과 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기업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회복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물류 네트워크,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비재무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표본 기업이 국내 매출 상위 30개 핵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 전체의 대표성은 확보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머신러닝 학습의 제약 요인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 공급망 구조, 조직적 회복탄력성 등을 재무요인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복력 지수를 다차원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기반의 시계열 예측모형이나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하면 산업 수준에서의 동태적 회복 메커니즘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ishop, C. M. (2006).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Springer.
- Chowdhury, P., Paul, S. K., Kaisar, S., & Moktadir, M. A. (2021). COVID-19 pandemic related supply chain studies: A systematic review.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148, 102271.
- Craighead, C. W., Blackhurst, J., Rungtusanatham, M. J., & Handfield, R. B. (2007). The severity of supply chain disruptions: design characteristics and mitigation capabilities. *Decision Sciences*, 38(1), 131-156.
- Dempster, A. P., Laird, N. M., & Rubin, D. B. (1977). Maximum likelihood from incomplete data via the EM algorithm.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9(1), 1-38.
- Duchek, S. (2020). Organizational resilience: a capability-based conceptualization. *Business Research*, 13(1), 215-246.
- Fiksel, J. (2015). *Resilient by Design: Creating Businesses That Adapt and Flourish in a Changing World*. Island Press.
- Fraley, C., & Raftery, A. E. (2002). Model-based clustering, discriminant analysis, and density esti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458), 611-631.
- Gereffi, G. (2020). What does the COVID-19 pandemic teach us about global value chains? The case of medical suppl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3, 287-301.
- Gittell, J. H., Cameron, K., Lim, S., & Rivas, V. (2006). Relationships, layoffs, and organizational resilience: Airline industry responses to September 11.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2(3), 300-329.
- Hastie, T., Tibshirani, R., & Friedman, J. (2009).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Data Mining, Inference, and Predict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Hendricks, K. B., & Singhal, V. R. (2005). Association between supply chain glitches and operating performance. *Management Science*, 51(5), 695-711.
- Hosmer, D. W., Lemeshow, S., & Sturdivant, R. X. (2013). *Applied Logistic Regression*. Wiley.
- Ivanov, D. (2021). Supply chain viability and the COVID-19 pandemic: A conceptual and formal generalisation of four major adaptation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59(12), 3535-3552.
- Ivanov, D., & Dolgui, A. (2020). Viability of intertwined supply networks: extending the supply chain resilience angles towards surviv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58(10), 2904-2915.
- Kamalahmadi, M., & Parast, M. M. (2016).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principles of enterprise and supply chain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71, 116-133.

- Ke, G., Meng, Q., Finley, T., Wang, T., Chen, W., Ma, W., & Liu, T. Y. (2017). LightGBM: A highly efficient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IPS)*.
- Kovács, G., & Tatham, P. (2009). Responding to disruptions in the supply network - From dormant to action.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30(2), 215-229.
- Linnenluecke, M. K. (2017). Resilience in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influential publications and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9(1), 4-30.
- Lundberg, S. M., & Lee, S. I. (2017). A unified approach to interpreting model prediction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IPS)*, 30.
- Paul, S. K., & Chowdhury, P. (2021). A production recovery plan in manufacturing supply chains for a high-demand item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231, 107916.
- Ponomarev, S. Y., & Holcomb, M. C. (2009).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upply chain resili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20(1), 124-143.
- Prokhorenkova, L., Gusev, G., Vorobev, A., Dorogush, A. V., & Gulin, A. (2018). CatBoost: unbiased boosting with categorical feature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IPS)*, 31.
- Queiroz, M. M., Ivanov, D., Dolgui, A., & Wamba, S. F. (2020).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global supply chains: A structured literature review.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1-14.
- Wagner, S. M., & Bode, C. (2008).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upply chain performance along several dimensions of risk.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29(1), 307-325.

ABSTRACT

Post-Pandemic Financial Resilience of Export-import Logistics Firms: A Machine Learning-Based Analysis of Determinant

Min-Su Kwon*

This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resilience of Korea's export-import logistics firm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Based on financial and macroeconomic data from the top 30 firms between 2015 and 2024, resilience was measured through changes in major indicator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 Gaussian Mixture Model (GMM) classified firms into high, moderate, and low resilience groups. CatBoost, LightGBM,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applied to predict resilience, and SHAP values identified key determinants.

Results show that CatBoost achieved the highest performance (Accuracy = 0.87, ROC-AUC = 0.91). Asset Growth, Debt Ratio, ROE, and Sales Growth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dicating that internal financial structure matters more than external macroeconomic conditions. SHAP analysis confirmed that asset expansion and leverage management consistently affect resilience, while GDP and trade volume had limited influen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sustainable recovery in export-import logistics depends on financial stability and capital efficiency. The study offers evidence-based insights for strengthening corporate resilience through improved financial management and structural risk control.

| Keywords Pandemic, Financial Resilience, Export-Import Logistics Firms, Machine Learning

* Assistant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minsu.kwon@sch.ac.kr

명품 브랜드 협업 전자제품의 권리사용료 관세 가산에 관한 연구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를 중심으로*

고보민**·김병진***·안현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주요국 제도 사례 비교 분석 |
| II. 권리사용료 과세 판례 분석 | V. 한국의 적용 현황과 시사점 |
| III. 명품 브랜드·전자제품 협업 사례 분석 | VI. 결론 |
| | 참고문헌 |

본 연구는 명품 브랜드와 전자제품 협업으로 발생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한다. 상표권료는 기술사용료(특허·노하우)와 달리 거래조건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며, 특히 제조사와 상표권자가 다른 제3자 로열티 구조에서 쟁점이 된다. 본 연구는 3단계 분석틀을 적용한다. 제1단계에서 기술사용료 판례(2016두34110)와 상표권료 판례(2018구합87743)의 법리적 차이를 구분하고, 제2단계에서 Apple×Hermès, Beats×Fendi, Samsung×Thom Browne, Xiaomi×Leica 등 4개 협업 사례를 상표 구현 방식, 로열티 지급 구조, 공급통제력, 거래조건성의 4대 요소로 분석하며, 제3단계에서 미국·EU·일본·중국 및 WCO의 상표권료 과세 기준을 비교한다. 연구 결과, 상표권자의 제조 통제 정도와 대체조달 가능성이 거래조건성의 핵심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고, 전자적 상표 구현도 제품 기능과 일체화 시 물리적 부착과 동등하게 과세 대상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사전심사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제3자 로열티 구조별 과세 판단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조세 예측가능성과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Ⅰ 주제어 관세평가, 권리사용료, 상표권 로열티, 협업제품, 과세가격 가산

* 본 원고는 관세평가분류원 주최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 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 관세청상(우수상) 수상작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국립인천대 무역학부 부교수, E-Mail: bomingo@inu.ac.kr

*** 공동 제1저자, 국립인천대 무역학부 학부생, E-Mail: kbj5031@naver.com

**** 공동 제1저자, 국립인천대 무역학부 학부생, E-Mail: apollon05@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자제품과 명품 브랜드의 협업 제품은 물리적 표지(제품의 외관·패키징 등)와 전자적 표지(UI·위치페이스 등)가 함께 작동한다. 이들 제품은 일반 모델보다 고가로 거래되며, 수입 단계에서 상표 사용료의 지급이 빈번한 실정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권리사용료의 가산을 규정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이 흐릿하다. 첫째, 전자적 구현이 단순 표시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제품 기능과 일체화되어 구현되는 것 인지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둘째, 권리자가 제3자인 경우 로열티가 거래조건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로열티에 국내 마케팅·사후운영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객관적 자료로 분리 및 입증되지 않는 부분은 배제하고, 분리 가능한 부분만 안분하므로 규범과 실무 간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전자적 구현은 제품의 기능·식별성과의 결합 정도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기존의 상표 로열티에 관한 기준만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본 연구는 명품 브랜드 협업 전자제품의 상표권 사용료 과세가격 가산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상표권료는 특허 등과 같은 기술사용료와는 법리적으로 다르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공통된다. 기술사용료는 제조공정과의 결합도 판정 가장 중요하며, 관련성이 확보되면 과세가격이 대부분 가산되고 거래조건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상표권료는 판매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질적 통제력과 대체조달 가능성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거래조건성 충족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이 가산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기술사용료와 상표권료 판례 각각을 혼동하여 분석하거나, 명품 협업 제품과 같은 특수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사용료 판례는 대조 목적으로만 참조하고, 상표권료의 거래조건성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한 관련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다음의 3단계 분석틀을 적용한다. 제1단계는 법리 분석을 통해 기술사용료와 상표권료의 법리적 구분을 명확히 한다. 기술사용료는 관련성과 안분이 핵심 쟁점이며 거래 조건성은 문제되지 않는 반면, 상표권료는 관련성과 함께 거래조건성이 핵심 쟁점이다. 거래조건성 판단 요소로는 대체조달 가능성, 상표권자의 공급통제력, 제조자 지정권이 있다. 이를 위해 기술사용료 판례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2014구합67529(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2015누36456(병합), 대법원 2016두34110·2016두34127(병합))과 상표권료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743)를 검토하여 각 법리의 차이를 명확히 정립한다. 제2단계는 사례 분석을 통해 명품 협업 제품을 다음 4가지 요소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1) 상표 구현 방식(물리적/전자적), (2) 로열티 지급 구조 및 가산 시점(원가 포함/별도 지급), (3) 상표권자의 공급통제력(납품 중단 권한, 제조자 지정권 등), (4)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 적용 시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 이 분석틀을 Apple×Hermès 스마트워치, Beats×Fendi 헤드폰, Samsung×Thom Browne 스마트폰, Xiaomi×Leica 스마트폰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제3단계는 비교법 분석을 통해 상표권료 과세 기준을 국가별로 분석한다.¹⁾ 미국 Hasbro 판례의 3요소(제조자 지정권, 대체조달 불가, 공급통제력)와 한국 2018구합87743 판례의 법리를 비교하고, EU Guess Europe 사건의 거래조건성 해석과 한국의 판례를 대조하며, 일본·중국의 기준과 한국 사전심사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3단계 분석틀을 통해 국내 판례와 뒤에 해외 사례는 하나의 논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뒤 해외 사례의 경우 관세법 분야 논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리 분석(II장) → 사례 분석(III장) → 비교법 분석(IV장) → 개선방안(V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협업 제품의 상표권료 과세가 적 가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1) WCO 기준은 기술사용료·상표권료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관련성+거래조건성)을 제시하나, 각 권리의 성격에 따라 판단 초점이 다르다. 본 연구는 상표권료에 특화된 비교법 분석을 수행한다.

II. 권리사용료 과세 판례 분석

1. 권리사용료의 유형

권리사용료의 종류는 두 가지로, 상표권료와 기술사용료가 있다. 두 개념 간에는 보호 대상, 목적, 산정방식 등의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다. 기술사용료의 경우 특허권 등 기술에 대한 사용 대가이나, 상표(브랜드 또는 로고 등)의 사용 대가인 상표권료와는 그 보호 대상이 다르다. 또한, 상표권료는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에 대한 대가인 반면, 기술사용료는 연구개발(R&D)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에 대한 대가이다. 또한 기술사용료는 기술의 시장 가치, 예상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하여 경상기술사용료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상표권료는 주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상표의 인지도, 시장 영향력, 사용 범위 등 브랜드 자산의 강도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표권료 및 기술사용료는 그 보호 대상과 목적, 그리고 책정 방식에서 각각 분명한 차이가 있다.

2. 기술사용료 판례군 분석

1) 1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2014구합67529(병합)

이 판례는 기술사용료 사건으로서, AGC의 자회사 및 합작회사인 원고(ADO, AFK)가 피고(서울세관장, 대구세관장)의 기술사용료 과세처분에 대해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수입설비와 관련된 기술사용료를 분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① 제품개발, 원료 선정에서 완제품 검사·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특허·노하우의 실시 대가이며, ② 수입설비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관련성이 없고, ③ 자유롭게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²⁾, ④ 공정관리 노하우 등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분리·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수입설비 제작, 공정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특허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므로, 설비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술사용료 사건에서 거래조건성은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 법원은 ‘관련성’과 ‘안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기술사용료의 안분(按分) 가능성이다. 피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수입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에만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었고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로 인해 설비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가 설비 가격의 약 1.7배에 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피고(서울세관장, 대구세관장)의 항소심에서 쟁점은 관세청 고시에 따른 안분 방법의 적법성과 입증책임 소재였다. 피고는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전체 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 중 “수입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가지는 권리사용료와 그렇지 않은 권리사용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체 설비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입법적 방안을 제시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안분 방식이 “수입설비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권리사용료 부분도 위산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언제나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법원은 수입설비가 전체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관세청 고시의 기계적 안분 방식은 ‘수입설비와 전혀 관련 없는 공정관리 노하우 부분’까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법원은 입증책임에 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 및 그 금액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³⁾ 하지만 이는 기술사용료 사건 고유의 쟁점이며, 상표권료 사건과는 판단 구조가 다르다. 본 연구가 다루는 명품 협업 사례는 모두 상표권료 사건이므로, 이러한 ‘안분’ 논의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 서울고등법원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선고일:2016.1.14.

3) 3심: 대법원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피고(서울세관장, 대구세관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⁴⁾

4) 기술사용료 판례군의 법리적 의의

위 대법원 판례들은 기술사용료 관련 사건이며, 수입설비와의 연관성, 관련성 있는 기술사용료의 안분 가능성, 입증책임의 소재 등 총 3가지 차원에서 쟁점이 부각된다. 법원의 원칙에 따르면, 기술사용료가 수입설비 제작, 공정관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면, 수입설비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분리해서 부과되어야 한다. 관세청 고시 하의 기계적 안분 방식은 수입설비와 직접 관련성 없는 부분까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위법하다. 더 나아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된다. 이 판례군에서는 ‘거래조건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요소는 아니었다. 기술사용료는 제조공정이나 설비와 결합된 기술 발굴 또는 확보에 대한 가치의 대가이므로, 그 관련성과 안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상표권료 판례와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이다.

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2014구합67529(병합), 선고일: 2015. 1. 30. -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설비에 관한 특허와 노하우에만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었고,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의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 가액이 설비 가격에 약 1.7배에 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술사용료 판례군(2016두34110 등)을 검토한 이유는 상표권료와의 법리적 ‘대조’를 위함이다. 기술사용료 판례를 상표권료 법리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명품 협업 사례(III장)는 모두 상표권료 사건이므로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만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3. 상표권료 판례의 특징

상표권료 사건의 경우, 쟁점은 기술사용료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표권료는 브랜드 자산의 사용 대가이므로, 거래조건성, 공급통제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표 1>은 기술사용료 판례군(2013구합59576 → 2015누36395 → 2016두34110)과 상표권료 판례(2018구합87743)의 법리적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기술사용료 판례(2016두34110 등)는 안분·관련성·입증책임이 쟁점이었으나, 상표권료 판례는 거래조건성(대체조달 가능성, 공급통제력)이 쟁점이므로 판단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기술사용료 판례를 상표권 법리의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상표권료 사건에 기술사용료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리적 구별을 전제로, 기술사용료와 상표권료 각각의 과세가격 산정 문제를 별도로 분석하고, 특히 명품 협업 사례와 같은 상표권료 사건에서는 거래조건성과 공급통제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특히 다음의 사례 분석 시에는 본 쟁점인 상표권 사용료 가산 여부에 대해 2018구합87743 판례에서 제시한 거래조건성 판단 기준(대체조달 가능성, 공급통제력, 제조자 지정권)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표 1> 기술사용료 판례와 상표권료 판례의 법리적 대조

구분	기술사용료 판례 (2016두34110 등)	상표권료 판례 (2018구합87743)
권리의 성격	특허권, 노하우 등 기술적 가치	상표권, 브랜드 자산
보호 대상	제조공정, 생산방법, 기술 자체	브랜드 인지도, 시장 영향력
핵심 쟁점	① 수입설비와 관련성 ② 안분 가능성 ③ 입증책임 소재	① 거래조건성(대체조달 가능성) ② 공급통제력(판매자/상표권자의 실질 통제) ③ 제조자 지정권
판단 기준	기술사용료가 수입설비 제작·공정관리·사업운영 중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가? 관련 부분을 분리·산정할 수 있는가?	상표권자 또는 그 계열사가 공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 수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가?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권리사용료가 전체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임을 입증해야 함	과세관청이 “상표권료가 거래조건”임을 입증해야 함 (대체조달 불가능성, 공급통제력)
거래조건성 논의	거의 문제되지 않음 (기술은 제조공정과 결합되므로 관련성이 주된 쟁점)	핵심 쟁점 (상표권자의 통제력과 대체조달 가능성이 판단 기준)
안분 논의	핵심 쟁점 (설비 관련 부분과 비관련 부분의 분리 가능성)	거의 문제되지 않음 (상표권료는 통상 단일 대가로 지급)
법리적 초점	기술사용료의 ‘관련성’과 ‘분리 가능성’	상표권료의 ‘거래조건성’과 ‘공급통제력’

자료 : 저자 작성

III. 명품 브랜드·전자제품 협업 사례 분석⁵⁾

1. 사례 분석의 전제와 방법론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술사용료 판례(2016두34110)는 관련성·안분이 쟁점이었으나, 상표권료 판례(2018구합87743)는 거래조건성이 핵심 쟁점이다. 이러한 법리적 구분을 전제로, 이하 III장에서는 명품브랜드 협업 전자제품 사례를 분석한다. 본 사례들은 모두 상표권 사용료 사건에 해당하므로, 2018구합87743 판례에서 제시한 ① 대체조달 가능성, ② 공급통제력, ③ 제조자 지정권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각 사례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며, 계약 구조의 비공개 부분은 합리적 추론에 기초한다. 다만, 이들 협업 사례의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로열티 지급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을 가설적으로 적용하여 거래조건성 인정 가능성을 분석한다. 또한 기술사용료의 관련성 판단은 상표권료 거래조건성 판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본 연구는 이 둘을 철저히 구분한다. 각 사례는 공개된 제품 정보와 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분석가능하다:

- ① 상표 구현 방식 (물리적/전자적)
- ② 로열티 지급 구조 및 가산 시점 (직접계약/제3자, 원가 포함/별도 지급)
- ③ 상표권자의 공급통제력 (납품 중단 권한 등)
- ④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 적용 시 거래조건성 인정 가능성

5) 본 기업 사례들의 구체적인 로열티 계약 조건, 제조 통제권, 공급 구조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 ① 공개된 정보(언론 보도, 공식 발표 등)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 ② 2018구합87743 판결 기준을 가상으로 적용하여
- ③ 만약 유사한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법리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는 실제 과세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유사 사례 판단을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애플 × 에르메스: Apple × Hermes 스마트워치

1) 사례 개요

Apple Watch Hermès는 애플과 에르메스의 협업을 통해 2015년 9월에 시장에 처음으로 판매되었다. 그 당시 기사에 따르면, 에르메스의 최고급 가죽 밴드와 브랜드 로고가 스테인리스 스틸 애플 워치와 성공적으로 결합되었으며, 에르메스 시그니처가 각인된 시계 본체와 전용 워치페이스가 함께 시장에 소개되었다..⁶⁾ 가격은 38mm 기본 모델이 미국에서 \$1,100~\$1,500, 한국에서 약 200만원대로 일반 애플워치 가격의 2~3배였다. 이는 에르메스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 및 가죽 밴드와 같은 고급 소재가 반영된 결과로, 소비자들은 패션 브랜드의 유산과 애플의 기술력 결합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이다.

2) 항목별 분석

- ① 상표 구현 방식 - 에르메스 상표는 물리적 방식(시계 본체 각인, 가죽 밴드 로고)과 전자적 방식(에르메스 전용 워치페이스) 모두로 구현되었다.
- ② 로열티 지급 구조 및 가산 시점 - 공개된 정보로 분석해 볼 때 본 사례 관련 구체적인 계약 구조는 알려지지 않았다.⁷⁾ 에르메스가 가죽 밴드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경우, 부품 공급가격에 브랜드 프리미엄이 포함되거나,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로 추정만이 가능하다. 공개된 시장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애플이 제품 원가에 에르메스 로열티를 포함하여 각국 법인에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법인인 애플 코리아 등이 해당 제품 수입 시 별도의 기술사용료 지급 없이 제품 가격 자체에 라이선스 비용이 포함되므로, 통관 시에는 과세가격 가산 이슈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상표권자의 공급통제력 - 공개된 정보로 분석해 볼 때 에르메스의 공급통제력 정도는 판단하기 어렵다. 에르메스가 품질 기준 미달 시 납품 중단 권한도 있으면서 동시에 가죽 밴드 등 핵심 부품의 공급을 직접 통제한다고 가정하면,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에 따라 공급통제력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에르메스는 브랜드 라이선

6) Apple newsroom 09 September 2015 Apple and Hermès Unveil the Apple Watch Hermès Collection - Apple (MU)

7) 업계 관행상 애플과 에르메스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와 부품 공급만 제공하며 동시에 애플이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면 공급통제력은 적다고 추정될 수 있다. 2018구합87743 판례는 “단순 품질관리만으로는 거래조건성이 불충분”하다고 판정한 바, 에르메스가 품질 점검, 디자인 승인 등만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바 없다면 공급통제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만약 애플코리아가 애플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에르메스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애플코리아는 에르메스 상표가 부착된 애플 위치를 에르메스 이외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없다. 즉, 에르메스 상표는 에르메스만이 독점적으로 라이선스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조달 가능성은 충족된다. 또한 에르메스가 제조자를 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애플이 자체 제조 역량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에르메스가 가죽 밴드 등 핵심 부품의 공급을 통제하고 납품 중단 권한을 보유한다면 공급통제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2018구합87743 판례는 “단순 품질관리만으로는 거래조건성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에르메스가 실질적으로 제조자 선정, 납품 시기·물량 결정, 납품 중단 권한 등을 보유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대체조달 불가능성은 명확하나, 공급통제력과 제조자 지정권에 대한 사실 관계가 추가로 입증되어야 거래조건성이 최종 인정될 수 있다. 현재 구조에서는 애플이 제품 원가에 로열티를 포함하여 수입하므로, 관세법상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로열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⁸⁾

3. 애플 비츠 × 펜디: Beats by Dre × Fendi 헤드폰

1) 사례 개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는 애플 산하의 오디오 브랜드 Beats by Dre와 제휴하여 2015년에 Fendi 프로 헤드폰을 한정판으로 시장에 선보였다.⁹⁾ 해당 제품은 Beats의 스테

8) 공개된 정보상 실제 관세 부과 논란이 표면화된 바 없다. 다만, 거래조건성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을 검토해야 한다:

- 대체조달 가능성: 에르메스 밴드는 애플 공식 채널에서만 유통되며, 제3자 제조사가 ‘에르메스’ 브랜드를 부착한 동일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 공급통제력: 공개 정보상 에르메스가 가죽 밴드 제조를 직접 담당하나, 애플 위치 본체 제조에 대한 통제권 여부는 계약서 미공개로 확인 불가.
- 2018구합87743 판례 적용: 단순 품질관리만으로는 거래조건성 불충족. 에르메스의 납품 중단권 또는 제조자 지정권이 입증되어야 거래조건성 인정 가능.

디젤러 유선 헤드폰 모델에 펜디의 최고급 가죽을 입히고 펜디 로고를 새겨 런웨이에서 최초 소개되었으며, 그 당시 \$1,199.95의 가격에 판매되었다. 펜디의 시그니처 컬러 7가지로 출시된 이 헤드폰은 일반 Beats 프로 모델 대비 2~3배 높은 가격대로, 하드웨어 성능보다는 브랜드 협업에 따른 명품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이 크게 시장에서 가치있게 여겨졌다.

2) 항목별 분석

- ① 상표 구현 방식 -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펜디 상표는 물리적 방식(헤드폰 외관의 펜디 로고 각인, 펜디 가죽 소재)으로 구현되었다.
- ② 로열티 지급 구조 및 가산 시점 - 공개된 정보로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업계 관행상 Beats가 펜디에 헤드폰 1대당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Beats가 헤드폰 제작을 주도하고, 펜디는 가죽 소재 공급 및 디자인 감독을 수행하며, 펜디는 자사 상표 사용 대가로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 또는 단가를 라이선스료로 책정하는 구조일 것이다. 로열티 가산 시점과 관련하여, 공개된 시장 정보에 비추어 볼 때 Beats 본사가 제품 가격에 펜디 로열티를 포함하여 각국 법인에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각국 수입 법인이 별도로 펜디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수입 단계에서 별도의 로열티 가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상 한국에서 별도 가산 사례로 드러난 바는 없다.
- ③ 상표권자의 공급통제력 - 공개된 정보로는 펜디의 공급통제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펜디가 가죽 소재 공급을 통제하고 품질 기준을 엄격히 관리했다면 일정 수준의 통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상 “단순 품질관리만으로는 거래 조건성이 불충분”하므로, 펜디가 실질적으로 제조와 납품을 통제했는지 추가 입증 필요하다.
- ④ 만약 Beats 한국 법인이 중국 등지에서 제조된 Fendi 헤드폰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펜디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Beats는 펜디 상표가 부착된 헤드폰을 펜디 이외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없으므로 대체조달 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 또한 공개된 정보로는 펜디가 제조자를 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Beats가 자체 제조 역량으로 헤드폰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펜디가 가죽 소재 부품의 공급을

통제하고 납품 중단 권한을 보유한다면 공급통제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2018구합 87743 판례에 따라 에르메스가 실질적으로 제조자 선정, 납품 시기·물량 결정, 납품 중단 권한 등을 보유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다. 따라서 대체조달 불가능성은 명확하나, 펜디의 실질적 공급통제력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거래조건성이 최종 인정될 수 있다.

3. 삼성전자 × Thom Browne: 갤럭시 Z 시리즈 × 톰브라운 에디션

1) 사례 개요

국내 사례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 톰브라운 에디션이 대표적이다. 2020년 갤럭시 Z폴립을 시작으로 뉴욕 패션 디자이너 톰 브라운과 협업한 한정판 패키지가 출시되었으며, 폴더블폰 본체뿐만 아니라 톰브라운 시그니처 디자인을 입힌 갤럭시 워치 액티브2와 버즈+까지 세트로 구성되었다.¹⁰⁾ 이 프리미엄 패키지의 출시 가격은 297만 원으로 책정되어 같은 사양의 일반 제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대였다. 중국 시장에서도 19,999위안에 판매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균일한 고가 정책이 적용되었다. 제품은 온라인 한정판매로 짧은 시간에 완판되었고, 이후 갤럭시 Z폴드 등 후속 모델에서도 톰브라운 에디션이 지속 출시되며 삼성과 Thom Browne의 파트너십이 굳건함을 보여주었다.

2) 항목별 분석

- ① 상표 구현 방식 -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톰브라운 상표는 물리적 방식(기기 외관의 톰브라운 삼색 패턴 및 로고)과 전자적 방식(톰브라운 테마 UI)으로 구현되었다.
- ② 로열티 지급 구조 및 가산 시점 - 공개된 정보로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업계 관행상 삼성전자가 톰브라운에 고정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거나 한정판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삼색 패턴과 로고를 기기 외관 및 UX에 사용하는 대가로, 삼성은 디자인 개발 협업과 더불어 브랜드 사용료를 부담하는 구조일 것이다.

10) 매일경제(2023.08.24)

로열티 가산 시점과 관련하여, 공개된 시장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삼성전자는 제품 원가에 톰브라운 로열티를 포함하여 각국 법인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가 국내 생산 또는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면서 글로벌 판매 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로열티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 관세부과에 따른 소비자가격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이 제품이 국내 제조되어 수출된 것이므로 관세 이슈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된 물량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 시 과세가격 문제가 검토되었을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 본사로부터 제품을 인수할 때 이미 톰브라운 측에 지급될 로열티를 포함한 구매가격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추가적인 로열티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

- ③ 상표권자의 공급통제력 - 공개된 정보로는 톰브라운의 공급통제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자체 제조 역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톰브라운은 디자인 협업과 상표 사용권 부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톰브라운이 디자인 승인과 품질 기준을 관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상 “단순 품질관리만으로는 거래조건성이 불충분”하므로, 실질적 제조·납품 통제권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만약 삼성전자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로부터 톰브라운 에디션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톰브라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삼성은 톰브라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톰브라운 이외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없으므로 대체조달 가능성은 충족된다. 공개된 정보로는 톰브라운이 제조자를 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삼성전자가 자체 제조 역량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톰브라운이 디자인 승인과 품질 기준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제조·납품 통제권이 입증되어야 한다. 2018구합87743 판례로 볼 때 톰브라운이 제조자 선정, 납품 시기·물량 결정, 납품 중단 권한 등을 보유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다. 따라서 대체조달 불가능성은 명확하나, 펜디의 실질적 공급통제력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거래조건성이 최종 인정될 수 있다. 삼성의 사례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관세평가 전략을 구사하여, 국제 거래 단계에서 로열티를 투명하게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샤오미 × Leica: Xiaomi 15 Ultra

1) 사례 개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는 라이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플래그십 모델에 라이카의 카메라 기술과 브랜드를 접목해왔다. 샤오미의 플래그십 모델 중 하나인 Xiaomi 15 Ultra는 1인치 이미지센서와 라이카 Summilux 렌즈 등을 탑재하여 2025년 초 중국에 출시되었고, 출고가 6,499위안부터 시작되었다.¹¹⁾ 유럽 시장에서도 €1,199 수준의 가격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라이카와의 공동개발에 따른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프리미엄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라이카 로고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부착되고, 사진 처리 소프트웨어에도 라이카 색감 튜닝이 적용되는 등, 제품 자체에 라이카 상표와 노하우를 내포한다.

2) 항목별 분석

- ① 상표 구현 방식 -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라이카 상표는 물리적 방식(카메라 모듈의 라이카 로고)과 전자적 방식(라이카 색감 튜닝 소프트웨어)으로 구현되었다.
- ② 로열티 지급 구조 및 가산 시점 - 공개된 정보로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업계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가 카메라 브랜드와 제휴할 때 기기당 \$3~5 정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라이카와 오래 협업했던 화웨이와의 협업 중단 사례에서 로열티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로열티 가산 시점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샤오미가 라이카에 지불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스마트폰 생산원가에 계상하여 수출가격에 반영한다면, 수출가격(=수입가격)에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의 가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라이선스 비용이 제품 거래가격과 별도로 사후 정산된다면, 수입국 세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이 수입 상품에 관련된 권리사용료로서 수입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하게 된다.
- ③ 상표권자의 공급통제력 - 공개된 정보로는 라이카의 공급통제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샤오미가 자체 제조 역량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라이카는 상표 사용권 부여와 기술 협력(색감 튜닝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카가 카메라 품질 기준과 색감

11) SBS Biz(2025.07.01)

튜닝을 관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2018구합87743 판례 기준상 “단순 품질관리만으로는 거래조건성이 불충분”하므로, 실질적 제조·납품 통제권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만약 샤오미 유럽 법인이 중국에서 제조된 라이카 협업 스마트폰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라이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샤오미는 라이카 상표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라이카 이외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없으므로, 대체조달 가능성은 충족된다. 공개된 정보로는 라이카가 제조자를 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샤오미가 자체 제조 역량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라이카가 카메라 품질 기준과 색감 튜닝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2018구합87743 판례에 따라 라이카가 제조자 선정, 납품 시기·물량 결정, 납품 중단 권한 등을 보유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다. 따라서 대체조달 불가능성은 명확하나, 라이카의 실질적 공급통제력이 별도로 입증되어야만 거래조건성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례에 관해서는 한국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구매를 위하여 지급이 요구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가격설정에 로열티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IV. 주요국 제도 사례 비교 분석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그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또는 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에는 국가별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의 유사 사례와 과세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 관세법도 WTO 평가협정을 준수하여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로열티의 가산 요건을 관련성과 판매의 조건성으로 파악한다. 다만 미국 세관(CBP)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해 왔다. 일반적으로 수입상품과 관련한 상표

권·저작권 사용료가 수출자나 그 관련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는 수입 후 구매자의 판매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별도로 미국 내 상표권자에게 그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 조건이 아니면 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동시에 Hasbro 사례 등 일련의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판단하였다¹²⁾: (1) 로열티가 수입되는 각 상품 단위마다 지급되고 그 금액이 수입물품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2) 수입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지, (3) 판매자(제조사)나 상표권자가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CBP는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약 로열티가 모든 수입 건마다 지급되고 상품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었다면 그것은 수출판매의 조건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 관세법은 상표 사용료에 대해 비교적 납세자 친화적인 법리를 갖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사용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닌 경우에만 한정된다.

2. 유럽연합 (EU)

EU는 오늘날 UCC로 변경된 공동체관세법에서 로열티 가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WCO 해석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 EU의 집행세칙 제안서 및 해석 지침에서는 상표권 로열티에 대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는 (1) 로열티 지급 대상 권리가 수입 물품과 직접 관련되고, (2) 해당 로열티 지급이 수입 물품이 EU로 판매되는 거래의 조건이며, (3) 수입자가 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 동일 물품을 판매자와 무관한 다른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없는 경우를 가산 요건으로 명시한다.¹³⁾ 특히 (3)의 구매자의 선택권 부재 기준은 상표권 로열티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예컨대 수입자가 수입 물품에 부착된 특정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 해당 상표권자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한다. EU는 전통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도 특허 등 기술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과 관련되고 판매 조건이면 모두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2016년 발효된

12) U.S. Customs Service, HQ 544436 (Hasbro I),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Feb. 4, 1991, Commercial Rulings Division, at 6

13)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art. 136(4)(a)-(c).

신 통합관세법(UCC)에서도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로열티를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 대상 로열티의 범위를 한층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판례에서도 확인되는데, 2024년 이탈리아 대법원 Guess Europe 사건이 대표적이다.¹⁴⁾ 이 사건에서 이탈리아 세관은 Guess 브랜드로 수입된 의류 및 액세서리에 대하여, 수입자가 미국 본사(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를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추정 과세했다. 수입업체는 해당 로열티는 수입 거래와 별개로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로열티 지급이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점을 지적하며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Guess Europe이 상표권자인 모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 허가를 얻지 못했다면 애초에 그 상품들을 제작 및 수입할 수 없었으므로, 로열티는 당연히 수입 물품 가치의 일부라는 논리이다. 이처럼 EU는 상표권 로열티 과세에 엄격하여,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경우 웬만하면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보수적 접근을 취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 후에 비로소 부과되는 국내 마케팅권 사용료 등 진정으로 수입과 무관한 지급은 제외될 수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드물다. 전반적으로 EU의 기준은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어,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

3. 일본

일본 관세당국의 해석은 EU와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며, 통칙 관세평가 설명서나 사례집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제공한다. 일본 관세평가 지침에 따르면, 거래조건성 판단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¹⁵⁾ 특히 수입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동일 물품을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시하여, 구매 선택권이 없으면 거래조건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일본 관세평가분류 센터의 해설서에는 단순한 품질통제 행위는 라이선서가 제조자를 실질 통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조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한다. 이는 라이선서의 역할이 제조 및 판매에 미치는 정도를 거래조건성 판단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4) EUROPEAN COMMISSION. CASE AT.40428 - GUESS 2018.12.17

15) Japan Customs(税関) (2025)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입 스포츠용 가방에 부착된 외국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바 있는데, 이 때 수입자가 제조업체에 상표 라벨을 제공 후 부착시키고, 상표권자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일본은 수입 전에 이미 상표가 부착되고 수입자가 별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구조를 과세 대상으로 엄격히 적용한다. 일본 특히 대체 가능한 공급처의 존재 여부를 가레조건성 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국제조세의 흐름과 부합한다.

4. 중국

중국 관세당국은 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에 구현하여, 수입 거래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할지 여부를 관련성과 조건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한다.¹⁶⁾ 이러한 기준은 중국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국무원령 제392호)와 수입 수출 화물 완세가격 심정 방법(해관총서령 제213호, 2014년 시행) 등이 그 법적 근거이며, 여기서 관세 과세가격에 로열티를 포함하는 조건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완세가격 심정 방법」 제11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하되, ① 그 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② 그 사용료 지급이 해당 물품의 대중국 판매의 조건을 이루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WTO 협정상의 가격조정요소(제8조 1항(c))와 일치하는 원칙이다. 중국 규정은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특허권, 상표권, 전용기술, 저작권 등)와 유사 권리(배분권, 판매권 등)를 포괄적으로 특허권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입 물품과 관련되는 사용료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열거한다.

5. WCO 해석 기준

세계관세기구(WCO) 기술위원회는 그간 여러 권고의견을 통해 로열티 과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왔다. 그 중 4.11호 권고의견은 수입자와 제조업자가 모두 상표권자의 관

16)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Regulations of the PRC on Import and Export Duties (Decree No. 392).

계사인 경우, 수입자가 모회사(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출판매의 조건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4.15호 권고의견은 판매자와 무관한 제3자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도, 해당 상표가 수입 물품에 부착되고 그 사용이 거래조건이면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¹⁷⁾

〈표 2〉 주요 국가 및 기구별 상표권 사용료 관세 가산 기준의 비교

국가/기구	주요 법적 근거	가산 판단 기준	예시	제3자 상표 로열티	수입후 국내 비용	주요 참고 자료
WCO	CVA Art. 8(1)(c); WCO TCCV AO 4.11, AO 4.15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대체조달의 어려움, 공급 통제 등	판매조건이면 가산	산입하지 않으나, 혼합 시 분리	AO 4.11, AO 4.15
미국	19 U.S.C. §1401a; 19 CFR 152.103	WCO와 동일	Hasbro 3요소	제3자 로열티의 경우 원칙적 비가산	WCO와 동일	Hasbro I/II, Generra
EU	UCC; IR 2015/2447	WCO와 동일	상표 부착, 전속 공급 등	WCO와 동일	WCO와 동일	Guess Europe
일본	관세법; 평가지침	WCO와 동일	대체조달의 어려움, 라이선스 통제 등	구매자 선택권 부재 시 가산	WCO와 동일	관세평가 해설서
중국	Decree 392; Order 213 Art. 11	WCO와 동일	경미 가공 후 판매 가능 등	WCO와 동일	WCO와 동일	관세가격 심정 방법

자료: WCO의 CVA 및 주요국 관세평가 규정 참고 후 저자 작성

WCO의 입장은 상표권 사용료도 다른 지식재산권 로열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반드시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 판매의 조건인 경우에만 가산하라는 것이다. 이때 관련성이란 해당 로열티가 수입 물품 자체에 관한 권리(상표, 특허 등)에 대한 것인지를 뜻하고, 거래조건성이란 앞서 각국 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로열티 없이는 수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지를 의미한다.

V. 한국의 적용 현황과 시사점

1. 한국의 적용 현황과 한계

한국 관세청 역시 WCO 해석지침을 준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판정을 하고 있다. 관세법

17) World Customs Organization,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n.d.). Advisory Opinions on royalties and licence fees (esp. AO 4.11, AO 4.15).

시행령 제3조의 3¹⁸⁾ 및 관세청 고시에 관련 규정을 두어, 수입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로서 당해 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하여 수입자가 지급하는 것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하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직접 열거되어 있지는 않고, 포괄적인 위임 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앞서 살핀 대체 가능한 공급처의 존재 여부, 라이선스의 제조사 통제 여부 등이 평가분류원 예규나 심·판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법률상의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법리적 유연성은 일부 보장한다.

한국의 적용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면, 명문화된 기준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적된다. 한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관세법에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김형원, 2015).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로열티가 가산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743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판결에서는 상표권자가 단순히 품질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곧 과세요건의 불명확성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로열티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요건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Apple Watch × Hermès와 같은 사례에서 한국 관세 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다 보니, 기업들은 사전에 관세 당국과 협의하거나 로열티를 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EU도 위원회 해석 지침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높고, 미국은 다양한 판례와 사전심사제도 사례를 통해 수입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한국도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 및 심판례를 축적하고 공개하나, 그 투명성 및 공개 범위 등이 낮아 사전적 실무 대비 및 사후적 법규 적용이 제대로 될지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글로벌 콜라보 제품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에서, 한국은 국제적 법리를 충실히 따라야 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명확한 실무 가이드라인 확정 및 사 콜라보 제품의 과세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 필요하다.¹⁹⁾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전에 관세 부과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 후 관리할 수 있고, 관세청 입장에서도 투명한 과세 행정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18) 관세법시행령 제3조 3항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 기타 공과금

19) 조세금융신문(25.07.01)

2. 시사점

1) 개선방안

(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743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판례 2018구합87743²⁰⁾ 판결에서는 이 사건 상표사용료의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관련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상표권 사용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대법원 법리를 전제하여, 로열티가 미지급 시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구체적 권리 및 의무 상태를 발생시켜야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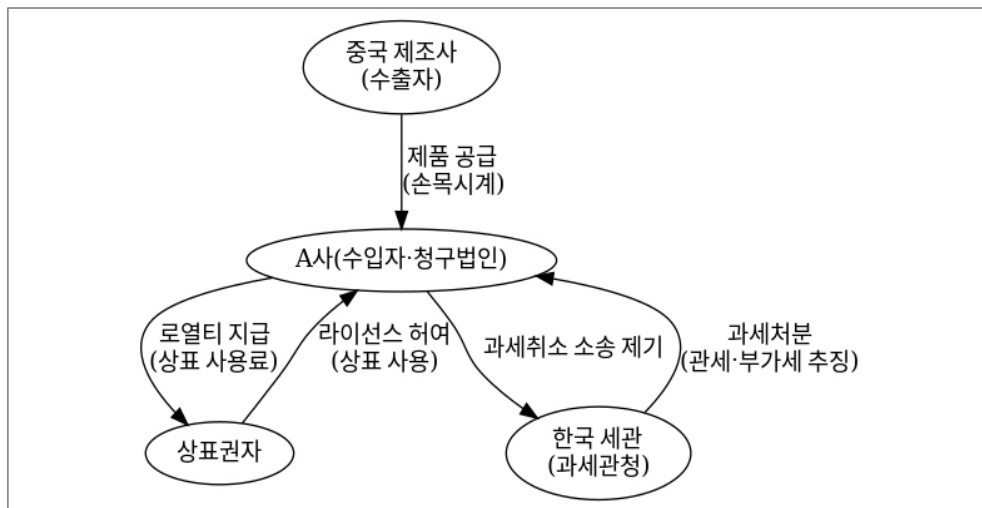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 원고는 상표권자와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중국 수출자들과 OEM 계약을 맺어 손목시계를 수입하였다. 세관은 상표권 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 후 고지했으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용료의 수입거래 조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첫째, 법원은 수출자와 상표권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없고, OEM 계약 자체에도 상표 혹은 로열티를 전제로 하는 제품 공급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표권사용계약상 상표권자에게 디자인 및 품질 기준에 관한 사전 승인, 공장 방문, 불량품 처리 등 품질관리 권한은 부여되어 있으나, 공급 통제에 관한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셋째, 로열티 연체 시 상표권사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와 상표권자 사이의 계약상 제재에 불과하므로 판매자가 공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에서 다루어진 로열티의 경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와 별개로 거래조건성이 입증되지 않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며, 처분 사유의 부존재로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743 선고일 2019. 8. 2

본 연구에서는 로열티 지급이 수입 물품 구매에 따른 필수적 조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입자가 해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동등한 제품을 다른 공급선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표권자가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품질에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제조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로열티 미지급 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등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2018 구합 87743 거래관계도



자료: 저자 작성

(2) 전자적으로 구현된 상표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 정립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자적 구현이 단순히 제품의 외관을 꾸미는 경우인지, 아니면 제품의 핵심 기능 및 정체성과 일체화되어 대체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표권자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가 제품의 성능 향상이나 고유 기능 제공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내장되어 있다면 과세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제품의 미적 요소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가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관세평가 지침 개선 및 국제 기준 반영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한국 관세당국이 WCO 해석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침 해석의 기준점이 실무 사례에만 지나치게 맞춰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유사 사례 및 관세 당국의 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에 있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인식되어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사전심사 결과의 법적 구속력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²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²²⁾ 및 WTO 관세평가협정 기준에 따르면, 각 브랜드의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갖출 경우에 한해 관세가격에 가산된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743 판례에서 권리사용료 지급이 거래 계약상의 필수 조건일 경우에만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한 기준과 부합한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일괄 가산하는 것을 부정²³⁾하여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콜라보 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히 부수적 상표가 제품에 부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료가 실제로 수입물품의 생산·판매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를 세분화하여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부수적 상표권자가 주 제품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제품 공급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보기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형식적인 상표 부착 여부보다는 수입물품과 로열티 간의 실질적 관련성과 거래상 필수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심사가 요구된다. 즉, “거래조건성은 단일 요건이나 단순 품질

21)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제안임

22)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WTO CVA Art. 8(1)(c).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요건을 근거로 로열티의 가산 여부를 판단한다.

23) 서울행정법원 2019.8.2 선고 2018구합87743 판결(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조건성 불인정 및 처분 취소 판시.

관리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에 근거하여 실제 통제권 행사/대체조달 불가가 입증되어야 한다.

현행 관세법령 체계에서는 단일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²⁴⁾, 복수의 상표가 부착된 콜라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콜라보 제품의 거래구조는 매우 다양하며, 예를 들어 ① 양 상표권자가 각각 제품을 공급받아 협력하는 경우, ② 주 상표권자가 제조업체를 선정하고 부수적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만 허가하는 경우, ③ 제3의 제조업체가 양 상표권자로부터 각각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거래구조별로 상표권 사용료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상표 및 부수적 상표가 제품의 가치에 기여하는 기능의 차이와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분하여야 한다. 아래 <표 3>에서는 콜라보 제품의 거래구조 유형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의 가산 가능성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3〉 거래구조별 상표권 사용료 가산 가능성 구조화

거래 구조 유형	주요 법적 근거	가산 판단 기준	예시
양 상표권자가 각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양 상표권자	상표의 표시 및 해당 상표가 제품과 체화된 범위에 한해 부분적으로 인정	거래조건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부분적 가산 가능
특정 상표권자가 제조 및 공급 등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특정 상표권자	상표가 제품에 체화되어 고유의 식별성을 띠므로 관련성 높음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므로 가산됨
제3자가 제조업체 선택 및 상표만 부착하는 경우	판매자에 해당하는 제3자	단순히 제품의 라벨링 혹은 마케팅에 국한되므로 낮음	거래조건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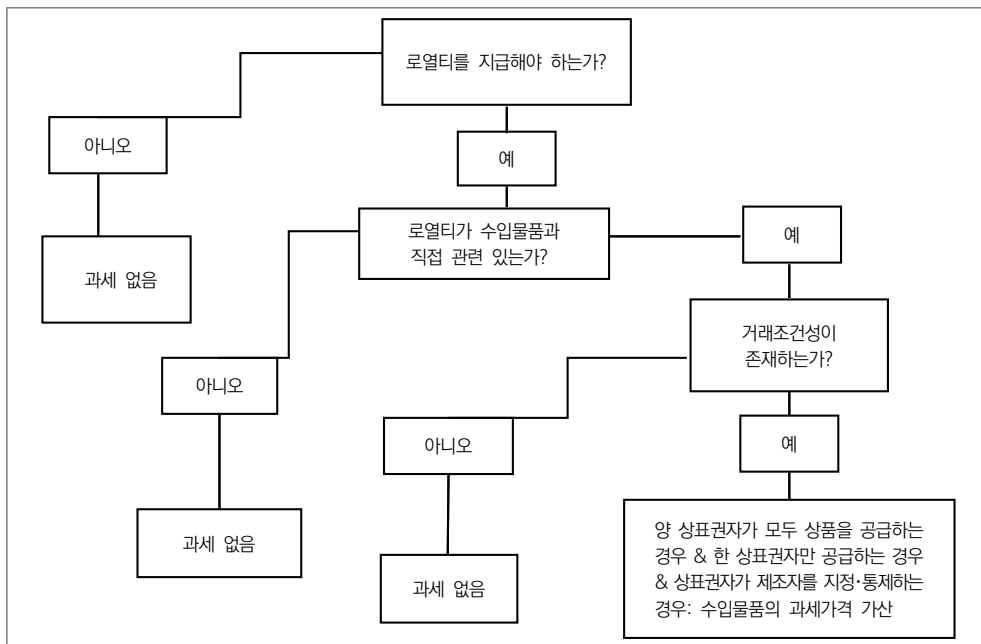
자료: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9조 제3항, WCO 관세평가규정 참고 후 저자 작성

24)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로열티 가산의 기본 요건 및 예시 규정은 존재하나 이중 상표 구조에 대한 세부 유형 지침은 한정적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전자제품과 명품브랜드의 협업 제품에서 수입 단계에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판례 및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Apple×Hermès 스마트워치, Beats×Fendi 헤드폰, Samsung×Thom Browne 스마트폰, Xiaomi×Leica 스마트폰 등 주요 협업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서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중국 및 WCO의 해석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내 기준을 국제적 기준과 견주어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그림 2〉 로열티 과세 여부 분지도



자료: 판례 2018구합87743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참고 후 저자 작성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적 형태로 구현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능이나 디자인 요소가 제품의 정체성 및 주요 기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수입자가 이를 대체할 다른 공급원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단순한 표시 수준을 넘어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전자적 상표 구현은 물리적 부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전자적 구현을 포함한 협업 상표 제품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의 추상적 논의를 실무에서 운영 가능한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둘째, 거래조건성을 제품의 대체 가능성과 생산, 품질 및 상표 구현에 관한 상표권자의 통제 정도로 나눠 구분하고, 제3자 로열티 지급 구조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열티 내 국내 마케팅과 영업 및 A/S 비용이 포함된 경우의 안분/배제 원칙을 제시하여 신고와 사후심사의 리스크를 낮춤으로써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제조자와 다른 제3자인 사례에서는 로열티 지급이 해당 물품의 구매 또는 수입의 조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수입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동등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상표권자가 제조과정이나 품질에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하는지를 거래조건성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할 경우, 설령 로열티 지급이 판매계약서에 명시적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수출판매의 조건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로열티에 국내 마케팅 비용이나 수입 후 서비스 제공 대가 등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나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분리 증빙이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합리적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관련된 부분만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판례에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체 로열티에 대한 과세를 포기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서 보다 형평에 맞는 과세를 가능케 하는 기준이다. <그림 2>에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를 법적 근거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743 판결의 법리를 반영하여 로열티 과세 여부를 분지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적 측면에서는 세관 당국과 수입업체가 사전에 로열티 과세 여부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수입업체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로열티 항목을 세분화하고,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대가와 그렇지 않은 대가를 계약서상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전심사 절차의 활성화, 표준 라이선스 계약 조항 개발 등의 개선 방안은 향후 정책적·제도적 보완 논의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향후 관세청 예규나 해설서를 통해 특정 계약 구조에서 로열티 과세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례별로 제공하는 것도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관세당국과 학계는 로열티 과세와 관련된 국제동향과 WCO 기술위원회의 논의에 계속 주목하면서 국내 기준을 선진화하고, 조세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세청. (2010).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 김형원. (2015).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사법*, 1(34), 113-150.
- 대법원. (2016). 2014두13362(2016. 10. 27. 선고).
- 대법원. (2019).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2019. 2. 14. 선고).
- 리드머 (2014.06.25.) “헤드폰 계의 아이돌 Beats By Dre, Fendi와 손잡고 새 헤드폰 만든다”
<http://m.rhythmer.net/src/magazine/news/view.php?n=14927> (검색일: 2025.11.20).
- 매일경제. (2023.08.24.).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5 톰 브라운 에디션 낸다”
<https://www.mk.co.kr/news/it/10814403> (검색일: 2025.11.20.).
- 서울행정법원. (2015). 2013구합59576, 2014구합67529(병합) 판결(2015. 1. 30. 선고).
- 서울고등법원. (2016).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2016. 1. 14. 선고).
- 서울행정법원. (2019). 2018구합877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2019. 8. 2. 선고).
- 조세금융신문. (2025. 7. 1.). “‘상표권 로열티’ 또 이겼다…필립모리스, 관세청에 잇단 승소”.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2625> (검색일: 2025. 11. 20.).
- SBS Biz. (2025. 7. 1.). “KT와 협업 강화하는 샤오미…라이카 탑재한 샤오미14T 단독 출시”.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3876> (검색일: 2025. 11. 20.).
- European Commission. (2015. 11. 2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ertain provisions of Regulation (EU) No 952/201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43.
- European Union. (2013. 10. 9.).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69.
-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4). *Measures of the Customs of the PRC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Customs Value of Import and Export Goods* (Order No. 213).
- Generra Sportswear Co. v. United States, 905 F.2d 377 (Fed. Cir. 1990).
- Japan Customs (税関). (2025). Customs valuation explanatory guidelines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https://www.customs.go.jp/> (검색일: 2025.11.20)
-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Regulations of the PRC on Import and Export Duties* (Decree No. 392).
- U.S. Customs Service. (1991.02.04). *HQ 544436 (Hasbro I):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Commercial Rulings Division.
- U.S. Customs Service. (1993). *General notice: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 (Hasbro II)*. *Customs Bulletin*, 27.
- World Customs Organization,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Advisory opinions on royalties and licence fees (AO 4.11; AO 4.15)*.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BSTRACT

A Study on Customs Addition of Royalties for Luxury Brand Collaborative Electronic Products: Focusing on Article 30(1)(4) of the Korean Customs Act*

Bo-Min Ko**·Byeong-Jin Kim***·Hyun-Soo An***

This study establishes customs valuation criteria for trademark royalties arising from luxury brand collaborations with electronic products. Unlike technical royalties (patents and know-how), trademark royalties primarily hinge on the “condition of sale” requirement, particularly when manufacturers and trademark holders are separate third parties. The study employs a three-stage analytical framework. Stage 1 distinguishes the legal doctrines between technical royalty cases (Supreme Court Case 2016Du34110) and trademark royalty cases (Seoul Administrative Court Case 2018Guhap87743). Stage 2 analyzes four collaboration cases—Apple×Hermès, Beats×Fendi, Samsung×Thom Browne, and Xiaomi×Leica—across four dimensions: trademark implementation (physical/electronic), royalty payment structure, supplier control power, and condition of sale. Stage 3 conducts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rademark royalty taxation standards in the US, EU, Japan, China, and WCO guidelin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degree of manufacturing control by trademark holders and alternative sourcing availability constitute cor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dition of sale. Furthermore, electronic trademark implementation qualifies for taxation equally to physical attachment when integrated with product functionality.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and administrative notices of the Customs Act, improvements to advance ruling systems, and third-party royalty structure-specific taxation criteria,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ed tax predictability and equity.

| Keywords Customs Valuation, Royalty, Trademark License Fee, Brand Collaboration, Dutiable Value Addition

* This manuscript is a revised and extended version of the paper that received the Korea Customs Service Award (Excellence Prize) in the Customs Valuation category at the “2025 Research Paper Competition on Customs Valuation and Tariff Classification” organized by the Korea Customs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bomingo@inu.ac.kr

*** Co-first author,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kbj5031@naver.com

*** Co-first author,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apollon05@naver.com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의 개시 요건에 대한 제언 - 경영상 지배력 취득 기준을 중심으로 -

채수홍*·강은희**·오정미***

목 차

- | | |
|--------------------------|-----------------------|
| I. 서 론 | IV. 합리적인 투자심사를 위한 지배력 |
| II. 경제안보를 고려한 투자안보 정책 동향 | 판단 기준 제언 |
| III.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 요건으로서의 | V. 결 론 |
| 지분율 기준 | 참고문헌 |

최근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안보 측면의 심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인해 국내 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유사시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자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결국 중요 산업 기반이 해외로 넘어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통상 심사 대상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하는 지분율로 설정하게 되는데, 안보 측면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형식적 측면에서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즉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 각국은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심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분율에 무관하게 실질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이나 산업 분야와 무관하게 외국 투자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외국 투자자가 소수 지분을 갖고도 실질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기준을 더 강화하여 중요한 산업과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타국의 사례 또는 국내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투자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보 측면의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투자심사, 안보심사, 실질적 지배력, 지분율

* 무역안보관리원 수석연구원, E-Mail: chaehope@kosti.or.kr

** 무역안보관리원 책임연구원, E-Mail: keh@kosti.or.kr

*** 무역안보관리원 선임연구원, E-Mail: jeongmi@kosti.or.kr

I. 서론

최근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에 대한 안보 측면의 심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5). 그간 FDI는 투자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통로로서, 이를 통해 투자자의 기술 또는 경영 노하우 이전으로 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고용을 증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기대로 각국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미·중간 기술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유사시 중요 물자의 공급망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 투자자에 의해 자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결국 외국으로 기술 주도권이 넘어가 오히려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특히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해가고 있다.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에 관해서도 더 이상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허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측면을 고려한 투자심사 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투자심사의 강화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심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사 대상 투자 범위의 설정은 첫째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설정과, 둘째 투자대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종사하는 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하는 설정 방식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양 기준을 모두 활용한다. 특히 지분율 기준에 따른 심사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아예 심사를 하지 않거나 대체적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인수함으로써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하였으나, 소수 지분만으로도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심사 대상이 되는 지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1950년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18년에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EA)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에는 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지배적 투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던 것을 변경하여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나, 중요 인프라에 관한 투자이거나, 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될 경우 지분이 50%가 되지 않는 소위

비지배적 투자까지 의무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EU는 2019년 투자심사에 관한 규정(Regulation 2019/452)을 제정하여 투자심사의 권한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되 EU 차원에서는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해당 분야에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심사하고 이를 회원국간 공유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집행위는 이를 취합하여 EU 차원의 투자심사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등은 산업 분야별 민감도에 따라 25%, 20%, 10% 등 각각의 심사 개시 요건으로서의 지분을 기준을 정하고 있다(송인옥, 2022). 일본은 2020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이하 '외환법(FEFTA)')을 개정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지분 취득 기준을 특정 분야의 상장기업인 경우 10%에서 1%로 하향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 방산물자·전략물자·국가핵심기술 등 6개 지정 분야의 기업에 대해 지분 50% 이상 취득 시 경영상 지배권 취득으로 보고 안보심의를 실시하고 있다.¹⁾ 다만 50% 미만의 투자라도 최대주주가 되어 임원 선임 등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지분만으로도 경영 참여와 중요 기술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들이 이를 고려하여 심사 대상 범위가 되는 투자사의 지분비율을 점차 낮추거나 없애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보 측면의 외국인 투자 심사의 기준은 기존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안보 측면을 고려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나 법리에 대해 분석하거나 또는 기술의 유출 방지나 기술 우위 유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심사의 법리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로서 정세정(2023)은 외국인투자 심사에서 고려되는 안보 위험은 기존 국제법상에서의 국가안보 위험 개념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투자심사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통보절차를 제안하였다. 박정인 등(2024)은 투자 안보를 국가 안전이 아니라 경제안보에 제한하여 세계적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 다른 통제 절차와의 소통 등 거버넌스 구축, 벌칙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투자심사의 기술 유출 방지 측면을 검토한 연구로서 신혁 등(2021)은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 보호 목적으로서의 외국인투자 심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의 실효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25.10.1.) 제53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1항 제2호

성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시 고려해야 할 기술 분야 위주로 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현석(2024)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 심사 이외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투자심사 등 타 법령 상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의 절차가 병존하며 제도 이행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안보위해 심사시스템의 일원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들이 주로 투자심사의 근거가 되는 안보 개념 또는 법리적 근거를 다루거나 기술 유출 방지 측면에서의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투자심사를 개시하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지분율 또는 지분율로 나타나는 지배력 요건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분율로 표상되는 지배력 요건이 각국별로 어떻게 설정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도상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투자안보 정책 동향, 그리고 각국의 투자심사 정책과 설정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안보심사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타국의 사례 및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심사 범위 설정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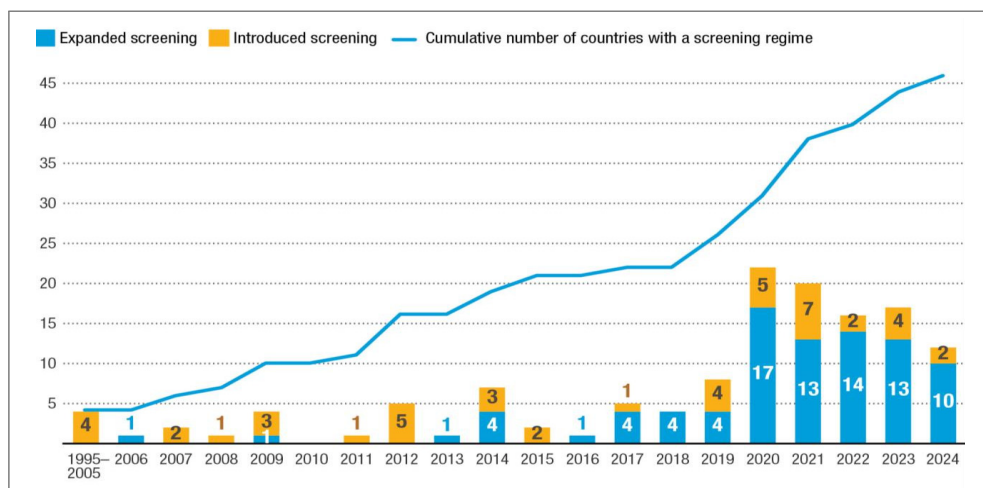
II. 경제안보를 고려한 투자안보 정책 동향

1. 국가안보 측면의 FDI 심사 도입 확대 동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심사 제도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강화·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투자가 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첨단기술 유출, 핵심 인프라 장악, 공급망 교란 등 안보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투자목적과 배경, 지배구조,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심사대상 산업의 확대·심사절차의 의무화·정부의 사후 개입권 강화 등의 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제안보 관련 FDI 제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24년 기준 FDI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총 46개국으로 2015년(21개국) 대비 약 119% 증가하였다. 같은 해 전체 투자제한 조치 중 43%가 국가

안보를 사유로 한 신규 또는 강화된 심사조치이다(UNCTAD, 2025:97-98). 이러한 조치들은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투자 거부·지분 제한·기술 이전 금지 등 진입 규제를 부과하는 형태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및 국가안보 관련 핵심 기술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24), 일본은 반도체 제조·공작기계·선박용 엔진 등 핵심 산업을 심사대상에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 범위에 기존 방산물자,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우려, 국가핵심기술 분야 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포함시켰다. 2024년 기준 EU 회원국 24개국이 FDI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불가리아·아일랜드 등 새로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나타나며, 이는 EU 전반에서 ‘전략 산업 보호’ 중심의 심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2024년 국가안보 관련 투자심사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국가 수



자료: UNCTAD(2025). p.98

FDI 심사의 확대와 함께 주요국은 지분율을 활용하여 기업의 소유(Ownership)와 지배(Control)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 분석은 투자심사뿐 아니라 제재·수출통제 등 국가안보 조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자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목록에 기반한 금융제재는 SDN이 50% 이상 보유한 기업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여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엄격히 반영한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의 외국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연계성 검토는 FDI 제한 제도는 아니지만, 특정 산업 지원에서 ‘우려국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IRA는 우려국이 25% 이상 지분 또는 통제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을 FEOC로 간주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산업정책 영역에서도 소유·지배구조 기반 위험평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복잡한 다국적 기업 구조 속에서 단순 지분율보다 실질적 통제력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고 있다(UNCTAD, 2016). 국가안보·전략산업·인프라 보호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보다 실질적 지배권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소유·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심사 및 관련 규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동향

최근 주요국은 FDI를 단순한 자본 유입 수단이 아닌 국가안보와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에는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국가안보·핵심기술 보호·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 논란, 그리고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외국인투자위협심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한 이후, 각국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며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심사’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였다.

미국은 FIRRMA 이후 외국인투자 심사 체계를 지속 강화해 왔다. 2024년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²⁾의 처벌·집행 권한을 확대하고 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

2) 1975년 설립된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심사하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관계부처 합동위원회다.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무부, 상무부, 법무부, USTR, 국방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다. CFIUS는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국가안보 검토 및 조사를 수행하고,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투자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한다.

했다. 같은 해 국방생산법(DPA) 제721조에 근거해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에 대한 CFIUS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자, 59개 군사시설을 추가하고 일부 시설의 관할 범위를 최대 100마일까지 확장하였다. 나아가 2025년 2월 발표된 미국 우선 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은 첨단기술·핵심 인프라·에너지 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검토 강화를 지시하며 기술 유출 차단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외국인투자 심사를 국가안보 중심 경제정책 수단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과 EU 역시 외국인투자 심사를 국가안보·경제안보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통합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안보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of 2022, NSIA) 17개 전략 산업의 거래를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경영진 자격 박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은 국방산업·첨단기술·연구보안을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제재·투자심사를 포함한 경제안보 수단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방 및 안보전략은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였다. 한편 2025년 영국의 산업전략(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은 국방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적 부문으로 규정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접근을 재확인하였다. EU도 외국인투자 심사의 조화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존 외국인투자심사규정(Regulation 2019/452)은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사유로 FDI를 심사할 권한과 협력 메커니즘을 부여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팬데믹·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회원국 간 제도 불균형과 절차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월 경제안보패키지의 일환으로 새로운 FDI 심사규정 개정안(Proposal for a new regulation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을 발표해 심사절차의 조화와 EU 차원의 통합적 심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심사체계를 EU 차원의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역내 투자투명성과 안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20년 5월 외환법(FEFTA)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분 취득 심사 기준을 10%에서 1%로 하향하고, 무기·에너지 등 핵심업종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재무성 2024년 연례보고서는 이러한 개편이 투자 자유와 국가안보의 균형을 유지하되, 정보·기술 유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려는 방향임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안보추진법(2022)과 연계하

여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특정중요물자'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지정 업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 및 핵심기술 유출 위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일본은 사전신고·면제·사후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신고·허위신고·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 제재를 엄격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재무성은 심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거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다.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안은 '특정외국투자자' 개념을 신설해, 기밀정보 해외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신고 면제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는 강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内閣府, 2025). 이는 일본의 FDI 심사가 자본거래 관리에서 경제안보·기술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규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미국·영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경제안보 중심의 FDI 심사체계 강화를 공통 기조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인프라·공급망 등 전략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앞으로 투자자의 국적뿐 아니라 투자 목적·지배구조 등 실질적 영향력을 근거로 하는 다층적 심사체제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 요건으로서의 지분을 기준

1. 주요국 투자심사 대상 요건

1) 미국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 거래는 ① 지배적 투자(Controlling Investment), ②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 ③ 부동산 거래(Real Estate Transaction)로 구분된다.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인수·합병(M&A)만이 CFIUS 심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첨단기술 및 핵심인프라 분야에서 이른바 '우려국(Concerned Countries)'

의 대미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상 우려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FIRRMA가 제정되면서 CFIUS의 심사 범위가 △ 핵심기술(Technology), △ 핵심인프라(Infrastructure), △ 개인정보(Sensitive Data) 분야의 비지배적 투자(소위 TID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외국인이 군사시설 또는 민감한 정부시설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1〉 미국 CFIUS 심사 대상 분야

구분	자발적 신고			의무적 신고
	지배적(controlling)	비지배적(Non-controlling)	부동산 거래	
내용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권한을 보유하는 지배적 투자	핵심기술 (Critical Technologies) 군용품목(USML), 전략물자(CCL),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신기술 등 생산, 설계, 디자인, 테스트, 제조·제작, 개발 핵심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s) 통신, 에너지, 교통 등 국가 인프라의 소유, 운영, 제조, 공급, 서비스 민감개인데이터 (Sensitive Personal Data) 금융, 지리 위치, 의료보건, 생체인증 등 안보 개인정보 관리, 수집	군기지 및 민감 국가안보시설 인접 토지 거래 (매입, 임대, 양도)	- 핵심기술 투자 - 외국정부와 실질적 이해관계 ³⁾ 가 있는 투자
비고	* 기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변화: 지배권 생성, CFIUS 심사 회피 위한 다른 유형의 거래			

자료: 저자작성

2) 일본

일본은 외환법(FEFTA)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지정업종 또는 핵심업종에 속하는 일본 기업에 투자할 경우 엄격한 사전신고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을 1% 이상 취득하면(비상장기업은 1주 이상 취득 시) 사전신고 대상이 되며, 이는 일본 회사법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된 기준이다. 사전신고 제도는 단순한 지분 취득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 지점 설치, 금전대차, 사업양수 등까지 포함한다. 지정업종은 국가안보·공공질서·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구성되며, 그중 방위산업·항공우주·원자력 등은 핵심업종(Core Sectors)으로 분류된다. 핵심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및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사전신고 면제 제도가 제한되는 등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3)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의 25%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외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49%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 2〉 일본 사전신고 의무 대상인 투자의 유형

구분	주요내용
비상장회사 주식 취득	-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과거 거주자였던 비거주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
상장회사 주식 취득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취득, 총 의결권의 1% 이상 취득
경영권 영향	- 회사의 사업 목적 실질 변경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동의
지점 관련	- 일본 내 지점 설치, 지점의 종류·사업 목적의 실질적 변경
금전대차	- 국내법인에 대한 1년 초과 금전대차(대차 잔액이 1억 엔 초과 또는 해당 법인 부채총액의 50% 초과)
기타	- 사업의 양수

자료: 저자작성

〈표 3〉 투자심사 대상 업종 예시

구분	포함 업종
지정업종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대상 전체 업종 - 군사, 첨단기술, 자원·에너지, 인프라, 운송, 농림수산 등
핵심업종	지정업종 중에서도 국가안보·전략기술·중요 인프라 직결 업종 - 무기, 항공기(무인 포함), 원자력, 우주, 군사전용 범용품, 감염병 대응 의약품·고도관리의료기기, 중요광물·도서항만, 비료,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반도체 장치, 첨단 전자부품, 축전지, 선박 부품, 금속 3D 프린터, 복합기, 광섬유 케이블, 사이버보안(인프라용),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철도, 석유 등
非핵심업종	지정업종 중 핵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 사이버보안,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철도, 석유, 열공급, 방송, 여객운송,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 항공운송, 해운

자료: 저자작성

3) EU (독일/프랑스)

EU는 회원국 간 외국인투자 심사의 조화와 제도적 정비를 위해 FDI 심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체적인 FDI 심사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크로아티아·키프로스·그리스는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European Commission, 2025: 7). 회원국 대부분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사제도의 성숙도와 제도적 정교함이 높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독일은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FTPA) 등에 근거하여 투자 심사 대상을 ‘전산업(Cross-Sectoral)’과 ‘특정산업(Sector-specific)’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 역외 투자자(non-EU investor)가 독일 기업의 의결권 20~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인프라 관련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의 지분 취득만으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군사·보안, 무기, IT보안 등 국가안보 관련 특정산업의 경우에는 독일 외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10% 이상의 지분 취득 시 심사 대상이 된다.

〈표 4〉 독일의 투자심사 대상 분야 및 심사 기준

분류	외국 투자자	업종	기준
전 산업 (Cross-Sectoral)	EU 외	1. 핵심인프라 관련 2. 소프트웨어 3. 통신감청기기 제조 4. 클라우드 컴퓨팅 5. 컴퓨터 통신 관련 인프라 6. 미디어 7. 통신인프라간섭 방지	10%
		8. 개인정보장비 9. 의약품 10. 의료기기 11. 체외진단 12. 원격감지시스템 13. 인공지능 14.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15. 로봇공학 16. 반도체 17. IT기술(방어, 범죄수사 등) 18. 항공우주 회사 19. 원자력 기술 20. 양자기술 21. 3D프린팅 22. 5G네트워크 23. 보안모듈 24. 보안시설 25. 주요 원자재 26. 비밀특허 상품 27. 1만 헥타르 이상 농경지	20%
		기타 업종	25%
특정산업 (Sector-Specific)	독일 외	- 수출 목록의 Part I Section A에 정의된 모든 상품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분류된 물품 - 기밀 정보 처리를 위한 특정 IT 보안 기능이 있는 상품 또는 해당 상품의 IT 보안 기능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 - 국방중요시설에 해당하는 국내기업	10%

자료: 저자작성

다음으로 프랑스는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방위산업, 이중용도 품목, 암호화 기술, 데이터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기업의 지배권 취득, △ 사업 부문 전체 또는 일부의 양수, △ 의결권 10%⁴⁾ 이상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질서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는 사전 인가 대상에 해당하며, 그 범위는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표 5〉 프랑스 사전승인 대상 분야

구분	I. 국가방위·공공질서·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활동	II. 국가방위·공공안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재화 또는 용역 관련 활동	III.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활동
분야	1. 국방·무기 관련 3. 방위비밀 관련 기관 4. 정보보안(사이버보안) 5. 국방부 관련 하청업체 6. 암호화 수단·서비스 7. 감청·정보수집 장비 8. 보안인증 평가기관 9. 도박업(카지노 제외) 10. 병원성·독성 물질 관련 11. 데이터 처리·저장 관련	1. 에너지 공급의 무결성·보안·연속성 2. 물 공급의 완전성·보안성·연속성 3. 운송망 및 서비스의 보안·연속성 4. 우주운영의 무결성·보안·연속성 5. 전자통신망의 운영 보안·연속성 6. 공공안전기관의 임무 수행 7. 중요시설의 보안 및 운영 연속성 8. 공중보건 보호 9. 식량안보 관련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10. 언론 및 출판 11. 핵심원자재의 채굴·가공·재활용의 보안·연속성	1. 경제부령으로 지정된 핵심기술 관련 R&D 분야 2. EU 규정(EU) 2021/821 부속세의 이중용도 품목 관련 R&D * 참고로 이 항목은 첨단기술, 반도체, 양자, AI 등 신형기술(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영역의 R&D 활동을 포함하며, 외국인투자 시 별도 심사 대상으로 분류

자료: 저자작성

4)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투자자의 의결권 취득 기준이 약 1년 간('20.12.31.~'21.12.31.) 기존 25%에서 10%로 한시적 축소된 바 있었는데, 2023년 12월 28일자로 10% 기준이 영구화되었다.

4) 영국

영국은 국가안보 및 투자법(NSIA)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7개 민감 산업 분야에 속한 영국 기업의 지분(주식 또는 의결권)을 25%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정부 산하 투자안보국(Investment Security Unit, ISU)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 대상 산업은 △ 군용 및 이중용도 기술,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 양자기술, △ 인공지능, △ 암호화 및 인증기술, △ 첨단소재, △ 첨단로봇공학, △ 민간 핵기술, △ 통신, △ 정부 주요 공급업체, △ 응급서비스 주요 공급업체, △ 데이터 인프라, △ 방위, △ 에너지, △ 수송, △ 합성생물학, △ 위성 및 우주기술 등 총 1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NSIA제정 이전에는 투자심사 개시 요건으로 시장지배력이 주요 고려 요소였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적격 법인’과 ‘적격 자산’으로 심사 대상을 구분하고, 투자자가 기업의 의결권 행사 및 내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지식재산권 통제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심사 기준을 도입하였다. 특히, 적격 법인의 지분 비율이 25%, 50%, 75% 등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토지·지식재산권 등 적격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심사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인수 시 25% 지분 취득부터 심사 대상이 되며, 이후 지분율이 25% 단위로 초과될 때마다 추가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표 6〉 영국의 투자심사 대상 분야 및 심사 기준

구분	심사 대상 분야	지배권 취득 기준
내용	① 군용/이중용도 기술, ②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③ 양자기술, ④ 인공지능, ⑤ 암호화 인증기술, ⑥ 첨단소재, ⑦ 첨단로봇공학, ⑧ 민간 핵, ⑨ 통신, ⑩ 정부 주요 공급업체, ⑪ 응급서비스 주요 공급업체, ⑫ 데이터 인프라, ⑬ 방위, ⑭ 에너지, ⑮ 수송, ⑯ 합성 생물학, ⑰ 위성 및 우주기술	1. 적격법인 내 지분 비율이 각 임계값(25%, 50%, 7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적격법인 내 의결권 비율이 각 임계값(25%, 50%, 75%) 이상을 초과하는 추가 통제를 얻는 경우 3. 법인 내 의결권을 취득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법인에 대한 중대한 영향 또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경우

자료: 저자작성

2. 경영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취득의 판단 기준 분석

1) 투자심사 제도에서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 취득 기준

미국, 일본, EU(독일·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모두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대상 요건인 산업 분야와 ‘경영상 지배력’ 취득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

다. 산업 분야의 범위 또한 중요하지만, 투자심사의 개시(Trigger) 요건으로 작용하는 핵심 요소는 투자자가 경영상 지분율을 어느정도까지 취득했는지 여부다. 대부분의 국가는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취득을 경영상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간주하고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단순한 지분율만으로 지배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회 임명권·의결권 위임 등과 같은 정성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투자자의 실질적 영향력 여부를 평가한다.

미국의 경우, CFIUS는 지배적(Control) 투자뿐 아니라 핵심기술·인프라·민감정보(TID) 분야에 대한 소수지분 취득과 같은 비지배적(Non-controlling) 투자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명시적인 지분율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CFIUS 규정에서 정의하는 ‘지배(Control)’란 지분율과 무관하게 이사회 대표권, 위임장, 계약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지시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실질적 능력을 의미한다(31 CFR Part 800 §800.208). 즉,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되며, 특히 TID 업종에서는 소수지분 투자라 하더라도 정보 접근권, 이사회 참관권, 지명 거부권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심사가 개시된다(31 CFR Part 800 §800.211).

반면, 일본은 회사법상 주주제안권 기준인 1%를 외국인투자 사전신고의 개시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가 1%의 지분만 취득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어 경영상 지배력과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 역시 외국인투자 심사에서 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10%, 20%, 25% 등 차등적인 지분 취득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지분율 변화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러한 기준 설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보유 변동을 일정 수준에서 공시하도록 하는 독일 자본시장 규제의 구조⁵⁾, 즉 지분율이 기업의 통제력 변화와 직결된다는 제도적 인식을 참고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도 25% 지분율 취득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은 이사회 특별결의 찬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수치이다. 특별결의의 요건이 7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25% 지분의 보유자는 사실상 특별결의를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Cabinet Office GOV.UK, 2025). 이와 같은 특별결의 요건과의 정합성에 따라, 최초 25% 취득 이후에 추가로 25%씩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25%, 50%, 75%)에도 추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

5) 독일 상장기업은 의결권 비율이 3%, 5%, 10%, 15%, 20%, 25%, 30%, 50%, 75% 기준치에 도달하는 경우 금융감독청(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에 보고해야 한다.(WpHG Section 33)

반면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약 1년간 25% 지분을 취득 기준치를 10%로 하향시켰으나, 2024년에 외국인투자심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10% 기준이 영구화된 바 있다. 프랑스는 상장사의 경우에 지분율을 10%만 취득해도 공시 대상이며,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다(Bine P & Lainé W, 2024). 각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지분율의 기준치는 상이하나, 정량적인 지분율 기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인 기준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원 임명권, 이사회 참여, 정보 접근권 등이 있다.

〈표 7〉 주요국 간 지배권 취득 기준 비교

구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정량 기준	명시적 지분율 기준 없음	상장기업 1% 비상장 기업 1주	10%, 20%, 25% 의결권 직간접 취득	전체 지분 중 10% 취득	주식·의결권 25% 이상 취득
정성 기준	TID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 접근, 이사회 참여 등	경영권 영향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동의 등)	의석수 확보, 결정 거부권, 정보 접근권 등 실질적 통제	-	이사회 의결 관여, 이사회 구성원 임명권, 회사 정책에 실질적 영향 등

자료: 저자작성

2) 유사 제도에서의 경영상 지배력 또는 영향력 개념의 활용

외국인 투자심사뿐 아니라 다양한 규제 제도에서도 '경영상 지배력' 개념이 폭넓게 활용된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이 투자심사의 경영상 지배력 취득 기준으로도 연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증권법⁶⁾·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규제에서 지배권은 기업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되며, 판단 시 의결권 지분율, 이사회 임명권, 주주 간 계약,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미국의 판례상 의결권 지분 50% 이상 보유 시 지배력 행사로 보며(Hunton Andrews Kurth LLP, 2024),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은 의결권 25% 초과 시 '통제 추정(Presumed Control)'을 인정한다(12 CFR §225.41). 세법(Internal Revenue Code) 역시 외국인이 미국 법인의 의결권 또는 자본의 25% 이상을 보유하면 정보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26 U.S. Code § 6038A). M&A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Williams Act(공개매수 규제에 관한 미국연방법)는 5% 이상

6) 증권법(Securities Act) (관련 규정 Rule 405 (17 C.F.R. §230.405)),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관련 규정 Rule 12b-2 (17 C.F.R. §240.12b-2))

지분 보유 시 잠재적 지배 의도를, 20% 이상 보유 시 경영권 개입 의도를 인정해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결합심사에서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중심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을 평가하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기업결합 심사지침(Merger Guidelines)에 따르면, 시장집중도(Herfindahl- Hirschman Index, HHI)가 2,500 이상이고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실질적 지배력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수출통제·제재 제도에서도 지배력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미소기준(De-minimis Rule)은 외국산 제품 내 미국산 통제 품목 가치가 25% 이상이면 미국 통제 대상이 된다고 본다. 미국산 통제 품목의 가치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미국의 통제권(지배력)이 미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제재 분야에서는 제재 대상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소유(Ownership)’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제재 목록(SDN List)에서는 제재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제재 관련 50% 소유 규칙을 채택하되, ‘통제(Control)’는 지분율을 넘어 의결권 행사, 자산 사용권, 지배적 영향력 등 실질 요소로 판단한다. 영국 역시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UK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을 통해 이사 임명권,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중국·러시아 등 ‘외국 우려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목록을 운영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외국우려단체(FEOC)는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우려국이 아닌 제3국에 설립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우려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 이사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FEOC로 간주된다. 이처럼 지배력 판단 기준은 대체로 25~50% 구간에 집중되나, 단순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과 통제 가능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가·제도별 목적에 따라 지배력 기준은 재무적 소유에서 경영 통제까지 폭넓게 확장되어 운영된다.

3. 우리나라의 경영상 지배력 취득 요건

1) 투자심사 제도에서의 경영상 지배력 취득 기준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사전에 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⁷⁾ 신고 대상 중 ① 방산물자, ② 전략물자, ③ 국가기밀, ④ 국가핵심기술, ⑤ 국가첨단전략기술, ⑥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분야 등 6개 대상 분야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경우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⁸⁾의 대상이 된다.⁹⁾ 이때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정의는 하위 법령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합하여 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5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외국인이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어,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한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50% 기준은 자회사, 모회사 관계 개념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50%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자회사로 추정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회계적 관점에서도 K-IFRS 기준에 따르면 5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할 시 회계 재무재표의 연결 편입 요건을 충족하여 자회사로 회계상 통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만한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수합병(M&A)식 외국인투자를 고려하여 50%의 지분 취득을 임계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유사 제도에서의 경영상 지배력 개념의 활용

우리나라에서도 '경영상 지배력' 또는 '사실상 지배'의 개념은 외국인투자심사 외에도 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8) 과거에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되면, 주무부 장관 혹은 정보 수사기관장의 검토 요청에 따라 외국인 투자위원이 심의를 거쳐 M&A 허가 및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산업통상부는 2022년 8월 23일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위원장 무역투자실장)는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 위해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평가를 진행한다.

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2

양한 법령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지배 관계의 강도에 따라 5%, 30%, 50% 등 서로 다른 임계치로 설정된다. 우선, 50% 기준은 주로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의 지배력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지분 50% 이상 보유로 정의된다. 또한 「상법」에서도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판단할 때 지분을 5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 수치는 통상적인 '법적 지배'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30%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기업 간의 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를 심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경영 방침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의 지배로 간주된다.

한편, 5% 기준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 적용된다. 동 법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또는 대주주 변경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지배' 또는 '인수' 개념을 지분 5% 이상 취득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지분율에서도 경영 영향 가능성을 조기에 통제하려는 취지다.

이처럼 국내 법령마다 '사실상 지배력'의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각 제도의 규제 목적과 정책적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 질서 유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보장 등 규제 목적에 따라 지배권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표 8〉 우리나라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 관련 유사 입법례

법령명	용어	기준	조문 내용 요약
상생협력법	실질적 지배	50%	법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1항 제3호 :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인수 및 확장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사업조정신청 가능 시행규칙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 임원 겸임·파견, ▲ 사업 위임, ▲ 자산 대여 및 보증, ▲ 지분 50% 이상 보유, ▲ 지분 30%-50% 보유하는 특수관계인, ▲ 자회사를 통한 지배, ▲ 공동지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국제조세조정법	실질적 지배	50%	법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이며,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법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 주주나 외국법인 등

법령명	용어	기준	조문 내용 요약
공정거래법	사실상 지배	30%	법 제2조(정의) 제11호 : '기업집단'이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의 집단을 말함 시행령 제4조 (기업 집단의 범위) : 법에 따른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① 동일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나 ②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봄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실질적 지배	30%	법 제2조(정의) 제1호 : '해외진출기업'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 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시행령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한 관련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30이상 보유한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사실상 지배	15%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제1항 제2호 :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이 ①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나 ②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사실상 지배	5%	법 제2조(정의) 제3호 :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 시행령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 법에 따른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가진자

자료: 저자작성

IV. 합리적 투자심사를 위한 지배력 판단기준 관련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방산물자·전략물자·국가핵심기술 등 6개 지정 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안보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분 50% 초과 취득을 심의 개시 기준으로 삼으나, 소수지분이라도 임원 선임이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소수 지분만으로도 이사·감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경영 통제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데이터·시설에 접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지분 50% 초과'라는 단일 기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투자 구조, 우회적 지배력 행사, 계약 기반 통제 등 실질적 영향력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미국·영국·EU·일본 등 주요국이 지분 기준을 1%·5%·10%·25% 등 다층적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지분을 요건 없이 실질적 통제력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국제 규제 흐름을 고려할 때, 국내 제도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낮은 지분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간접투자, 특수관계인의 연계 투자 등 안보 리스크가 충분히 포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보 목적의 외국인 투자 심사는 단순 지분율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소수 지분에 의한 경영 영향력, 기술·데이터 접근 가능성, 계약 기반 권한 부여 등 실질적 지배력 요소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합리적 투자심사를 위한 지배력 판단기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1. 유럽식 모델: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구분(10%~25%)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심사에서 지배권 취득 기준을 현행 50%에서 25%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 분야별 안보 민감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분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하거나 불충분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전 산업(Cross-Sectoral)과 특정 산업(Sector-Specific)을 구분하여, 분야별 민감도에 따라 지분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역외 투자자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미디어 등 국가안보 관련 업종에 투자할 경우 10% 기준치를 적용하며, 독일 외 투자자(즉, 제3국 투자자)가 국방·특허·수출통제 품목 관련 산업에 투자할 때도 동일하게 10% 기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접근은 분야별 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외국인투자 심사 강도를 차등화하는 체계적 모델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인 6개 분야(방산물자,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관련 분야)의 기술 민감도와 통제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식 차등 기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식 모델: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연계하는 방안

일본은 「상법」상 주주제안권 제도를 외국인투자 심사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소수지분 취득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접근은 외국인의 지분 보유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경영권 및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지정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하는 경우, 외환법(FEFTA)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이 되며, 재무성 및 소관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때 1% 기준은 상법상 주주제안권이 발생하는 최소 비율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주주제안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잠재적 안보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 즉, 외국인 주주의 제안권 행사 자체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가진다. 이와 함께 회계장부열람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인 선임 청구권, 집중투표권,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본래 소수주주 보호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평균 주주 구성은 최대주주 29.21%, 특수관계인 10.46%, 우리스주 0.40%, 자사주 3.01%, 외국인 5.94%, 소액주주 48.36%로 나타난다(이성복, 2024). 이 통계는 외국인의 평균 지분율(5.94%)이 주주제안권 발생 기준인 3%를 상회함을 보여주며, 이는 외국인 주주가 일정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국적의 외국인 주주가 공동 행동을 통해 지배주주 지위를 수행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의견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시된다(Jacob Marco, 2020). 따라서 외국인 소수주주의 권리행사가 지배구조상 불안정성 또는 정보보안상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9〉 주주제안권을 통해 발생가능한 안보 리스크 예시

구분	유형	주요내용	안보 리스크
지배영향형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주총 안건 제안 (이사·감사 선임, 정관변경, 배당 등)	- 외국인 주주가 이사 선임, 경영 정책, 배당 정책 등 주주 제안 요구 시 → 기업 경영 방향 간접적 영향력 - R&D 구조조정, 기술 분사, 지배구조 개편 등 안건 제안 시 → 기술 관련 해외 유출 가능성 상존
	집중투표권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 선임 청구 가능	- 외국인 주주가 집중 투표를 통해 이사회 진입 시도 가능 → 이사회 내 기술·사업정보 접근으로 기밀 노출
정보접근형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 가능	- 외국인 주주가 재무자료·거래내역을 통해 기술개발비, 원가구조, 거래처, R&D 파트너 등 민감정보 접근 가능
	검사인청구권 (상법 제467조)	부정·위협행위 의심시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 검사인이 회계, 기술, 거래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외국인 주주가 이를 활용하면 기술, 거래 정보 접근 가능성
절차혼란형	임시주총소집권 (상법 제366조)	이사회 미소집시 직접 임시 주총 소집 가능	- 외국인 주주가 반복적으로 임시 주총 청구 시 경영혼란, 내부정보 노출 가능성 상존
	해임청구권 (상법 제385조, 제462조, 제543조)	부정행위, 법령 위반시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 청구	- 외국인 주주가 해임 청구 남용 시, 경영 불안 유발 가능

자료: 저자작성

3. 미국식 모델: 지배력 관련 모든 요소 고려 방안

합리적인 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지분율 등 단순한 정량 기준에 의존하기보다, 실제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지배력 판단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CFIUS 제도는 가장 포괄적인 ‘지배력’ 개념을 적용하는 대표적 모델이다. CFIUS 규정에 따르면, ‘지배력’이란 직·간접적 여부나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이 기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지시·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CFR 31 §800.208). 이는 단순한 과반수 지분 보유뿐 아니라, 지배적 소수 지분, 이사회 대표권, 의결권 위임, 특별주(Special Share), 계약상 권리, 협동행위(Concerted Action)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CFIUS는 이러한 권한이 존재할 경우 법인의 주요자산 매각·임대·담보 설정·양도, R&D 시설의 이전·폐쇄·중대한 변경, 임원의 임면권, 비공개 기술정보 접근권 등 법인의 핵심 경영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지배력으로 판단한다.

〈표 10〉 법인의 중요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

1. 법인의 주요 유형 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매각, 임대, 담보 설정, 양도하는 행위 (통상 영업범위 내 불문)
2. 법인의 조직개편, 합병 또는 해산
3. 생산, 운영, 연구개발 시설의 폐쇄, 이전, 중대한 변경
4. 주요 지출 또는 투자, 주식 또는 채권 발행, 배당금 지급, 또는 운영 예산 승인
5. 새로운 사업 분야 또는 벤처의 선정
6. 주요 계약의 체결, 종료 또는 불이행 결정
7. 비공개 기술·재무·기타 독점적 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절차
8. 임원 또는 고위관리자(또는 조합의 경우 일반 조합원)의 임명·해임
9. 핵심기술, 민감기술 또는 미국 정부의 기밀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원의 임명·해임

자료: CFR 31 Part 800.208

이와 같은 미국식 접근은 외국인투자 심사에서 “실질적 영향력 검토(Substantive Influence Review)”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지분율이 낮더라도 기업 운영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직·간접적 권한이 존재한다면 이를 지배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 A(사모펀드)가 미국 기업 B의 주식 7%만 인수했더라도, 동시에 B의 주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확보했다면 CFIUS는 이를 A가 B를 지배하는 경우로 판단한다. 또한, 서로 무관한 5명의 외국인이 한 기업의 지분을 각각 10%씩 보유하면서 자금을 공동 조달하고, 의결 시 협동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들은 비공식적 협동행위를 통해 공동 지배를 행사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심사 시 단순한 지분율 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 의결권 위임, 계약상 권리, 협동행위, 정보접근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분율이라는 외형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미국식 평가모델의 도입 방향과 부합한다.

〈표 11〉 사례별 예시

예시	요약	판단
외국인 5명이 협동행위로 50% 보유	비공식적 공동투표 합의 존재	지배인정
7% 지분 + 주요 계약 해지권	실질적 경영 영향 가능	
9% 지분 + 임원해임 거부권	핵심 의사 결정 거부 가능	
합자회사에서 일반조합원 2% 보유	전권 결정권 보유	
유한책임사도 주요 투자 거부권 보유	공동지배	
외국인 5명 독립적 보유	협동행위 없음	지배부정
13% + 1인 이사회 임명권 보유	단순 보호권만 존재	
20% + 수동적(Passive) 투자 약정	완전 수동적 투자자	

자료: CFR 31 Part 800.208(e) 참고하여 제작성

V. 결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산업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 기반 강화 또는 중요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안보 측면의 심사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맹국의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적대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하여 기술 유출, 인프라 지배력 등 안보적 우려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금년 2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을 발표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제공하되,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과의 거리 및 독립성을 평가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투자일지라도 적대국의 영향력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대미 투자의 신속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 협정에 투자심사에 관해 협력한다는 조항들이 삽입되고 있다. EU, 일본 등 산업 선진국들은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운영하면서도 안보적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긍정적 투자는 촉진하되 안보 우려가 높은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심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발생하는 투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언제 그러한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발생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분율을 객관적 기준으로 하되, 특히 중요한 기술 또는 산업 분야에서는 그 지분율 기준을 크게 낮춤으로써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경우 안보 우려가 큰 분야에 관해서는 객관적 지분율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영향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는 분야와 무관하게 지분 50% 초과 취득을 중심으로 심사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소수 지분을 활용한 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심사 범위에서 누락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는 SPV·페이퍼컴퍼니·국내 법인 등을 통한 간접투자·우회투자 구조는 현행 외축법 체계만으로는 적시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지분율을 설정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투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분율에 무관하게 특정한 안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면 투자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객관적 지분율과, 실질적 지배력 요건을 병행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산업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심사 개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종호. (2022). 주주제안제도의 쟁점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52, 31-62.
- 김지혜. (2025). 2025년 영국 국가안보전략 및 무역전략 발표. *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24호*, 무역안보관리원.
- 김태현. (2023).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42(2), 101-130.
- 무역안보관리원. (2023). 「미국 투자심사 안내가이드」.
- _____. (2023).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심사 총람」.
- 박정민 외. (2022). 「투자제도에 대한 안보 측면 논의 동향」. 무역안보관리원 연구보고서.
- 박정인, 정현. (2024).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1(3), 165-191.
- 송인옥. (2022).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 규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33(1).
- 신혁, 이환수. (2021).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안보 심사 개선 방향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4(2), 181-211.
- 오정미. (2025). 안보 측면의 FDI 심사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대. *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5-23호*, 무역안보관리원.
- 오현석. (2024).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국제거래법연구*, 33(1), 37-66.
- 이성복. (2024).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이슈보고서 24-20*, 자본시장연구원.
- 임정현. (2024). 美 재무부, CFIUS 권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 발표.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36호*, 무역안보관리원.
- _____. (2024). 美 재무부, 군사시설 부동산 거래에서 CFIUS 권한 확대.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1호*, 무역안보관리원.
- 정세정. (2023). 외국인투자심사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68(4), 255-298.
- 홍연서 외 3명. (2024). EU 경제안보 패키지 발표 조사 보고서. *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4-4호*, 무역안보관리원.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2024. 8. 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2022. 8. 23.).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Presidential Memorandum)”. (2025. 2. 21.).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rica-first-investment-policy/>
- “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Memorandum)”. (2025. 1. 21.).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 Bine, P., & Lainé, W. (2024. 2. 16.). France strengthens foreign investment controls, expands jurisdiction to “commercial establishments” registered in France.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https://www.skadden.com/insights/publications/2024/01/france-strengthens-foreign-investment-control>

- Cabinet Office GOV.UK. (2025. 6. 18.). Check if you need to tell the government about an acquisition that could harm the UK's national security. https://www.gov.uk/guidanc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acquisitions?utm_source.
- "Cabinet Order for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Government of Japan.". (2020.4.24.). Ministry of Finance (Japan). https://www.mof.go.jp/english/policy/international_policy/fdi/20200424.htm.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25). Mergers: Guidance on the CMA's jurisdiction and procedure (CMA2, revised guidance). GOV.UK.
- 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2023. 12. 29.). Renforcement du contrôle des investissements étrangers en France.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3/12/29/renforcement-du-controle-des-investissements-etranagers-en-france>.
- European Commission. (2025). Fifth Annual Report on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COM(2025) 632 final. Brussels.
-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9). Regulation (EU) 2019/452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79, 1-14.
- Federal Trade Commission. (2023). Merger Guidelines. Washington, D.C.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FEFTA), as amended." (2020. 5.). Tokyo: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xternal_economy/investment/national_security.html.
- Freshfields. (2025). Japan's foreign investment regime gets sharper teeth: Are investors ready for the bite? https://www.freshfields.com/en/our-thinking/campaigns/foreign-investment-monitor/japans-foreign-investment-regime-gets-sharper-teeth-are-investors-ready-for-the-bite?utm_source.
- Hunton Andrews Kurth LLP. (2024). SEC enforcement action: Investo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changes in investment intent. <https://www.huntonak.com/en/insights/sec-enforcement-action-investors-should-pay-close-attention-to-changes-in-investment-intent.html>.
- Jacob, M. (2020). Safeguarding Shareholder Democracy Against Foreign Interference: Changing Shareholder Voting to Protect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22 U. Pa. J. Bus. L., 899-921.
- "Japan's 2025 FEFTA Amendments: Rules And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Investments by Chinese Investors". (2025. 10. 1.).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e6022be-3f1e-40e0-9b3c-19834a4b4251>.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24).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ist Updat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OECD. (2025). *Economic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OECD Publishing, Paris.
- “Public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Public Notices Adding the Core Business Sectors of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to Secure Stable Supply Chains.” (2023. 4. 24.). Ministry of Finance & METI Press Release (Japan).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3/0424_001.html.
- “Significant holdings - notifications of holdings in listed companies”. (2025. 6. 17.). BaFin. https://www.bafin.de/EN/Aufsicht/BoersenMaerkte/Transparenz/InformationspflichtenEmittenten/BedeutendeStimmrechtsanteile/bedeutendestimmrechtsanteile_no_de_en.html.
- U.S. Congress. (2018).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Public Law No. 115-232, 132 Stat. 2173.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3).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Justice Department Release 2023 Merger Guideline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 4. 11.). Treasury proposes regulatory update to sharpen and enhance CFIUS procedures and enforcement authoritie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141>.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4. 7. 8.). Treasury issues proposed rule to expand CFIUS coverag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near military installations.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206>.
- UK Government. (2021).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c. 25)*.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Effective from 4 January 202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1/25/enacted>.
- UK Government.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Security for the British People in a Dangerous World (CP 1338)*. Cabinet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2025-security-for-the-british-people-in-a-dangerous-world>.
- UNCTAD. (2016).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Investor Nationality - Policy Challenge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 UNCTAD. (2024). *Investment Policy Monitor: Germany*. Investment Policy Hub.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79/germany>
- UNCTAD. (2025). *World Investment Report 2025*, pp. 97-98.
- Wang, S., Yang, L., & Li, G. (2025). The UK's 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Mechanism: Characteristics, Origins, and Responses. *Laws*, 14(2), 24.
- Zimmerman, E. (2020, July 2).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How CFIUS Became a Tech Offic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34(4), 38 pp.
- 일본 내각부. (2025).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新旧対照表)」.
- 일본 재무성. (2025).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投資審査制度 年次報告書(2024年度)」.

ABSTRACT

Proposals on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

Soohong Chae*·Eunhee Kang**·Jeongmi Oh***

Recently,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or strengthened security-based screening system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aims to prevent excessive foreign control over domestic industrial bases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could disrupt supply chains in times of crisis, or the outflow of core technologies held by the home country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ultimately leading to the transfer of critical industrial bases overseas.

Typically, the scope of review targets is set based on the equity stake acquired by the foreign investor. Strengthening security-related investment screening manifests as expanding the scope of review targets—that is, lowering the equity stake threshold. In practice, countries are expanding the scope of review by lowering the foreign investor equity threshold. Some even mandate mandatory review whenever substantial control or influence arises, regardless of the equity percentage.

However, Korea still only subjects investments to review when a foreign investor acquires a 50% or higher stake,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or industry sector. This fails to include investments where a foreign investor holds a minority stake but can still exercise substantial control or influence.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riteria for inclusion in the review scope to protect critical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o this end, South Korea should expand the scope of investment review and enhance security-related scrutiny by referencing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or domestic legislative precedents.

|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nvestment Screening, Security Screening, Substantial Control, Equity Stake Ratio

* Chief Researcher,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chaehope@kosti.or.kr

** Principal Researcher,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eh@kosti.or.kr

*** Senior Researcher,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jeongmi@kosti.or.kr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의 결정요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송준현*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 |
| II. 문헌연구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약 30년간의 흑자 기조에서 최근 단기간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무역구조 변화는 산업 경쟁력 저하, 중국 내 수요 구조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SITC 3단위 237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의 결정요인을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단일 필요조건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은 모든 경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의 중요한 선행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총 8개의 충분조건 경로가 도출되었으며, 대중국 수출 의존 심화, 기술 우위 약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별 무역수지 악화의 등 결과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조건들의 결합적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역 현상의 복잡성을 현실적으로 포착하였다. 연구 결과는 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 주제어 무역수지, 대중국 무역적자, 수출 경쟁력,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 도쿄국제대학 상학부 교수, E-Mail: jsong@tiu.ac.jp

I. 서론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장기간 지속된 흑자 기조에서 급격히 적자로 전환되며, 양국 간 교역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이부형 외, 2023). 한국은 199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약 30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해 왔으며, 대중국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체 무역에서 연평균 579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국과의 교역에서 연평균 45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25).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181억 달러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한중 경제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김나을 외, 2024).

사실 다수의 국가와 수많은 품목이 거래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특정 국가와의 무역수지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론적 근거는 없다(Bown et al., 2005).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나 균형 상태에 있더라도 일부 국가와는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별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19.5% 그리고 수입의 22.1%를 차지한다(한국무역협회, 2025).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는 한국 경제 전반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적자가 갖는 경제적 함의는 매우 크다. 대중국 무역수지가 장기간 적자를 지속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 추가적인 흑자를 창출해야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이왕휘, 2023). 더욱이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단기간에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역적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 자체로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Hatsopoulos et al., 1988). 그러나 대규모 무역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외채가 증가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Gould and Ruffin, 1996).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은 거시경제 펀더멘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결합하여 동일한 충격에도 국가별로 상이한 반응을 초래한다(Felice and Tajoli, 202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은 수출국의 비교우위와 가격경쟁력, 수입국의 수요 요인, 그리고 양국 간 상호 의존적 경제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Bown et al., 2005).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효하다.

본 연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 요인을 산업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국제표준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3단위로 237개 산업을 선정하였고, 분석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여 전기(2019~2021년)와 후기(2022~2024년)를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분석 방법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을 적용하여, 산업 단위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의 복합적 결합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중국의 수입 수요,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중국의 대미 수출, 산업별 기술 수준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무역수지 악화 경로를 식별하고 각 경로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교역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fsQCA를 활용하였다. 전통적 회귀분석이 변수의 평균적인 독립 효과를 규명하는 데 적합하다면, fsQCA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방식과 결과에 이르는 다중 경로를 규명하는데 강점을 가진다(Ragin, 2008). 무역수지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한 변수 구성이 필요하며(Gruber and Kamin, 2007),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Nasir and Leung, 2021).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의 부문별 이질성에 주목하여 산업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무역수지는 산업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며(Chaudhuri, 2013), 무역 역학 분석에서는 산업별로 데이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Bahmani-Oskooee and Hajilee, 2009). 본 연구는 무역적자가 모든 부문에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Mann and Plück(200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와 산업별 특성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 모형과 변수 정의를 포함한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fsQCA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경로 유형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Ⅱ. 문헌연구

1. 무역수지 불균형의 결정요인

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Feenstra et al., 1998; Bown et al., 2005). 국민소득 항등식에 따르면, 무역적자는 한 국가의 총생산이 총지출보다 작은 상태를 의미하며, 총투자가 총저축을 초과하는 상황과 동일하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 수요가 저축을 초과하면 그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된다. 이러한 자본유입은 재화와 서비스의 해외 구매를 증가시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무역적자는 단순한 대외 교역의 결과가 아니라, 국내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 국제수지를 통해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Obstfeld, 2025). 따라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흐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시경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Gould and Ruffin, 1996; Nasir and Leung, 2021).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가 무역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에 주목해 왔으나(Adler et al., 2023), 환율과 무역 간의 관계는 국제경제학 분야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 있다(Shimizu and Song, 2022). Mundell-Fleming 모형은 환율과 무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생산국 통화 기준의 경직적 가격 설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업은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며, 통화의 평가절하는

수출재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재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을 유도한다. 미국의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한 Nasir and Leung(2021)은 환율이 장단기 모두에서 무역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평가절하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Hassan et al.(2017)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분석에서 환율 상승이 장단기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Bahmani-Oskooee(1992)는 환율 변동이 미국의 무역수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며, 환율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문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Shimizu and Song, 2022). 특히 Mundell-Fleming 모형이 전제하는 지출 전환 메커니즘은 GVC의 확산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Adler et al., 2023). 수출 기업들이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을 확대하면서 환율 변동이 생산 비용과 수출 가격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내 통화 가치 하락이 수익성 제고와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 되었고, 무역 불균형 문제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Gruber and Kamin, 2007). 기존 연구들은 주로 환율이 총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집계편향의 가능성이 있으며(Hunegnaw and Kim, 2020), 통화 가치의 하락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특정 산업에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Bahmani-Oskooee and Hajilee, 2009).

무역수지 불균형은 환율 외에도 소득 수준, 해외직접투자, 재정수지, 금리, 통화 공급, 시장개방 등 다양한 거시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Hassan et al., 2017). 소득 증가는 생산성과 수출 역량을 높여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지만, 소비 확대를 통해 수입 수요를 늘려 무역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과 수출을 늘려서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내수 확대와 물가 상승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입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연구들은 재정적자 확대, 민간 저축률 하락, 생산성 증대가 무역수지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Gruber and Kamin, 2007).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높은 소비성향, GVC 재편, 기업들의 해외 생산 등 다양한 거시경제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Feenstra et al., 1998; Bown et al., 2005). 따라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환율 조

작보다는 저축 증대, 투자 효율성 개선, 생산 능력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Nasir and Leung, 2021).

거시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산업별 비교우위와 같은 미시적 요인도 무역수지 불균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Golub, 1994). 실제로 거시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와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Gruber and Kamin, 2007). Yilmazkuday(2021)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높은 무역 비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중국의 무역흑자는 실질 교역 조건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Hatsopoulos et al.(198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낮은 저축률과 높은 자본 비용으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생산성이 하락하였고, 이것이 기술력과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GVC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로 대미 무역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교우위가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ub, 1994).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는 수출 역량의 저하가 무역적자를 유발하였다(Catao and Falcetti, 2002).

2.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

본 절에서는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 양국 간 교역의 특징과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전체 무역구조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특수성과 함의를 갖는지를 고찰한다. <표 1>을 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총수출 6,836억 달러, 총수입 6,3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과 함께 51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대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이다. 이처럼 중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기간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55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으며, 홍콩, 베트남, 인도 등과의 교역에서도 상당한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독일 등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1〉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2024년)

국가 및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억 달러)
	금액(억 달러)	비중(%)	금액(억 달러)	비중(%)	
중국	1,330	19.5	1,399	22.1	-69
미국	1,278	18.7	721	11.4	557
베트남	583	8.5	284	4.5	299
홍콩	350	5.1	23	0.4	327
대만	340	5.0	302	4.8	38
일본	296	4.3	476	7.5	-180
인도	187	2.7	64	1.0	123
싱가포르	182	2.7	106	1.7	76
호주	156	2.3	300	4.7	-144
멕시코	136	2.0	75	1.2	61
기타	1,998	29.2	2,568	40.6	-570
합계	6,836	100.0	6,318	100.0	51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양국 간 경제 관계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수입처로 자리매김하였다. 대중국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은 1993년 이후 약 30년간 지속적인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628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대중국 무역흑자는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박재곤·김정현, 2024).

하지만, 지속적 성장세를 보여온 한중 교역 관계는 201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양상에 구조적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우선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산 화장품, 식품, 문화 콘텐츠 등 일부 소비재 산업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다(이임자·조용원, 2017).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8년 1,621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IT 부문의 수요 급증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2024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330억 달러 수준으로 위축되어, 정점 대비 약 18% 감소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도

2022년 1,54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1,399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역수지의 구조적 전환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12억 달러로 급감한 후, 2023년에는 181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면서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흑자 기조가 처음으로 붕괴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특히 중·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는 46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무선통신기기(6%), 합성수지(5%)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수준이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가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출 다양성 부족은 주력 품목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요 감소 시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복원력을 저하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송준헌, 2025).

〈표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2024년)

수출			수입		
품목	금액(억 달러)	비중(%)	품목	금액(억 달러)	비중(%)
반도체	466	35.0	반도체	229	16.4
무선통신기기	80	6.0	정밀화학원료	74	5.3
합성수지	67	5.0	컴퓨터	65	4.6
기초유분	56	4.2	산업용 전기기기	53	3.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0	3.8	무선통신기기	49	3.5
석유화학 중간원료	38	2.9	의류	48	3.4
반도체 제조용 장비	38	2.9	건전지 및 축전지	44	3.1
정밀화학원료	34	2.6	철강판	41	2.9
석유제품	30	2.3	농약 및 의약품	31	2.2
플라스틱제품	27	2.0	자동차 부품	30	2.1

주: 품목 분류는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중간재와 소비재가 혼재된 형태를 보이며, 기술 집약적 제품과 전통적인 제조업 제품이 동시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반도체(16.4%)로, 총 229억 달러에 이른다. 그 밖에도 정밀화학원료(5.3%), 컴퓨터(4.6%), 산업용 전기기기(3.8%), 무선통신기기(3.5%) 등 전기·전자나 기계 품목이 상위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의류(3.4%)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급속히 확대된 중국의 무역은 최근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입 또한 일정 부분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김대운·정준영, 2018). 특히 중국 내수시장의 둔화와 중국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 등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양국의 무역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우중 외, 2024).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품목 중 반도체는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상징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522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정체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다. 반도체 수입도 2022년에 265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29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반도체 가격 변동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과 무역수지의 단기 변동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수요와 가격 변동에 따라 수출액은 큰 폭의 등락을 보여왔다(한국무역협회, 2025). 다만, 최근의 대중국 반도체 교역 변화는 단기적인 가격 요인을 넘어서 구조적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된다. 특히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자립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과거 반도체가 주도해 온 대중국 교역 패턴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형곤, 2023).

가공 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구조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85.9%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어 여타 품목군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반면, 대중국 수입에서는 마찬가지로 중간재가 64.6%로 가장 높지만, 소비재(15.1%)와 자본재(18.7%)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5). 이러한 수출입 구조는 한국이 중국의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공급하는 가치사슬 분업 구조와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는 이러한 구조에 근본적인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김나을 외, 2024). 중국은 과거 조립 가공 중심의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중간재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향상과 자급률 제고를 통해 GVC에서 후방 참여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김대운·정준영, 2018).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대중국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박승찬, 2022).

한편, 산업별 무역수지 현황을 MTI 3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 간에도 무역수지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의류 등 다수 품목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2024년 기준 한중 간 교역이 이루어진 총 198개 산업 가운데, 한국이 무역흑자를 달성한 산업은 5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48개 산업에서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결국, 반도체 부문에서 달성한 237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불균형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단순한 총액 분석을 넘어, 산업별 경쟁력 격차와 구조적 불균형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리스크 또한 함께 확대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구조는 지난 30년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구조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품목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수요 변화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되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중간재 및 소비재의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은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단기적인 경기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이부형 외, 2023; 이울빈, 2023).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한국의 원재료 수입 증대, 중간재 수출 감소는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김우중 외, 2024).

III. 연구방법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산업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한중 무역수지 변화는 단일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인과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상이한 구조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론적 기반은 산업별 수출 경쟁력을 설명하는 비교우위론이다. 리카르도와 헤셔-올린의 이론은 각각 기술 수준과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량 차이를 중심으로 산업의 비교우위를 설명하며, 특정 산업이 수출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는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비교우위론은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간 무역패턴을 형성하는 핵심 동인임을 전제하며, 이러한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무역수지에 반영된다(Golub, 1994). 특히 경쟁력 있는 산업은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수입 대체에 실패하여 적자를 심화시킨다. 선행 연구들은 산업별 비교우위 지표와 무역수지 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 전체의 무역수지가 개별 산업의 경쟁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Shen and Gu, 2007). 본 연구는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산업별 수출 경쟁력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론적 기반은 Linder(1961)의 대표수요이론(Representative Demand Theory)이다. 본 이론은 수출국의 내수시장에서 형성된 대표적 수요에 기반하여 개발된 제품이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국가로 수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국가 간 무역패턴은 수출국 제품이 수입국의 수요 구조와 얼마나 높은 적합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대표수요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및 국산화 정책의 추진으로 수입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승찬, 2022; 김나을 외, 2024).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한국 제품은 중국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제한되면서 수요 적합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 하락과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수입 수요와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산업별 수입 수요 증가는 해당 산업에서 중국의 자급률이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대외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에 시장 확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변화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상대적 경쟁력과 수요 적합성을 반영한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더

라도 한국 제품이 중국의 변화된 수요 구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면 점유율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규모의 변화와 시장 내 경쟁력 변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두 조건의 결합에 따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세 번째 이론적 근거는 GVC 이론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생산 공정의 국제적 분절화를 유발하였으며,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Baldwin, 2016). 실제로 한 국가의 무역패턴은 GVC에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Gereffi et al., 2005). GVC 참여는 자국의 중간재가 수입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전방 참여와 자국 수출이 해외 중간재에 의존하는 후방 참여로 구분되며, GVC 참여의 유형에 따라 무역패턴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Ignatenko et al., 2019).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전형적인 GVC 분업 구조로 발전해왔다. 한국은 중국의 수출 생산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김대운·정준영, 2018).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중국의 대미 수출, 산업별 기술 수준을 설명 변수로 설정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국 생산 네트워크와의 통합 심화를 의미하며, 중국 경제의 변화나 GVC 재편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은 한중 GVC 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미국이 중국 제품의 최대 수요처인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줄어든 가능성이 있다(이울빈, 2023).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공급망 자립화 정책과 기술 고도화로 인해 전통적 GVC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구기보·홍기석, 2023).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한국산 중간재 대신 자국산이나 제3국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GVC 내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재편되고 있다(이부형 외, 2023).

2. 분석 방법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계량경제 분석 기법은 변수 간의 평균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리하나, 복잡한 사회경제 현상의 다양한 맥락과 인과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Gligor and Bozkurt, 2020; Kumar et al., 2022).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은 개별 사례의 특성과 조건 간 결합을 중시하는 대안적 방법론으로, Charles Ragin(1987)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QCA는 Boolean 논리에 기반하여 조건 조합의 논리적 구성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며, 기존의 변수 중심 분석에서 간과되기 쉬운 사례 간 이질성과 복잡한 인과 구조를 포착할 수 있다(Ragin, 1987). 특히 fsQCA는 Zadeh(1965)의 퍼지셋 이론을 접목하여 각 조건을 0과 1 사이의 연속값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현상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Pappas and Woodside, 2021; Kumar et al., 2022).

fsQCA는 비대칭적 인과성, 등결과성, 결합적 인과성을 핵심 전제로 삼는다(Ragin, 2008). 첫째, 비대칭적 인과성은 조건과 결과 간의 관계가 항상 일관된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어떤 조건이 결과를 유발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지만 충분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조건의 부재로 단정할 수는 없다(Gligor and Bozkurt, 2020). 둘째, 등결과성은 동일한 결과가 다양한 조건 조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통적 통계 분석에서 전제하는 유일한 최적 경로라는 개념과는 대조적이다(Ragin, 1987). 셋째, 결합적 인과성은 결과가 단일 조건이 아닌 다수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반영한다(Fiss, 2011). 이처럼 fsQCA는 사례 지향적 접근을 통해 각 사례의 조건 조합을 전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과 발생의 맥락성과 다면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Fiss, 2011).

fsQCA는 전통적인 회귀분석과는 인과론적 관점, 분석 논리, 그리고 결과 해석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Vis, 2012; Gligor and Bozkurt, 2020). 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와 독립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가설 검증과 예측력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반면에 fsQCA는 개별 변수가 아닌 조건들의 조합을 분석 단위로 삼고, 결과를 유발하는 다양한 경로를 식별한다(Ragin, 1987; Vis, 2012). 또한 회귀분석은 인과관계를 대칭적으로 가정하지만, fsQCA는 인과적 비대칭성을 전제로 하여 조건과 결과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한다(Vis, 2012). 따라서 fsQCA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며, 중간 규모의 사례를 다루는 연구에 효과적이다(Vis, 2012).

일반적인 fsQCA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째, 원자료를 교정(calibration)하여 각 변수의 퍼지셋 점수를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완전 소속(1), 완전 비소속(0), 그리고 소속 여부가 불확실한 교차점(0.5)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며, 기준점은 경험적 분포나 이론적

근거에 따라 결정된다(Ragin, 2008). 둘째, 가능한 모든 조건 조합을 나열한 진리표(truth table)를 작성한다. 셋째,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한다. 필요조건은 결과 발생에 필수적인 조건이고, 충분조건은 해당 조건 또는 조건 조합이 결과를 보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넷째, 논리적 단순화를 거쳐 복잡, 중간, 간결 솔루션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일관성(consistency)과 포괄성(coverage) 지표를 통해 분석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일관성이 0.8 이상이면 의미 있는 인과 경로로 간주한다(Ragin, 2008).

3. 변수 및 데이터

본 연구는 fsQCA에 필요한 결과변수와 조건변수들을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단위는 SITC 3단위이며, 총 247개 산업 가운데 양국의 교역이 부재하거나 자료의 극단값으로 인하여 신뢰성이 저하되는 산업을 제외하여 237개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2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전환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전기(2019~2021년)와 후기(2022~2024년)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는 전기와 후기 각각에 대해 3개년 평균값을 산출한 뒤, 두 시기의 평균 차이 내지는 증감률을 계산하여 전후기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변수 측정 방법은 특정 시기에 발생한 외부 충격이나 정책 변화 등으로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Gruber and Kamin, 2007). 실제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변동성이 크다(박재곤·김정현, 2024). 본 연구에서는 3개년 평균값을 통해 이상값의 영향을 완화하고, 각 변수의 구조적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든 변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와 UN Comtrade의 산업별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한국무역협회, 2025; United Nations, 2025).

본 연구의 결과변수는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율(STB)이다. 결과변수는 연도별 무역수지(수출액 - 수입액)를 이용하여 전기와 후기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한 뒤, 두 시기 평균의 변화율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전기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도 변화 방향과 강도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분모에는 절댓값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무역수지의 절대 규모보다 변화의 방향성과 강도에 중점을 두어, 산업별로 수출입 격차가 확대 또는 축소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건변수는 제1절에서 설명한 이론적 기반에 따라 모두 여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조건변수는 산업별 수출 경쟁력(EXC)으로,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의 전후기 평균 차이를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TSI는 생산성이나 기술력과 같은 실질적 경쟁력 요소를 직접 측정하지는 못하지만, 산업별 상대적 특화도의 변화를 통해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를 포착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국제무역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TSI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값을 총무역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산업의 수출 특화도가 높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수입 특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SI를 산업의 수출 경쟁력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각 산업의 비교우위 변화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변수는 대표수요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중국의 수입 수요 변화율(IMD)은 산업별로 중국의 수입 규모가 전기 대비 후기에 얼마나 증감하였는지를 측정하였으며, 대외 조달을 통한 수요 충족이 지속되는지를 평가하였다. 수입이 증가한 산업은 중국의 자급화가 미진하거나 대외 의존도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입이 감소한 산업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나 국산화 정책으로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이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국산 점유율의 변화(KRS)는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전후기 차이를 나타내며,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산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 중국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거나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을 반영한다(구기보·홍기석, 2023).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건변수는 GVC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변화(CND)는 산업별 총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전후기 차이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산업이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에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산업은 GVC 재편과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대중국 수출 감소가 곧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박재곤·김정현, 2024). 다음으로 중국의 산업별 대미 수출 증감률(EUS)은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특히 한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 공급망에서 중간재 공급국으로 수행해 온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산

업의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대운·정준영, 2018).

마지막 조건변수는 산업별 기술 수준(TEC)으로, 산업 고유의 특성을 분석에 반영함과 동시에 GVC 이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는 Lall(2000)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각 산업을 1차산업, 자원 의존형,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기술 수준에 따라 1(가장 낮음)에서 5(가장 높음)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기술 수준은 GVC 재편 과정에서 산업별 대응 능력과 구조 전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고기술 산업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저기술 산업은 GVC 내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고 가격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저기술 산업은 외부 충격으로 수출이나 수입이 변동할 경우, 그 영향이 무역수지 악화 또는 개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약어	측정 방법
산업별 무역수지	STB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율
수출 경쟁력	EXC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의 전후기 평균 차이
중국의 수입 수요	IMD	중국의 산업별 수입 규모 변화율
한국산 점유율	KRS	중국의 산업별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율
대중국 수출 의존도	CND	산업별 총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액 비중의 변화율
중국의 대미 수출	EUS	중국의 산업별 대미 수출액 변화율
기술 수준	TEC	Lall(2000)의 분류에 근거한 산업별 기술 수준(1~5단계로 측정)

주: 모든 변수는 2019~2021년(전기)과 2022~2024년(후기) 각각의 3개년 평균값을 이용해 산출.

IV. 실증분석

1. 기초 분석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6개 조건변수의 복합적 결합이 산업별 무역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fsQCA에 앞서 각 변수의 기초 통계량과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데이터의 전반적 특성과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한다. 〈표 4〉는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결과변수인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율(STB)의 평균값은 -1.479로, 전체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결과변수의 표준편차

가 9.170으로 크게 나타나서, 산업 간 무역수지 변화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수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정규분포의 일반적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정규성 가정에서 벗어나 있음을 시사한다. Shapiro-Wilk 정규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의 검정 통계량의 p값이 0.001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교정 과정에서 극단값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임계값 설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4〉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STB	-1.479	9.170	-106.120	7.901	-9.831	103.158
EXC	-0.093	0.207	-0.873	0.843	-0.489	4.843
IMD	0.144	0.860	-1.000	10.369	7.799	85.649
KRS	-0.002	0.062	-0.205	0.774	-2.552	9.007
CND	-0.045	0.111	-0.598	0.173	7.934	102.471
EUS	0.043	0.275	-1.000	1.288	0.242	4.887

다음으로 〈표 5〉에서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율(STB)은 수출 경쟁력 변화(EXC)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 산업에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산업의 비교우위가 한중 무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 변화(EXC)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수입 점유율 변화(KRS)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산업일수록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상관분석

변수	1	2	3	4	5	6
1. STB	1					
2. EXC	0.205**	1				
3. IMD	0.037	0.138*	1			
4. KRS	0.014	0.132*	-0.084	1		
5. CND	0.032	0.392***	0.086	0.163*	1	
6. EUS	-0.039	-0.068	-0.017	-0.051	-0.024	1

주: * $p < .05$, ** $p < .01$, *** $p < .001$.

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fsQCA를 통해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조합을 규명한다. fsQCA 분석의 첫 단계는 데이터를 퍼지셋 점수로 변환하기 위한 교정 과정이다. 본 연구는 직접 교정 방식을 채택하여, 완전 소속, 교차점, 완전 비소속의 기준값으로서 각각 80%, 50%, 20% 백분위 값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Ragin(2008)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앞서 확인한 데이터의 분포 특성상 극단값의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는 한편, 의미 있는 사례 구분을 위해 분석 타당성과 경험적 정합성에 근거한 조치이다(Pappas and Woodside, 2021). 분석의 초점은 결과변수를 부정(negation: ~STB)으로 설정하여 ‘무역수지 악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식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진리표(truth table)의 구성이다. 진리표는 분석에 포함된 6개 조건변수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 결과변수(~STB: 무역수지 악화)의 발생 여부와 일관성을 정리한 표이다. 이론적으로 조건변수가 6개일 경우 가능한 조합은 64개로, 진리표는 총 64개의 행으로 구성된다(Ragin, 2008). 그리고 조건 조합별로 해당 사례 수와 원시 일관성(raw consistency)을 산출한 뒤, 사전에 설정한 기준값에 따라 분석에 포함할 조합을 선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시 일관성 0.85 이상을 충분조건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한 결과, 총 21개의 유효한 조건 조합이 선별되었다.

다음으로 결과의 발생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조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0.9 이상일 경우 해당 조건을 결과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한다(Ragin, 2008).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어떤 단일 조건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무역수지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 경쟁력 하락(~EXC)의 일관성 값이 0.79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무역수지의 악화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필요조건 분석(결과변수: ~STB)

조건변수	일관성	포괄성
EXC	0.378	0.373
~EXC	0.791	0.801
IMD	0.491	0.508

조건변수	일관성	포괄성
I~MD	0.657	0.636
CND	0.475	0.463
~CND	0.669	0.687
KRS	0.544	0.548
~KRS	0.669	0.664
EUS	0.611	0.616
~EUS	0.545	0.541
TEC	0.640	0.635
~TEC	0.531	0.534

주: '~'는 조건의 부재를 의미.

마지막으로 충분조건 분석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양한 인과 경로를 식별하였다. <표 7>은 설정된 일관성 기준(0.856)을 상회하는 8개의 조건 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각 행은 결과 변수가 발생하기 위해 충분한 조건의 논리적 조합을 의미하며, 개별 변수의 독립적 효과가 아닌 조건 간 상호작용 효과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각 조합에서 연산자 '*'는 논리곱(logical conjunction, AND)을 나타내며, '~'는 해당 조건의 부정(logical negation, NOT)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합(~EXC*~KRS*EUS)은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경우로,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무역수지의 악화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충분조건 분석(결과변수: ~STB)

조합	일관성	원시 포괄성	고유 포괄성
1. ~EXC*~KRS*EUS	0.894	0.384	0.041
2. ~EXC*~IMD*EUS	0.885	0.359	0.029
3. ~EXC*~CND*TEC	0.882	0.438	0.072
4. ~EXC*~KRS*CND*~TEC	0.907	0.176	0.021
5. ~EXC*~IMD*CND*~TEC	0.921	0.160	0.014
6. ~EXC*CND*EUS*~TEC	0.868	0.146	0.005
7. ~EXC*~IMD*~KRS*CND	0.907	0.200	0.002
8. ~EXC*~IMD*~KRS*TEC	0.903	0.338	0.003

전체 일관성: 0.853, 전체 포괄성: 0.672

주: '*'와 '~'는 각각 조건의 결합(AND)과 부재(NOT)를 의미.

<표 7>에서 일관성(consistency)은 주어진 조건 조합이 결과를 일관되게 초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일 경우 충분조건으로 간주한다(Ragin, 2008). 원시 포괄

성(raw coverage)은 해당 조건 조합이 전체 결과 사례 중 얼마만큼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해당 조합의 상대적 중요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 포괄성(unique coverage)은 특정 조합만이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결과의 비율로, 동일한 결과를 설명하는 다른 경로들과의 중복성을 배제한 기여도를 나타낸다. fsQCA의 결과, 세 번째 조합($\sim$ EXC* $\sim$ CND*TEC)이 가장 높은 원시 포괄성과 고유 포괄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은 전체 조합들로 구성된 모형이 무역수지 악화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0.85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fsQCA 문헌에서 제시된 최저 기준인 0.75를 상회하여 모형의 신뢰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Pappas and Woodside, 2021). 마지막으로 전체 포괄성(solution coverage)은 전체 결과 사례 중 해당 조합들이 설명하는 비율로, 본 연구의 0.672는 전체 무역수지 악화 사례의 67.2%가 8개의 경로에 의해 설명됨을 의미한다.

3.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의 유형

본 연구의 fsQCA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를 설명하는 8개의 충분조건 경로 전반에서 수출 경쟁력의 저하($\sim$ EXC)가 일관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이 모든 인과 경로에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은 해당 조건이 결과 발생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다만, 수출 경쟁력의 저하라는 공통 조건에도 불구하고, 8개의 충분조건 조합은 서로 다른 조건들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수지 악화라는 동일한 결과가 서로 다른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서 수출 경쟁력의 저하는 여타 조건들이 작동하기 위한 구조적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들의 결합 패턴과 이론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표 8>에서와 같이 8개 조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8〉 산업별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조합

조건변수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4	5	6	7	3	8	1	2
EXC	○	○	○	○	○	○	○	○
IMD		○		○		○		○
KRS	○			○		○	○	
CND	●	●	●	●	○			
EUS			●				●	●
TEC	○	○	○		●	●		

주: '●'는 존재(또는 높음), '○'는 부재(또는 낮음)를 의미.

첫 번째 유형(대중국 수출 의존도 심화)은 수출 경쟁력의 저하(~EXC)와 저기술 산업(~TEC), 그리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의 증가(CND)가 결합한 경로로, 조합 4, 5, 6, 7이 해당한다. 첫 번째 유형의 핵심 메커니즘은 비교우위의 약화와 함께 저기술 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은 주로 가격경쟁력에 기반해 시장을 유지하지만, 최근 중국의 기술 경쟁력 상승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위가 빠르게 상실되고 있다. 특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중국 내 수요 축소가 곧바로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외의 대체 시장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황에서 수출 감소에 비해 대중국 수입의 조정이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쟁력이 취약한 저기술 산업이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수요 구조 변화나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유형(기술 우위 약화)은 고기술 산업(TEC)에서 수출 경쟁력의 저하(~EXC)가 발생한 경로로, 조합 3과 8이 해당한다. 이 유형의 공통된 메커니즘은 기술 수준이 높아도 중국 내 수요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출이 위축되고, 대중국 수입의 감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조합 8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IMD)하는 동시에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마저 하락(~KRS)하여, 시장 자체의 위축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조합 3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낮음(~CND)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된 사례로, 중국 시장 비중은 작지만 수출 경쟁력 하락과 중국 시장 수요 부적합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이 경직적으로 유지되면서 수출입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고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입국의 수요 감소와 시장 내 입지 약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유형(GVC 재편)은 수출 경쟁력의 저하(~EXC)와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EUS)가 결합된 경로로, 조합 1과 2가 해당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 과정에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확대되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 유형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반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조합 1은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하락(~KRS)한 상태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EUS)하였는데, 중국이 해당 중간재를 한국산 대신 자국산이나 제3국 제품으로 대체하였음을 시사한다. 조합 2는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IMD)한 상태에서 대미 수출이 확대(EUS)된 경우로, 중국이 대미 수출을 늘리면서도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조달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조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은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가 한국의 중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수출 경쟁력 하락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하여 수출이 축소되었지만, 대중국 수입은 단기간에 감소하지 않아 수출입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본 유형은 GVC에서 전방 참여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공급망 대체와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해 예상과 반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최근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30년간 지속된 흑자 기조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하는 변곡점을 맞이하였다(이부형 외, 2023). 급격한 무역구조 변화는 경기변동이나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산업별 비교우위 재편, 중국 시장 변화, GVC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박승찬, 2022; 김나을 외, 2024). 기존의 연구들은 무역수지의 변동 요인을 주로 환율이나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업 간의 차별적 영향이나 조건 결합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Hassan et al., 2017). 본 연구는 fsQCA를 활용하여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조건변수도 단독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수지 변화가 단일 변수의 독립적 효과가 아닌

다중 조건의 결합적 인과성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의 하락은 모든 유의한 인과 경로에 공통으로 등장하여 무역수지 악화의 구조적 전제조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분조건 분석에서는 총 8개의 유의한 경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솔루션의 포괄성 0.672와 일관성 0.853을 기록하여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도출된 8개 경로는 조건 결합의 특성에 따라 ‘대중국 수출 의존도 심화’, ‘기술 우위 약화’, ‘GVC 재편’의 세 가지 핵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별 무역수지 분석에 fsQCA를 적용한 선구적 시도로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전통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평균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조건들의 결합적 인과성과 경로 다원성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현상의 복잡성을 현실적으로 포착하였다. 특히, 인과적 등가성 개념을 산업별 무역수지 변동에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가 서로 다른 조건 조합을 통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수출 경쟁력 저하가 모든 경로의 공통 전제조건으로 나타난 것은 산업의 비교우위가 여전히 무역패턴의 핵심 동인임을 확인해 주며(Golub, 1994; Shen and Gu, 2007), 조건들의 결합적 인과성은 무역수지 결정요인이 단일 변수가 아닌 복합적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함을 보여준다(Felice and Tajoli, 2021).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수출 경쟁력 저하가 모든 경로에서 공통적인 전제조건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별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적 품질 개선을 통한 비교우위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화된 저기술 산업들은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 개발 지원의 확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인 기술 우위가 약해진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와 수입대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함께, 중국 내 현지화 전략 수립 지원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GVC 재편 유형의 경우, 외생 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원화와 우회 수출 경로 발굴 등을 포함한 리스크 분산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가 확인한 조건 결합의 다양성과 경로 다원성은 무역정책이 단일 지표나 단기 처방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경쟁력, 시장 구조, 대외환경을 동시에 반영하는 복합적이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버드대학교 성장연구소가 제공하는 경제 복잡성 지도(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를 보면, 한국과 중국의 교역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복잡성 지수는 1995년 세계 22위에서 2023년 5위로 상승하며 꾸준한 기술 축적의 흐름을 유지하였고, 중국도 같은 기간 37위에서 16위로 21계단이나 상승하였다(Growth Lab, 2024). 경제 복잡성 지수는 한 국가가 얼마나 다양하고 고도화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러한 결과는 양국 간 기술·생산 역량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공정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는 제품 복잡도 지표를 보더라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이미 높은 복잡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품목 구성 역시 한국의 수출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술 우위는 중국의 기술 확장과 산업 고도화로 인하여 상당 부분 상쇄되었으며, 양국의 기술 수렴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를 단순한 경기 요인이나 가격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 심화와 역할 재배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GVC 변화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fsQCA 결과는 산업별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가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조건 조합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특히 수출 경쟁력 약화, 한국산 점유율 하락,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결합된 경로에서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설계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정 단계별 재배치를 통해 중국의 자급화가 부족한 고부가가치 공정으로 생산 및 수출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빠른 모방 및 국산화 정책을 우회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산업 내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중국 내수시장의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이 제한되는 고부가가치 수요층을 선별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과 제품 차별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급망 참여 방식을 재설계하여 기존의 단순 제조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정 설계, 품질 관리, 기술 솔루션 제공 등 비가시적 생산 역량을 중심으로 공급망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현지 생산 확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이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의 방향은 단기적 수출 확대보다 GVC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고부가가치·지식 집약적 영역으로 정립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 기간이 2019~2024년으로 제한되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미중 무역마찰 등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웠으며, 향후 분석 기간의 확장을 통해 구조적 변화의 지속성과 경로의 안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소비재 산업에서는 한한령과 같은 외생적 요인도 무역수지 변화를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SITC 3단위 산업 분류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품목별·기업별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조건변수를 6개로 한정하여 환율, 금리, 해외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요인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거시변수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의 포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sQCA의 방법론적 특성상 도출된 경로의 논리적 일관성과 설명력은 확보되더라도, 조건과 결과 간의 엄밀한 인과관계 확립이나 다른 맥락으로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른다. 향후 fsQCA와 계량경제 모형의 결합 분석은 조건 조합의 논리적 구조와 개별 변수의 정량적 효과를 동시에 규명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기보·홍기석. (2023).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차이나브리프*, 68, 41-49.
- 김나을·강내영·김민우. (2024).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Trade Focus* 2024년 24호, 한국무역협회.
- 김대운·정준영. (2018).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제2018-25호, 한국은행.
- 김우종·전보희·조의윤. (2024). 최근 對한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Trade Focus* 2024년 8호, 한국무역협회.
- 박승찬. (2022). 대중 무역적자 고착화 가능성과 향후 정책 방향. *한중사회과학연구*, 65, 88-93.
- 박재곤·김정현. (2024).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Issue Paper* 2024-18, 산업연구원.
- 송준현. (2025).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각화 결정요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산업연구*, 9(1), 85-119.
- 이부형·신지영·노지연. (2023).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경제주평* 23-08호, 현대경제연구원.
- 이왕희. (2023). 최근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과 전망. *Pacific Report*, 2023년 5월 통권 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이율빈. (2023). 대중국 무역적자의 복합적 배경. *한중사회과학연구*, 68, 136-158.
- 이임자·조용원. (2017).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국내 소비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9호, 산업연구원.
- 정형곤. (2023).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3권 제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25). "K-stat." Available at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 Adler, G., S. Meleshchuk, and C. O. Buitron (2023). Global Value Chains and External Adjustment: Do Exchange Rates Still Matter? *Economic Modelling*, 118, 106073.
- Bahmani-Oskooee, M. (1992). What Are the Long-run Determinants of the US Trade Balance?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15(1), 85-97.
- Bahmani-Oskooee, M., and M. Hajilee (2009) The J-Curve at Industry Level: Evidence from Sweden-US Trade. *Economic Systems*, 33(1), 83-92.
- Baldwin, R. (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own, C. P., M. A. Crowley, R. McCulloch, and D. J. Nakajima (2005). The US Trade Deficit: Made in China? *Economic Perspectives*, 29(4), 2-18.
- Catao, L., and E. Falcetti (2002). Determinants of Argentina's External Trade.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5(1), 19-57.
- Chaudhuri, S. (2013). Manufacturing Trade Deficit and Industrial Policy in India. *Economic*

- and *Political Weekly*, 48(8), 41-50.
- Feenstra, R. C., W. Hai, W. T. Woo, and S. Yao (1998). The US-China Bilateral Trade Balance: Its Size and Determinants. NBER Working Paper 659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Felice, G., and L. Tajoli (2021). Trade Balances and Global Value Chains: Is There a Link?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59, 228-246.
- Fiss, P. C. (2011). Building Better Causal Theories: A Fuzzy Set Approach to Typologies in Organization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2), 393-420.
- Gereffi, G., J. Humphrey, and T. Sturgeon (2005).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1), 78-104.
- Gligor, D., and S. Bozkurt (2020). FsQCA versus Regression: The Context of Customer Engagement.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52, 101929.
- Golub, S. S. (1994). Comparative Advantage, Exchange Rates, and Sectoral Trade Balances of Major Industrial Countries. *IMF Staff Papers*, 41(2), 286-313.
- Gould, D. M., and R. J. Ruffin (1996). Trade Deficits: Causes and Consequences.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Economic Review, Fourth Quarter 1996, pp. 10-20.
- Growth Lab (2024).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Harvard University. Available at (<https://atlas.hks.harvard.edu>).
- Gruber, J. W., and S. B. Kamin (2007). Explaining the Global Pattern of Current Account Imbala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6(4), 500-522.
- Hassan, M. S., A. Wajid, and R. Kalim (2017). Factors Affecting Trade Deficit in Pakistan, India and Bangladesh, *Economia Politica*, 34(2), 283-304.
- Hatsopoulos, G. N., P. R. Krugman, and L. H. Summers (1988). US Competitiveness: Beyond the Trade Deficit. *Science*, 241(4863), 299-307.
- Hunegnaw, F. B., and S. Kim (2020). Exchange Rate and Sectoral Trade Balance Dynamics: Empirical Evidence from Eastern Africa Panel Data.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34(6), 535-551.
- Ignatenko, A., F. Raei, and B. Mircheva (2019). Global Value Chains: What are the Benefits and Why Do Countries Participate? IMF Working Paper 19/1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Kumar, S., S. Sahoo, W. M. Lim, S. Kraus, and U. Bamel (2022).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in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A Contemporary Overview.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78, 121599.
- Lall, S. (2000). The Technological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y Manufactured Exports, 1985-98. *Oxford Development Studies*, 28(3), 337-369.

- Linder, S. B. (1961).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Mann, C. L., and K. Plück (2007). Understanding the U.S. Trade Deficit: A Disaggregated Perspective. in R. H. Clarida (ed.), *G7 Current Account Imbalances: Sustainability and Adjust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47-281.
- Nasir, M. A., and M. Leung (2021). US Trade Deficit, A Reality Check: New Evidence Incorporating Asymmetric and Non-linear Effects of Exchange Rate Dynamics. *The World Economy*, 44(3), 818-836.
- Obstfeld, M. (2025). The US Trade Deficit: Myths and Realiti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PEA Conference Draft. March 27-28, 2025.
- Pappas, I. O., and A. G. Woodside (2021).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in Information Systems and Mark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58, 102310.
-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gin, C.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n, G., and A. Y. Gu (2007).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tra-industry Trade and the US Manufacturing Trade Deficit with China. *China & World Economy*, 15(6), 87-103.
- Shimizu, M., and J. H. Song (2022). Effects of Exchange Rates and Invoiced Currencies on Trade: Evidence from South Korea. *The World Economy*, 45(6), 1997-2031.
- United Nations (2025). "UN Comtrade Database." Available at (<https://comtrade.un.org>).
- Vis, B. (2012).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fsQCA and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ely Large-N Analys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1(1), 168-198.
- Yilmazkuday, H. (2021). Accounting for Trade Deficit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15, 102385.
- Zadeh, L. A. (1965). Fuzzy Sets. *Information and Control*, 8(3), 338-353.

ABSTRACT

Determinants of Sectoral Trade Balance Dynamic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Joon-Heon Song*

South Korea's trade balance with China has shifted from a long-term surplus to a substantial deficit, driven by complex interactions among changes 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China's evolving demand structure, and global value chain reconfiguration. This study employ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o identify causal pathways leading to sectoral trade balance deterioration. Using data from 237 industries at the SITC 3-digit level, we examine configur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six conditions—export competitiveness, China's import demand, Korea's share in China's imports, Korea's export dependence on China, China'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echnology level—and the deterioration of the trade balance. We find no single necessary condition, while declining export competitiveness emerges as a critical antecedent across all pathways. The analysis identifies eight sufficient configurations (causal pathways), which we classify into three types: deepening export dependency, erosion of technological advantage, and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The results demonstrate equifinality, whereby multiple condition combinations yield the same outcome. The study contributes by applying fsQCA to sector-level trade analysis, revealing conjunctural causation in complex trade phenomena, and underscoring the need for targeted, industry-specific policy portfolios.

| **Keywords** Trade Balance, Trade Deficit with China, Export Competitiveness, fsQCA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nd Commerce, 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 jsong@tiu.ac.jp

「관세무역연구」 투고 안내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논문투고 방법

□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 투고 마감일까지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자격

관세·무역 분야의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 투고 방법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통해 투고(www.kctdi.or.kr)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관세무역연구 → 학술지 → 논문투고 탭에서 투고

□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 문 의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2실(Tel 02-3416-5192/5195)

□ 일반 사항

- 국내외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가 예정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논문투고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논문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원고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된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 타기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공모전 수상작, 학위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의 경우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관련 내용 및 사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논문작성 방법

□ 논문 구성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목차, 국문 초록, 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순으로 작성

□ 편집 규격

「관세무역연구」 논문 편집 샘플 활용

□ 인용·각주·표와 그림·참고문헌 작성 요령

-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쉼표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성(Last name)과 연도를 표기한다.
- 저자가 2인인 경우 항상 모든 저자를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인용할 때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1저자 다음에 OOO 외, OOO et al. 로 표기한다. 단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항상 1저자만 표기한다.
-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 번호는 1), 2), 3)를 사용한다.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쪽에 넣고,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국문, 외국어 순서로 배치하되, 1저자명을 기준으로 국문은 가나다순, 외국어는 알파벳 순서대로 작성한다.

항목		예시
본문 내 인용		기술의 발전이 국제무역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김민구, 2023). 수입금지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Kim, 2007).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민하, 김소영, 2009).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이근호 외, 2017). 합리적 가격결정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Stewart et al., 2007).
각주의 표기		1) 관세법 제226조 제1항 참조 2) 대법원 2017. 4. 7. 2015두49320 판결
표와 그림		〈표 1〉 관세감면제도 유형 〈그림 1〉 특송물품 수입 개관
참고문헌	단행본	김준호. (2005). 「관세무역제도」. 무역 출판. Jason M, C. (2002). Customs Procedures. Trade Publishing.
	저널논문	박민우. (2007). FTA 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i>관세무역연구</i> , 15(1), 12-13. Murphy C, W. (2003).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Incoterms 2010. <i>Trade Research Society</i> , 11(3), 24-25.
	학위논문	이진아. (2003). 수입물품 가격신고제도 분석. 관세무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문, 잡지 등	KITA. (2020. 12).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 <i>Trade Focus</i> , 71-73.
	인터넷 자료	연합뉴스. (2024.2.12.).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26일 정식 개장...국내 4번째". Available at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8103700055?input=1195m)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편집위원	김경화	건국대학교
	장효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조미진	명지대학교
	김한성	아주대학교
	유정호	부경대학교
	최두원	충북대학교
	김민재	경기대학교
	김진규	조선대학교
	최준호	백석대학교
편집간사	박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제2권 제4호·통권 제8호(2025년 12월)

Korea Customs Review

Vol. 2, No. 4 December 2025

발 행 처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김상만

발행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마곡동)

등록번호 강서 바00055

강서 바00060

전 화 02 3416 5195

팩 스 02 3416 5025

홈페이지 www.kctdi.or.kr

I S S N 3022-7569(Print)

3022-831X(Online)

인 쇄 처 경성문화사

인 쇄 일 2025년 12월 27일

발 행 일 2025년 12월 31일

※ 본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Korea Customs Review

Vol. 2 No. 4 December 2025

ARTICLES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view and the Adjudication System
in Korea's Post-Customs Administration Relief System

Sang-Hyun Han

Post-Pandemic Financial Resilience of Export-import Logistics Firms:
A Machine Learning-Based Analysis of Determinant

Min-Su Kwon

A Study on Customs Addition of Royalties for Luxury Brand Collaborative Electronic Products:
Focusing on Article 30(1)(4) of the Korean Customs Act

Bo-Min Ko · Byeong-Jin Kim · Hyun-Soo An

Proposals on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

Soohong Chae · Eunhee Kang · Jeongmi Oh

Determinants of Sectoral Trade Balance Dynamic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Joon-Heon Song



KCTDI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